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Introduction to the local laws of foreign countries
with focus on real cases for Korean businesses

중국 II
세법



기업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치' 구현

우리 기업들은 진취적인 도전 정신, 치열한 노력,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왕성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및 진출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법적인 분쟁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 바, 외국의 법과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법률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돕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여, 분쟁예방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새롭게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맞춤형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국제거래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등 총 157명 자문위원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분쟁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로 주요 법률 쟁점들을 정리한 '국제분쟁 방지가이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가이드 9권,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5권,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 1권 등 총 15권을 제작하여 책자 또는 PDF 파일 형태로 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가이드 중급1(투자, 기업), 11(세법), 111(공정거래), 베트남1(투자, 조세, 노무), 11(부동산, 건설) 및 캄보디아 편 등 6권의 책자를 2010년 10월 최초 발간 이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법률 및 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께 위 6권 책자의 개정 작업을 의뢰하였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 개정판들의 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비즈니스 가이드 개정판들은 해외 진출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최신 법령 정보와 구체적 자문사례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집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변호사님들과, 본서의 기획 및 발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국제법무과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기업의 법률자문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많은 국가의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담은 '국제분쟁 방지가이드' 시리즈들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무 정책들을 통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 10.

법무부장관 김 현웅

목차

제1편 중국세법 개론

제1장 중국세법의 체계	12
1. 중국세법의 입법 및 정책 제정	12
2. 중국세법의 입법 및 제정권한	12
가. 법률(法律)	12
나. 행정법규(行政法規)	13
다. 부문규장(部門規章)	13
라.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規)	13
마. 자치조례(自治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	14
바.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	14
제2장 중국세법의 분류	14
1. 과세대상에 의한 분류	15
2. 징수권한과 수입지배권한에 의한 분류	16
3. 과세기준에 의한 분류	17
4. 조세부담의 전가 가능 여부에 의한 분류	17
5. 세금과 가격의 관계에 의한 분류	18
제3장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18
1. 외상투자기업 조세 관련 연혁	18
2.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목	19
제4장 중국의 기업관련 세금 개요	20
제5장 기업소득세편	22
1. 기업소득세 개요	22
2. 납세의무자	22
가. 주민기업	23
나. 비주민기업	23
다.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의 납세의무	24
라. 과세소득 원천지의 확정	24
3. 과세소득	24
가. 수입총액	25

나. 비과세수입	27
다. 면세수입	28
라. 각종 공제	29
마. 결손보전	35
4. 세율	35
가. 우대세율	35
나. 하이테크기업의 세율	35
다. 예제소득세 세율	36
5. 자산의 세무처리	36
가. 고정자산의 세무처리	36
나. 생산성 생물자산의 세무처리	38
다. 무형자산의 세무처리	39
라. 장기상각비용의 세무처리	39
마. 투자자산의 세무처리	40
바.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40
6. 세수우대	41
가. 면세수입	41
나. 면제, 감면수입	41
다. 우대세율	43
라. 민족자치구의 세수우대	45
마. 추가공제에 의한 우대	45
바.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46
사. 가속감가상각에 의한 우대	46
아. 자원종합이용에 대한 우대	46
자.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절수, 안전생산 전문용 설비투자에 대한 우대	46
차. 과도기간의 세수우대	47
7. 특별납세조정	48
가. 조정 범위	48
나. 관련기업간 관련업무의 세무처리	48

목차

다. 조정방법	50	6. 납부할 세액의 계산	72
8. 납부할 세액의 계산	51	가. 개요	72
가. 납부할 세액 계산	51	나. 매출증치세의 계산	72
나. 경외 원천소득의 공제세액 계산	53	다. 매입증치세의 계산	75
다. 인정과세	54	라. 납부할 세액의 계산	77
9. 징수관리	58	7. 세수우대	80
가. 원천징수	58	가. 법정면세항목	80
나. 납세지	59	나. 개인의 증치세 과세기산점(起征点)	80
다. 납세년도	60	다. 감면세항목 경영 관련	80
라. 외환표시 소득의 환산	61	8. 신고납부	81
제6장 증치세편	61	가. 납세기간	81
I. 일반 사항	61	나. 납세지	81
1. 증치세 개요	61	다. 징수기관	81
2. 증치세의 부과대상	63	II. 증치세 수출환급	82
가. 중국 내, 외에서 재화의 판매	63	1. 개요	82
나. 중국 경내에서 가공, 수선 및 정비 용역의 제공	65	2. 적용요건	82
다. 재화의 수입	66	가. 환급요건 및 환급대상 수출기업	82
라. 용역의 제공	66	3. 수출재화의 환급 방법	83
3. 증치세의 세율	66	가. 수출면세 및 환급하는 방법	84
가. 기본세율	67	나. 수출면세를 하되 환급하지 않는 방법	84
나. 경감세율	67	다. 수출면세, 수출환급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방법	85
다. 교통운송업 및 우체업 세율	68	4. 증치세 환급세율	85
라. 현대서비스업 세율	68	5. 증치세 환급방법	85
마. 영세율	68	가. 선징수후환급(先征后退)	86
바. 간이세율	68	나. 면제/공제/환급(免抵退) 방법	87
4. 증치세의 납세의무자	69	6. 면제/공제/환급 방법의 등록신청	88
가. 일반납세자(一般納稅人)	70	III. 가공무역의 증치세 부과	88
나. 소규모납세자(小規模納稅人)	70	1. 진료가공	89
5. 납세의무 발생시기	71	가. 진료가공의 정의	89

목차

나. 진료가공의 증치세 문제	89	나. 납세지	100
다. 진료가공의 경우 증치세액의 계산방식	89	제8장 이전가격세제편	100
2. 내료가공	90	1. 이전가격세제 개요	100
가. 내료가공의 정의	90	가. 입법연혁	101
나. 내료가공의 증치세 문제	90	나. 입법체계	102
3. 심가공결전(深加工結轉)	91	2. 적용대상	103
제7장 영업세편	91	3. 특수관계신고	103
1. 영업세 개요	91	가. 특수관계의 확정	103
2. 영업세의 부과대상	92	나. 특수관계거래의 유형	104
가. 중국 “경내”	92	다. 특수관계신고의 내용	105
나. 과세행위	93	4. 관련자료 관리	105
다. 특수행위의 세무처리	93	가. 관련자료의 준비	105
3. 영업세의 세율	94	나. 관련자료 준비의무의 면제	105
4. 영업세의 납세의무자	94	다. 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관	106
가. 납세의무자	94	라. 관련자료 의무 불이행 관련 법률책임	106
나. 원천징수의무자	95	5. 이전가격 관리	106
5. 납세의무 발생시기	95	가. 비교가능성 분석	106
가. 납세의무 발생시기의 확정	95	나. 이전가격의 조정방법	106
나. 구체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	96	다. 이전가격의 조사 및 조정	109
6. 납부세액의 계산	96	6.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111
가. 개요	96	가. 사전승인합의 적용기업	112
나. 영업액의 계산	96	나. 사전승인합의의 적용연도 및 소급력	112
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	98	다. 사전승인합의 및 집행 절차	112
7. 세수우대	98	라. 사전승인합의 관련 기타 제도	115
가. 법정면세항목	98	7. 원가분담협의 관리	116
나. 영업세 과세기산점(起征点)	99	가. 원가분담협의의 적용범위	116
다. 감면세항목 경영 관련	99	나. 원가분담협의의 체결 요건 및 원칙	116
8. 신고납부	99	다. 원가분담협의의 주요내용	117
가. 납세기간	99	라. 원가분담협의의 안건 작성 및 심사	117

목차

마. 원가분담협의 집행	117	8. 출경제한	136
바. 원가분담협의 참여자 변경 및 협의종료	118	9. 세금의 우선권	136
사. 원가분담협의 관련 사전승인합의	118	10. 합병, 분할시의 세금정산	136
아. 관련자료 관리	118	11. 세무기관의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137
자. 원가분담협의 세전공제 불가 원가	119	12. 과다 납부한 세금의 반환	137
8. 피지배외국기업 관리	119	13. 세금 추징	137
가. 개요	119	14. 법률구제 조치 관련	138
나. 신고의무	120	15. 기타	139
다. 피지배외국기업 배당액의 계산	120		
9. 과소자본세제	121		
가. 개요	121		
나. 공제불가 지급이자 및 계산방법	121		
다. 공제불가 지급이자의 처리	122		
10. 일반조세회피시도	123		
가. 일반조세회피의 규제대상	123		
나. 일반조세회피의 조사절차	124		
11. 대응조정 및 국제협상	124		
가. 대응조정의 실질	124		
나. 대응조정의 국제협상	125		
다. 대응조정의 방법	125		
제9장 중국과 한국의 세무조사 관련 비교	125		
제10장 세무관련 집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및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32		
1. 조세규정체계 특성상	132		
2. 조세혜택정책 적용상	132		
3. 체납금	133		
4. 세무기관의 인정과세	133		
5. 이전가격	134		
6. 세수보전조치	134		
7. 세수강제집행조치	135		

제1편 중국세법 개론

제1장_중국세법의 체계

1. 중국세법의 입법 및 정책 제정

중국은 조세 관련 입법 및 정책의 제정에 있어 지금까지 '세법의 통일, 과세권의 집중'을 강조하여 왔다. 중국은 1994년부터 조세분리제(分稅制,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및 관리권 분리)를 실행하면서 관리기구의 설치와 징수권한을 분리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조세 관련 입법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토가 광활하고 지역별 경제발전수준과 조세원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입의 세목의 징수, 정지 및 감세, 면세, 환급 관련 규정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및 해당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법률(法律) 형식으로 발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국무원에서 행정법규의 형식으로 발표 및 실행할 수도 있다. 한편 1994년 세계개혁 이후 각종 조세 해석권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었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각종 조세 관련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程序法) 및 해당 실시조례에 대하여 해석할 권리가 있으며, 성급 및 성급 이하 세무주관부서는 집행권만 가지고 해석권은 가지지 않게 되었다.

중국의 헌법,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세법 또는 조세정책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는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원회, 국무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법률, 법규로는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法律),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行政法規)와 국무원의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부문규장(部門規章) 등이 있다.

2. 중국세법의 입법 및 제정권한

중국세법의 입법 및 정책의 제정권한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법률(法律)

중국은 한국과 달리 '조세기본법'이 없으며 조세의 기본제도는 법률로 규정한다. 따라서 조세 법률은 헌법을 제외하고 중국의 세법체계 중에서 최고의 법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법률은 전인대에서 제정(예컨대 <개인소득세법>)하거나 또는 전인대상무위원회(예컨대 <세수징수관리법>)에서 제정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조세법률의 제정을 포함한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전인대상무위원회는 전인대의 상설기관으로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의 구성부분으로 입법권이 있는 것은 물론 국무원에게 관련 조세조례를 제정 및 발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조세법률은 전국에서 적용되는데,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저촉될 경우 무효가 된다.

나. 행정법규(行政法規)

국무원은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행정기관으로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의 조세 입법 관련 권한은 주로 3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 1)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세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실시조례와 행정법규를 제정(예컨대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 2)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세조례를 제정(예컨대 <증치세잠행조례>). 이렇게 제정된 조세조례는 실천을 통하여 조건이 성숙된 후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법률로 제정할 수 있음.
- 3)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조세법률 입법제안을 제출

행정법규는 중국법률체계상 헌법과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하위에 속하고 아래 부문규장, 지방성 법규 등보다는 상위에 있다. 행정법규는 전국에서 적용되는데, 헌법 및 상위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저촉될 경우 무효가 된다.

다. 부문규장(部門規章)

조세 관련 부문규장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등 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이러한 부문규장에는 예컨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공제납부 신고관리잠행방법>(個人所得稅全員全額高開申報管理暫行辦法), 세관총서에서 제정한 <세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등이 있다.

부문규장은 전국에서 적용되는데, 상위법(헌법, 법률, 행정법규)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저촉될 경우 무효가 된다.

라.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規)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해당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經濟特區)¹소재지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비교적 큰 도시(較大城市)²의 인민대표대회 및 해당 상무위원회는 본 도시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와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조세 관련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기준을 거쳐 실행할 수 있다.

마. 자치조례(自治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

민족자치지방(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포함)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와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을 거쳐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있으나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원칙과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헌법과 민족자치구역자치법(民族自治區域自治法)의 규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 중 민족자치구역에 대한 전문성 규정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규정은 할 수 없다.

바.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

성, 자치구, 직할시와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예컨대 국무원에서 발표한 법규인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에서 해당 조례를 실시함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특기할 바로서, 현재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조세 입법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세 관련 지방성 법규는 없으며, 따라서 해남성과 민족자치지방 외에 기타 성, 시는 조세 관련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홍콩과 마카오는 독립적인 조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장_중국세법의 분류

중국의 세법체계는 기타 국가의 세법체계와 유사하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세목은 19가지나 된다. 이처럼 다양한 세목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볼 필요가 있는바, 중국의 세법체계는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볼 수 있다.

¹ 심천(深圳), 주해(珠海), 하문(廈門), 산두(汕頭), 해남(海南) 등 5개 경제특구

² 성급 인민정부 소재지 도시(27개), 경제특구 소재지 도시(4개),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 도시(18개) 총 49개 도시가 포함됨. 해남 성 해구시(海口市)는 성급 인민정부 소재지에 기입.

1. 과세대상에 의한 분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자원세, 행위세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류기준이기도 하다.

1) 소득세(所得稅)

소득세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일정기간 내에 취득한 소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다. 소득액에는 이윤소득액과 기타 소득액 두 가지가 포함된다. 이윤소득이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個人經營者)가 얻은 수입에서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거래세 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기타 소득이란 급여, 노무보수, 주식 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 양도소득 등 소득을 가리킨다.

중국의 소득세에는 기업소득세(企業所得稅)와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두 가지 세목이 있다. 기업소득세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등 각종 내자기업 및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 등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적용되며, 개인소득세는 생산경영자의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된다.

2) 거래세(流轉稅)

거래세는 상품 또는 노무의 거래액(流轉額)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다. 상품 거래액이란 상품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액을 가리키며, 노무 거래액이란 기업 및 개인이 운송노무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수입액을 가리킨다. 한편 거래세는 거래액 전액(예컨대 영업세의 경우)을 과세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거래액 일부(예컨대 증치세는 전부의 거래액 중 새로 창조된 가치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다.

거래세는 주로 생산과 유통영역에서의 판매수입 또는 영업수입에 부과된다. 중국의 거래세에는 주로 증치세(增值稅), 소비세(消費稅), 영업세(營業稅), 관세(關稅)가 포함되며 이외에 거래세에 대한 부가세로 도시유지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와 교육비 부가(教育費附加)가 있다. 그 중 증치세와 소비세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복징수되는 세목이고, 증치세와 영업세는 병렬되는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가지만 적용된다.

3) 재산세(財產稅)

재산세는 납세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다. 여기에서 재산에는 크게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된다.

중국의 재산세에는 방산세(房產稅), 취득세(契稅), 차량선박세(車船稅) 등이 포함된다.

4) 자원세(資源稅)

자원세는 자연자원의 점유와 개발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주로 자원개발 종사자와 토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여기서 자연자원이란 사람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천연물질자원으로서 지하자원, 지상자원과 공간자원이 포함된다.

중국의 자원세에는 협의의 자원세(資源稅), 성진토지사용세(城鎮土地使用稅), 토지부가가치세(土地增值稅),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등이 포함된다.

5) 행위세(行爲稅)

행위세는 납세자의 특정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다. 행위세는 과세대상이 단일하고, 세율이 분산되며 세금 징수의 시작과 중단이 융통성이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방 재정수입의 재원이 된다. 중국의 행위세에는 인지세(印花稅)가 포함된다.

2. 징수권한과 수입지배권한에 의한 분류

중국은 1994년부터 조세분리제(分稅制,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및 관리권 분리)를 실행하였는데, 세금의 징수권한과 수입지배권한을 기준으로 중앙세, 지방세, 중앙지방공유세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앙세(中央稅)

중앙세란 중앙정부에서 입법하여 중앙정부에서 징수관리 및 수입을 지배하는 세목이다. 중앙세에는 주로 관세, 소비세, 세관에서 대신 징수하는 소비세와 증치세가 있다.

2)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란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입법하거나 또는 수권입법(授權立法, 전인대상무위원회 의 위임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말함)하여, 지방정부에서 징수관리 및 수입을 지배하는 세목이다. 지방세에는 성진토지사용세, 경작지점용세, 방산세, 차량선박세, 취득세,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가 포함된다. 한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도축세, 농업특산물세 등 이미 징수를 정지한 세목도 지방세 범주에 속한다.

3) 공유세(供享稅)

공유세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입을 일정비율 또는 법정방식에 따라 분배하는 세목이다. 공유세에는 아래 몇 가지가 있다.

- ① 증치세 : 중앙정부 75%, 지방정부 25%

② 영업세 : 철도부, 각 은행 본점, 각 보험회사 본점에서 집중납부한 부분은 중앙정부 귀속으로 하고, 기타는 지방정부 귀속으로 한다.

③ 기업소득세 : 철도부서, 각 은행 본점 및 해양석유기업이 납부한 부분은 중앙정부 귀속으로 하고, 기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분배비율은 1994년 조세분리제 실시 이래 여러 차례 조정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40%의 비율로 분배하여 왔다.

④ 증권거래인지세 : 중앙정부 97%, 지방정부 3%

⑤ 자원세 : 해양석유자원 수입은 중앙정부 수입으로 귀속되고 기타 자원세는 지방정부 수입으로 귀속된다.

3. 과세기준에 의한 분류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종가세, 종량세 및 복합세로 분류할 수 있다.

1) 종가세(從價稅)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가치 또는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중국의 대부분 세목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2) 종량세(從量稅)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체적, 면적, 용량, 수량, 무게 등 실물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다. 예컨대 자원세, 경작지점용세, 성진토지사용세, 차량선박사용세 등은 이에 해당한다.

3) 복합세(複合稅)

복합세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가(從價)와 종량(從量)을 결부한 세금계산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다. 즉 가치(또는 가격)와 실물량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및 과세하는 세목으로 예컨대 백주(白酒)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는 복합세에 해당한다.

4. 조세부담의 전가 가능 여부에 의한 분류

조세부담의 전가(轉嫁)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다.

1) 직접세(直接稅)

직접세는 세금을 납세자가 납부하고 부담하며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세목이다. 예컨대 소득세가 이에 해당한다.

2) 간접세(間接稅)

간접세는 세금은 납세자가 납부하나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세목이다. 예컨대 거래세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간접세라고 해서 전부 전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5. 세금과 가격의 관계에 의한 분류

세금과 가격의 관계에 의하여 가내세와 가외세로 분류할 수 있다.

1) 가내세(價內稅)

가내세는 상품가격의 구성요소로 되는 즉 상품가격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세목이다. 소비세, 영업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가외세(價外稅)

가외세는 상품가격 외에 부가되는 세목으로 증치세가 이에 해당한다.

제3장_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1. 외상투자기업 조세 관련 연혁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투자유치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대하여 상이한 조세제도를 적용하였다. 특히 1980년대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는 전면적인 혜택원칙을 견지하였다.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와 내국인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를 통일하였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원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등 세목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기업소득세는 여전히 상이한 제도를 적용(외상투자기업에 소득세 2면3감반 즉 2년간 소득세 100% 면제, 3년간 50% 면제를 해주는 혜택 제공)하였고 외상투자기업에게 적용되는 도시부동산세(城市房地產稅), 차량사용번호판세(車輛使用牌照稅)와 이에 상응하여 내자기업에 적용되는 방산세, 차량선박세 등은 여전히 통일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성진토지사용세, 도시유지건설세 및 교육비부가 등 내자기업에 부과되는 일부 세목을 잠시 징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제도는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전면적인 혜택원칙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외상투자기업에게 여전히 '초국민 대우'를 부여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WTO 가입 이후 경제의 고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일련의 조세법률, 정책의 발표를 통하여 과거 외상투자기업에 부여한 일련의 조세혜택정책을 취소하고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조세제도를 점차 통일하였다. 예컨대,

- ① 2007년부터 외상투자기업을 성진토지사용세 납세의무자의 범주에 포함
- ② 2007년부터 외상투자기업을 차량선박세 납세의무자의 범주에 포함
- ③ 2008년부터 외상투자기업을 경작지점용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주에 포함
- ④ 2008년부터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통일
- ⑤ 2009년부터 외상투자기업을 방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주에 포함 등

이로써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기업 소득세가 단일세율로 통일되면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초국민 대우' 또는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조세정책이 통일 세제, 공평경쟁의 조세정책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목

현재 중국에서 이미 공포한 조세법률, 법규 중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주요한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세무국에서 징수하는 세목 :

-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차량구입세(車輛購置稅) 등

2)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하는 세목:

- 영업세, 자원세, 개인소득세(은행예금이자 부분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국가세무국에서 징수), 토지증치세,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 경작지점용세, 인지세, 취득세 등

3)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목:

- 관세, 선박톤세, 대신 징수하는 증치세 및 소비세 등

일부 세목의 지역별 징수기관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예컨대 대부분 지역에서 인지세, 경작지점용세 등은 여전히 지방 재정부서에서 징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홍콩, 마카오, 대만계 기업 및 개인이 중국내에서 적용하는 세목은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납세 관련 규정을 참조 적용한다.

제4장_중국의 기업관련 세금 개요

중국의 주요 조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비고
기업 소득세	중국 경내의 기업과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조직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 기업은 불포함)	주민기업 : 25% 비주민기업 : 20%(실제 적용세율 10%) 소형영세기업 : 20% 하이테크기업 : 15%	
증치세	중국 경내에서 재화를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가공·수리·수선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개인	기본세율 : 17% 경감세율 : 13%(특정재화의 판매/수입) 교통운수업, 우체업:11% 현대서비스업 : 6% 영세율 : 0%(재화의 수출) 간이세율 : 3%(소규모납세의무자)	간이세율 적용시 매입증치세 공제 불가 재화의 수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 가능 (환급세율 5%~17%)
소비세	중국 경내에서 특정소비품을 생산 또는 위탁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와 개인	담배, 주류 및 주정, 화장품, 귀금속장식품 및 진주보석, 폭죽, 정제유,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소형자동차, 골프공 및 골프용품, 고급시계, 요트, 일회용 나무젓가락, 원목바닥재 등 14개 과세항목에 따라 상이함	재화의 수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 가능
영업세	중국 경내에서 영업세 과세 용역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업체와 개인	금융보험업,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매매 : 5% 건축업, 통신업, 문화체육업 : 3% 오락업 : 5%~20%	하나의 거래에 대해 증치 세와 영업세 중 하나만 징수하며, 중복 징수하지 않음
토지 증치세	국유토지사용권, 지상의 건축물 및 그 부속물을 양도하고 소득을 취득하는 업체와 개인	증치액에 대해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증치액과 공제항목금액의 비율(이하 "증치 비율")이 50% 미만인 부분 : 30% 증치비율이 50% 초과 100% 미만인 부분 : 40% 증치비율이 100% 초과 200% 미만인 부분 : 50% 증치비율이 200% 초과인 부분 : 60%	자가건조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되 증치액이 공제 항목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제 개 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잠정적으로 면제.
자원세	중국 경내에서 과세대상자원을 개발하는 단위와 개인 (중외합작으로 석유 또는 천연 가스를 개발하는 경우 비과세)	원유 : 8~30元/톤 천연가스 : 2~15元/천m ³ 석탄 : 0.3~5元/톤 기타비금속광물 : 0.5~20元/톤 또는 m ³ 흑색금속광물 : 2~30元/톤 유색금속광물 : 0.4~30元/톤 소금 : 0~60元/톤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비고
방산세	도시, 현성(顯城), 건제진(建制鎮), 공광구(工契區) 내의 건물소유자	방산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 및 납부할 경우 : 1.2%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계산 및 납부할 경우 : 12%	경영상 방산에 대하여만 과세
성진 토지 사용세	도시, 현성, 건제진, 공광구 내의 토지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	대도시 : 1.5~30元/m ² 중등도시 : 1.2~24元/m ² 소도시 : 0.9~18元/m ² 현성, 건제진, 공광구 : 0.6~12元/m ²	성급 인민정부가 상기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구체 적용세율을 결정함.
인지세	중국 경내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증빙을 수령하는 업체와 개인	차관계약 : 0.005% 매매계약, 건축설치공정도급계약, 기술계약 : 0.03% 가공도급계약, 건축공정탐사설계계약, 화물운수 계약, 재산권이전서류, 영업장부 : 0.05% 재산임대계약, 창고저장정보관계약, 재산보험계약 : 0.1% 권리증, 허가증과 기타 장부 : 5元	거래 쌍방 또는 다수의 거래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모두가 납세의무자가 됨. 인지(印花)를 구매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납부
취득세	중국 경내에서 토지 및 건물 권리를 이전할 경우 양도받는 업체와 개인	3~5%	성급 인민정부가 상기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구체 적용세율을 결정함.
차량 구입세	중국 경내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업체와 개인	10%(2010.12.31. 전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 7.5%의 경감세율 적용)	차량등기 전에 납부
관세	수입화물의 수하인 및 수출화물의 송하인	수입 관세율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관세쿼터세율 등 세율로 구분하며, 같은 품목에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함 중국 내 원자재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 관세대상품목을 선정 통제 품목별 세율이 상이함.	

본 보고서는 상기 주요 세목 중 기업과 관계가 가장 밀접한 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 및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를 중심으로 정리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제5장_기업소득세편

1. 기업소득세 개요

기업소득세는 중국 경내³⁾의 기업과 소득을 취득하는 기타 조직이 취득한 생산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세목이다.

1970년대 말까지 중국의 대외경제 관계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외자유치 규모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중국은 1980년 9월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을 발표하고 외상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개혁개방의 심화로 외자유치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해당 세제의 많은 부분은 현실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중국은 1991년 4월에 위 두 법규를 통합하여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발표하고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써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원적인 소득세제도가 전면 형성되어,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외상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다만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2면 3감반⁴⁾” 등 세제혜택으로 인해 외상투자기업의 실제부담세율은 일반적으로 내자기업보다 낮다. 이에 중국은 내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내외자기업의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6일자로 내자 기업에게 기존에 적용하여 온 <기업소득세법 잠행조례>와 외상투자기업에게 기존에 적용하여 온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통합하여 <기업소득세법>을 발표하여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제를 일원화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기업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법률,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소득세법(企業所得稅法)>(2007년 3월 16일 발표, 2008년 1월 1일 시행)
- 2)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企業所得稅法實施條例)>(2007년 12월 6일 발표, 2008년 1월 1일 시행)

2. 납세의무자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경내의 기업과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조직(이하 “기업”이라

통칭함)이며,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기업소득세법 제1조).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나뉜다.

가. 주민기업

주민기업이란 중국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또는 외국(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제2조). 즉 등록 지역 또는 실제 관리기구 중 하나가 중국 경내에 있으면 주민기업에 해당한다.

- 1) 등록지역 기준 : 중국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경제소득을 취득하는 조직을 포함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조).
- 2) 실제 관리기구 기준 : 실제 관리기구란 기업의 생산경영, 인원, 장부, 재산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전면 관리와 통제를 실시하는 기구를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조).

나. 비주민기업

비주민기업이란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시에 실제 관리기구도 중국 경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기업 또는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제2조). 여기서 ‘기구·장소’란 중국 경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및 장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조).⁵⁾

- ① 관리기구, 영업기구, 사무기구
- ② 공장, 농장, 자연자원을 개발·채굴하는 장소
- ③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 ④ 건축, 설치, 조립, 수리, 탐사 등 공정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 ⑤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기구·장소

비주민기업이 영업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국 경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대리인(기업 또는 개인)이 비주민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관, 납품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대리인은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구·장소로 간주된다.

³⁾ 중국 경내란 중국 대륙지역을 가리키며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⁴⁾ 제조업의 외상투자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실현하는 연도로부터 제1차년도, 제2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제3차년도부터 제5차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⁵⁾ 조세조약 등에서 “고정사업장”으로 표시하는 것이겠으나 이하에서는 중국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의 납세의무

주민기업은 전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주민기업은 중국 경내 및 경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비주민기업은 한정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중국 경내 원천 소득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을 경우 해당 기구·장소가 취득한 중국 경내 원천소득 및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해당 설립된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⁶되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해당 설립한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을 경우 중국 경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기업 소득세법 제3조).

여기서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구·장소가 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지분, 채권을 소유하거나 소득을 취득한 재산 등을 소유·관리·지배하는 것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조).

라. 과세소득 원천지의 확정

참고로, 과세소득의 원천지는 다음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

- ① 재화판매소득 : 거래활동의 발생지에 따라 확정한다.
- ② 노무제공소득 : 노무 발생지에 따라 확정한다.
- ③ 재산양도소득 : 부동산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확정하고, 동산양도소득은 동산을 양도하는 기업 또는 기구·장소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하며, 권익성 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은 투자대상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한다.
- ④ 주식 배당금(股息), 배당(紅利) 등 권익성 투자소득 : 소득을 분배하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한다.
- ⑤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기업 또는 기구·장소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하거나 또는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확정한다.
- ⑥ 기타 소득 :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에서 확정한다.

3.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기업의 매 납세년도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액 및 이월공

⁶ 기업소득세법은 “실질적인 연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제가 가능한 이전 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기업소득세법 제5조).

$$\text{과세소득} = \text{수입총액} - \text{비과세수입} - \text{면세수입} - \text{각종 공제액} - \text{이월결손금}$$

과세소득의 계산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간에 속하는 수입과 비용은 수불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기간의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비용은 당해 기간에 수불된 경우라도 당해 기간의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조).

한편 과세소득은 회계이윤과도 상이한 개념으로 과세소득은 회계이윤을 근거로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납세조정⁷을 진행한 후 산정된다. 양자의 관계는 다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text{과세소득} = \text{회계이윤} + \text{납세인상조정} - \text{납세인하조정}$$

가. 수입총액

기업이 화폐 또는 비화폐 형식으로 취득한 각종 수입이 수입총액이다(기업소득세법 제6조).

화폐형식 수입에는 현금, 은행예금, 매출채권, 받을 어음, 만기보류예정 채권투자 및 채무면제 등이 포함되며, 비화폐 형식 수입에는 고정자산, 생물자산(生物資產), 무형자산, 주식투자, 재고, 만기 전 매각예정 채권투자, 노무 및 관련 권익 등을 포함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조). 비화폐 형식으로 취득한 수입은 공정가액(公允價值)에 따라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른바 공정가액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확정된 가치를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3조).

1) 수입인식 시기

수입인식은 발생주의와 실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소득의 수입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재화판매소득 :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수입인식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嚴認企業所得稅收入若干問題的通知〉, 국세발[2008]875호, 제1조)

⁷ 여기서 납세인상조정은 “익금산입” 내지 “손금불산입”에 해당하고, 납세인하조정은 “익금불산입” 내지 “손금산입”에 해당할 것이다.

(i) 수입인식 조건 :

- (a) 재화판매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기업이 상품 소유권 관련 주요 리스크와 보수를 매입자에게 이전하였을 것
- (b) 기업이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계속관리권을 보류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통제하지도 않았을 것
- (c) 재화판매 수입금액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을 것
- (d) 이미 발생한 또는 향후 발생할 판매자의 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을 것

(ii) 수입인식 시기

- (a) 대금은행추심(托收承付)방식을 취한 경우 위탁수속을 처리시 수입을 인식
- (b) 선수금방식을 취한 경우 상품을 발송시 수입을 인식
- (c) 설치 및 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접수하고 설치 및 검사를 완료시 수입을 인식하되 설치절차가 비교적 간단할 경우 상품을 발송시 수입을 인식
- (d) 수수료지급방식으로 대리판매를 위탁한 경우 대리판매리스트를 접수시 수입을 인식

② 노무제공소득 : (기업소득세 수입인식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 제2조)

(i) 수입인식 조건

기업이 각 납세기말에 노무거래를 제공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공사진도(완공률)법에 따라 수입을 인식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수입의 전액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을 것
- (b) 거래의 공사진도를 신뢰성 있게 확정할 수 있을 것
- (c) 이미 발생한 또는 향후 발생할 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을 것

(ii) 수입인식 시기

- (a) 설치비 : 설치공사 진도에 따라 수입을 인식하며, 설치공사가 재화판매의 부대조건일 경우에는 재화판매수입의 인식시기를 기준
- (b) 홍보매개의 수입 : 관련 광고 또는 상업행위가 대중 앞에 나타났을 경우 수입을 인식하며, 광고의 제작비는 광고의 완성진도에 따라 수입을 인식
- (c) 소프트웨어비용 : 특정된 거래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수취한 비용은 개발진도에 따라 수입을 인식한다.
- (d) 서비스비용 : 재화의 판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분이 가능한 서비스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내에 분할하여 수입을 인식
- (e) 예술공연, 연회초대와 기타 특수한 활동으로 수취한 비용 : 관련 활동 발생시 수입을 인식하며, 수취한 비용이 여러 항목의 비용이 포함될 경우 각항 활동에 합리적으로 분할하여 각기 수입을 인식
- (f) 회원비 : 입회 또는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 회원자격 취득만 허용하고 모든 기타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해 모두 별도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회원비를 수취시 수

입을 인식하고, 입회 또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원은 회원기간 내에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각종 서비스 또는 상품을 획득할 수 있거나 또는 비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회원비는 반드시 전체 효익기간 내에 수입을 분할 인식

(g) 노무비 : 장기적으로 거래처에게 중복되는 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노무비는 노무 활동 발생시 수입을 인식

- ③ 재산양도소득 : <기업소득세법>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재화의 판매와 유사하므로 재화판매소득 부분을 참조하여 수입을 인식 가능
- ④ 주식 배당금, 배당 등 권익성 투자소득 : 국무원 재정 · 세무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대상회사가 이윤분배를 결정한 날(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7조)
- ⑤ 이자소득 : 계약서에 약정된 채무자의 이자 지급일(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8조)
- ⑥ 임대료소득 : 계약서에 약정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일(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9조)
- ⑦ 특허권사용료소득 : 계약서에 약정된 특허권사용료의 지급일(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0조)
- ⑧ 수증소득 : 실제로 증여자산을 받은 날(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1조)

2) 특수 수입인식 시기

- ① 할부판매의 경우 : 계약서에 약정된 대금수령일(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3조)
- ② 대형기계설비, 선박, 비행기 등의 수탁가공제조 및 건축, 안장, 조립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노무서비스 등의 경우 : 지속시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납세년도 내의 공사진도 또는 완성한 업무량에 따라 수입의 실현을 인식(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3조).
- ③ 제품 분배(產品分成) 방식으로 취득한 수입 : 기업이 제품을 분배 받은 날에 수입이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고 해당 수입은 제품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4조).
- ④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 및 화물 · 재산 · 노무를 기증 · 채무상환 · 험찬 · 광고 · 샘플 · 직원복지 또는 이윤분배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재화의 판매 · 재산의 양도 또는 노무의 제공으로 간주. 다만 국무원의 재정 · 세무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5조)

나. 비과세수입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기업소득세법 제7조).

1) 재정보조금

재정보조금이란 각급 인민정부가 예산관리에 범주에 포함하여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조직에게 지급하는 재정자금을 말한다. 다만 국무원과 국무원 재정 · 세무주관부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26조).

2) 법에 따라 수취하고 재정관리에 납입하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정부성 기금
행정사업성 수수료란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사회공공관리를 시행하거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특정대상으로부터 수취하여 재정관리에 납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성 기금이란 기업이 법률·행정법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수취하여 전용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재정자금을 말한다(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26조).

3)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비과세 수입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비과세 수입이란 기업이 취득하는 수입으로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서가 전용 용도를 규정하고 국무원에서 비준한 재정성 자금을 말한다(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26조).

다. 면세수입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기업소득세법 제26조).

- 1) 국채이자수입
국채이자수입이란 기업이 국무원 재정부서가 발행한 국채를 소지하면서 취득한 이자수입을 말한다(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82조).
- 2) 조건에 부합되는 주민기업간의 주식 배당금, 배당 등 권익성 투자수익
주민기업이 기타 주민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 배당금, 배당 등 투자수익을 말한다. 다만 주민기업이 공개발행하고 상장해서 유통하는 주식을 12개월 미만 보유하여 취득한 투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83조).
- 3)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이 주민기업으로부터 취득한 해당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
주민기업이 공개발행하고 상장해서 유통하는 주식을 12개월 미만 보유하여 취득한 투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83조).
- 4)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조직이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조직을 말한다(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84조).

- ① 법에 따라 비영리조직 등기수속을 하였을 것
- ②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할 것
- ③ 취득한 수입을 해당 조직과 관련되고 합리적인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등기심사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사업에 사용할 것
- ④ 재산 및 과실을 분배에 사용하지 않을 것
- ⑤ 등기심사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직의 말소 후의 잉여재산을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등기관리기관이 해당 조직과 성질, 취지가 동일한 조직에 기증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회에 공표할 것
- ⑥ 투자자가 해당 조직에 투입된 재산에 대한 여하한 재산권을 유보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
- ⑦ 종업원의 임금·복지 지출이 규정한 비율 내에서 통제되고 변형하여 해당 조직의 재산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조직의 수입에는 국무원의 재정·세무 주관부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영리조직이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85조).

라. 각종 공제

기업의 지출을 과세소득 계산시 수입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제범위와 기준은 과세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기업이 생산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지출은 수익성 지출과 자본성 지출로 구분되는바, 수익성 지출은 당기에 직접 공제하여야 하고 자본성 지출은 분할하여 공제하거나 또는 관련 자산 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며 당기에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소득세법> 및 해당 실시세칙에서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은 중복 공제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8조).

1) 공제의 내용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 등을 포함한 기업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수입취득과 관련되고 합리적인 지출은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8조). 여기서 관련된 지출이란 수입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말하며, 합리적인 지출이란 생산경영의 관습에 부합되며 자산원가와 당기 손익에 기입하여야 하는 필요하고 정상적인 지출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7조).

- ① 원가 : 기업이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생산원가, 판매원가, 업무지출 및 기타 소모비용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9조).

- ② 비용 : 기업이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판매비용, 관리비용과 재무비용을 말한다(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0조).
- ③ 세금 :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기업소득세와 공제(抵高) 가능한 증치세 외의 기타 각종 세금 및 부가세를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1조).
- ④ 손실 :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고정자산과 재고 차이(盤虧), 파손, 폐기손실, 재산 양도손실, 대손상각 손실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요소로 발생된 비정상적인 손실 및 기타 손실을 말한다. 손실은 책임자의 배상 및 보험 배상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며, 이미 손실로 처리한 자산은 이후 납세년도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당기 수입에 산입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2조).
- ⑤ 기타 지출 : 원가, 비용, 세금, 손실을 제외한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생산경영 활동과 관련이 있는 합리적인 지출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3조).

2) 공제가능항목 및 기준

다음의 항목은 과세소득의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① 급여·임금 지출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급여·임금은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급여·임금이란 기업이 매 납세년도에 기업의 임직원 혹은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형식 또는 비현금 형식의 모든 노동보수를 말하는바, 기본급여,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임시상여금, 잔업비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4조).

‘합리적인 급여·임금’이란 기업이 주주총회, 이사회, 급여위원회(薪酬委員會) 또는 기타 관리기구에서 제정한 급여·임금제도에 따라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임금을 말한다(국가세무총국 기업의 급여·임금 및 종업원복리비의 공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企業工資薪金及職工福利費扣除問題的通知, 國稅函[2009]3호, 이하 “급여·임금 관련 통지”) 제1조).

② 종업원복리비, 노조경비와 종업원 교육비

기업에서 발생한 종업원복리비 지출은 임금·급여 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0조). 종업원복리비는 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 (i) 종업원의 위생보건, 생활, 주택, 교통 등을 위하여 발급한 각종 보조금과 비화폐성 복리비 : 난방비 보조금, 고온수당(職工防暑降溫補助), 생활곤란보조금, 종업원 식당경비 보조금, 종업원 교통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급여·임금 관련 통지 제3조).
- (ii) 기타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 종업원 복리비 : 장례조의보조금, 친족방문교통비 등이

포함된다(급여·임금 관련 통지 제3조).

(iii) 기업이 지출한 노조경비 : 급여·임금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1조).

(iv) 기업에서 발생한 종업원 교육비 : 급여·임금 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 부분은 이후 납세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2조).

(v) 기본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 기업이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공상보험비, 생육보험비 등 기본 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은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5조).

- 기업이 전체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보충양로보험비, 보충의료보험비는 종업원 급여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보충양로보험비, 보충의료보험비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補充養老保險費/補充醫療保險費有關企業所得稅政策問題的通知), 국세발[2009]27호).

- 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공정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신안전보험료와 국무원의 재정·세무 주관부서가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한 기타 상업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업이 투자자나 종업원을 위해 지급한 상업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6조).

③ 차관비용

(i) 차관비용의 자본화

기업이 고정자산, 무형자산을 구입·건설하거나 12개월 이상의 제조를 거쳐야 판매 가능 상태에 달하는 재고 재화를 위해 차입한 경우 관련 자산의 구입·건설기간 내에 발생한 차입비용은 자본성 지출로서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7조).

(ii) 자본화가 불필요한 차입비용

금융기구에서 차관하여 발생한 이차지출, 비준을 거쳐 발행한 사채의 이차 지출 등 자본화가 불필요한 차입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비금융기구에서 차입하였을 경우 이차 지출은 금융기관의 같은 기간, 같은 종류의 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8조).

④ 외환환산손실

기업이 화폐거래 및 납세년도 종료시점에 인민폐 이외의 화폐성 자산, 부채를 기말 인민폐

평균환율에 의해 인민폐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한 환차손실은 관련 자산의 원가에 산입되었거나 또는 소유자에 이익분배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9조).

⑤ 임대비용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의 관련된 업무로 발생한 임대비는 발생액의 60%를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매출(영업)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3조).

【例 1】A사의 2008년도 매출액은 6000만원인, 실제로 지출한 임대비용은 60만원이다.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가능한 임대비용은 얼마인가?

임대비용 발생액의 60% = 36(만원)

임대비용 공제한도 = 매출액 × 0.5% = 30(만원)

따라서 임대비용 발생액의 60%는 임대비용 공제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과세소득 계산시 30만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으며 임대비용 발생액 60만원과 공제금액 30만원 사이의 차액 즉 30만원은 납세인상조정한다.

⑥ 광고선전비

기업의 매 납세년도에서 발생한 조건에 부합되는 광고비 및 업무선전비용은 국무원의 재정·세무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의 매출(영업)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부분은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4조).

⑦ 커미션(佣金)과 수수료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커미션과 수수료는 아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 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의 세전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企業手續費及佣金支出稅前扣除政策的通知>, 재세[2009]29호).

(i) 보험기업 : 재산보험회사의 한도액은 당해 연도의 보험료 수입 총액에서 보험 계약금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의 15%, 인신보험회사의 한도액은 당해 연도의 보험료 수입 총액에서 보험 계약금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의 10%

(ii) 기타 기업 : 적법한 경영자격을 보유한 중개서비스기구 또는 개인(거래 쌍방의 종업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은 포함하지 않음)과 체결한 협의서/계약에서 확인한 수입금액

의 5%

(iii) 위탁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등 이체방식 외의 기타 방식으로 커미션과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세전공제할 수 없다.

⑧ 전용자금

기업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한 환경보호, 생태회복 등 전용자금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전용자금을 적립한 후에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5조).

⑨ 보험료

기업이 재산보험에 가입하였고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6조).

⑩ 고정자산 임대료

일반 임대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발생한 임대료는 임대기간에 따라 균할하여 공제하고, 금융리스방식(融資租賃方式)으로 고정자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발생한 임대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 가치의 일부분으로 되는 부분은 감가상각하여야 하고 분할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7조).

⑪ 노동보호지출(勞動保護支出)

기업이 발생된 합리적인 노동보호지출은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8조). 여기서 노동보호지출이란 업무수요로 종업원에게 작업복, 장갑, 안전보호용품 등을 배치하거나 또는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⑫ 본사 관리비용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의 중국 경외 본사에서 발생한 해당 기구·장소의 생산경영과 관련되는 비용은 본사에서 제출한 비용집계범위, 정액, 분담근거와 방법 등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분담하였을 경우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0조).

⑬ 공익성 기부금

공익성 기부금은 연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연도 이윤총액이란 기업이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도 회계이윤을 말한다(기

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3조). 여기서 공익성 기부금이란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⁸ 또는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및 해당 부서를 통해 <공익사업기부법>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용으로 기부한 금액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1조).

⑭ 자산손실

자산손실이란 기업이 생산경영활동 중에서 실제로 발생한 과세소득의 취득과 관련되는 자산손실을 말하며 현금손실, 예금손실, 대손손실, 대출손실, 지분투자손실, 고정자산과 채고 차이(盤亏)·파손·폐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요소로 발생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2조).

자산손실은 실제로 확인/발생한 당해 납세년도 내에 신고 및 공제하여야 하는바 조기 또는 지연하여 신고 및 공제할 수 없다. 여러 사정으로 자산손실을 당해 납세년도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의 기준을 거쳐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소급하여 공제하고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과세소득을 상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조정 후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하거나 또는 당기 납부세금을 대체할 수 있다(기업자산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企業資產損失所得稅稅前扣除管理暫行辦法, 국가세무국 2011년도 25호 공고 제4조).

자산손실은 세무기관에 신고후에만 공제할 수 있으며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공제할 수 없다.

3) 공제불가항목

다음의 항목은 과세소득의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제10조).

- ① 기업이 투자자에게 지급한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
- ② 기업소득세 세액
- ③ 세금 체납금
- ④ 과태료, 벌금, 재물 몰수로 인한 손실

⁸ 공익성 사회단체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기금회, 자선조직 등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2조).

- (i)법에 따라 등기하여 법인자격을 구비할 것
- (ii)공익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iii)모든 자산 및 그 재산증식이 그 법인의 소유일 것
- (iv)수익과 운영이 설립목적사업에 사용될 것
- (v)잉여재산이 어떠한 개인이나 영리조직에 귀속되지 않을 것
- (vi)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경영하지 않을 것
- (vii)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갖추고 있을 것
- (viii)기부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사회단체의 재산분배에 참여하지 않을 것
- (ix)국무원의 재정 및 세무관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지출
- ⑥ 협찬지출, 협찬지출 중 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비광고성 지출
- ⑦ 심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준비금 지출. 즉 국무원의 재정·세무 주관부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자산감치준비금, 리스크준비금 등 준비금 지출
- ⑧ 취득한 소득과 무관한 기타 지출
- ⑨ 기업간 지급하는 관리비, 기업내 영업기구 사이에 지급한 임대료와 특허권 사용료 및 비은행 기업내의 영업기구간에 지급한 이자(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49조)

마. 결손보전

결손이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과 해당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매 납세년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바(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조), 회계상의 결손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기업의 결손금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이후 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이월 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제18조).

한편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통합(匯總)하여 계산 및 납부할 경우 경외 영업기구의 결손금으로 경내 영업기구의 이익을 공제할 수 없지만(기업소득세법 제17조) 기업의 경외 업무 사이의 이익과 손실은 상호 보전할 수 있다. 기업의 경외 업무 사이의 이익과 손실의 상호 보전이란 한 개 국가내의 이익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4. 세율

기업소득세의 기본세율은 25%이며(기업소득세법 제4조), 기본세율에 기초하여 우대세율(優惠性稅率), 하이테크기업(高新技術企業)의 세율과 예제소득세(預提所得稅)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우대세율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영세기업(小型微利企業)은 20%의 우대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기업소득세법 제28조). 구체내역은 아래 “세수우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나. 하이테크기업의 세율

국가가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은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기업소득세법 제28조). 구체내역은 아래 “세수우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다. 예제소득세 세율

예제소득세(預提所得稅)란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해당 설립한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을 경우 중국 경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를 말한다.⁹

예제소득세의 세율은 20%(기업소득세법 제4조)이며, 실제 적용세율은 10%이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例2】외국기업인 C사는 중국내에 생산공장 D사를 설립하였다. 2008년 C사는 중국내 E사에 게 상표사용권을 제공하고 특허권사용료 500만위안을 취득하였다. C사의 기업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C사는 중국내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해당 설립한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중국내 원천소득 전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에 따라 예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제소득세 납부할 세액 = 500 × 10% = 50(만위안)

5. 자산의 세무처리

기업의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장기감가상각비용(長期待憊費用), 투자자산,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각종 자산은 역사적 원가를 세무상 가액(計稅基擘)¹⁰으로 한다. 여기서 역사적 원가란 기업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에 실제 발생한 지출을 가리키며, 기업이 각종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당해 자산의 가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국무원의 재정 및 세무주관부문이 손익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세무상 가액을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6조).

가. 고정자산의 세무처리

1) 개요

고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거나 임차하거나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사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비화폐성 자산을 가리키는바, 여기에는 주택, 건축물, 기계, 운수공구 및 기타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되는 설비, 기구, 공구 등이 포함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7조).

⁹ 이것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한 해당 고정사업장에서의 귀속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총괄주의 과세원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중국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¹⁰ 우리 세법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할 것인바, 여기서는 중국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정자산의 세무상 가액

- ①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 : 구매가격과 지급한 관련 세금과 비용 및 해당 자산이 예정된 용도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기타 지출의 합계금액(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8조 제(1)항)
- ② 자체적으로 건설한 고정자산 : 준공결산 전까지 발생한 지출(동법 제58조(2)항)
- ③ 금융리스한 고정자산 : 임대계약에서 약정한 지급총액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발생한 관련 비용의 합계금액, 임대계약에서 지급총액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발생한 관련 비용의 합계금액(동법 제58조(3)항)
- ④ 평가증(盤盈)한 고정자산 : 동류 고정자산의 재매입원가(重置完全價值)(동법 제58조(4)항)
- ⑤ 기증, 투자, 비화폐성 자산교환,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해당 자산의 고정가치와 지급한 관련 세금과 비용의 합계금액(동법 제58조(5)항)
- ⑥ 개축한 고정자산 : 개축 과정에 발생한(동법 제58조(6)항). 다만 전액 감가상각한 고정자산의 개축과 임차한 고정자산의 개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기감가상각비용에 기입하여 단계별로 배부하여야 하고, 기타 고정자산의 개축 지출은 고정자산의 원래 가치를 증가하여야 하며 고정자산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연한을 적당히 연장하고 감가상각도 상응하게 조정하여 계산(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8조, 제69조).

3) 감가상각 불가 고정자산

다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제11조).

- ① 주택, 건축물 이외의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고정자산
- ② 경영임대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
- ③ 금융리스방식으로 임대한 고정자산
- ④ 전액 감가상각한 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
- ⑤ 경영활동과 무관한 고정자산
- ⑥ 단독으로 평가하여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기입한 토지
- ⑦ 기타 감가상각 불가 고정자산

4)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고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반드시 고정자산의 사용하기 시작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하며, 사용을 중지한 고정자산은 사용을 정지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을 중단하여야 한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질과 사용상황에 따라 추정잔존가액(預計淨產值)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확정된 추정잔존가액은 변경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9조).

한편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년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속감가상각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32조).

5) 고정자산의 최저상각연한

- ① 주택, 건축물 : 20년
- ② 비행기, 기차, 선박, 기기, 기계 및 기타 생산 설비 : 10년
- ③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도구, 공구, 가구 등 : 5년
- ④ 비행기, 기차, 선박 이외의 기타 운수공구 : 4년
- ⑤ 전자설비 : 3년(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0조)

나. 생산성 생물자산의 세무처리

1) 개요

생물자산은 소모성 생물자산, 생산성 생물자산 및 공익성 생물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바, 그 중 생산성 생물자산은 일정한 정도에서 고정자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산성 생물자산이란 농산품의 생산, 노무제공 또는 임대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산을 말하며 경제림, 연료림, 생산용 가축과 역무용 가축 등이 포함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2조).

2) 생산성 생물자산의 세무상 가액

- ① 외부에서 매입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구매가격과 지급한 관련 세금과 비용의 합계금액을 세무상 가액으로 한다.
- ② 기증, 투자, 비화폐성 자산교환, 채무재조정 방식으로 취득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해당 자산의 고정가치와 지급한 관련 세금과 비용의 합계금액을 세무상 가액으로 한다.

3)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생산성 생물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반드시 생산성 생물자산의 사용하기 시작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하며, 사용을 중지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사용을 정지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을 중단하여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의 성질과 사용상황에 따라 추정잔존가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확정된 추정잔존가액은 변경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3조).

4) 생산성 생물자산의 최저감가상각연한

- ① 임목류 : 10년
- ② 가축류 : 3년(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4조)

다. 무형자산의 세무처리

1) 개요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생산, 노무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실물 형태가 없는 비화폐성 장기자산을 말하는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영업권 등이 포함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5조).

2) 무형자산의 세무상 가액

- ① 외부에서 매입한 무형자산은 구매가격과 지불한 관련 세금과 비용 및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예정 용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지출의 합계금액
- ②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중 자산의 자본화 조건에 부합되고 예정 용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지출
- ③ 기증, 투자, 비화폐성 자산교환, 채무재조정 방식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고정가치와 지급한 관련 세금과 비용의 합계금액(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6조)

3) 감가상각 불가 무형자산

다음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제12조).

- ① 자체개발 관련 지출을 과세소득 계산시 이미 공제한 무형자산.
- ② 자체적으로 창조한 영업권
- ③ 경영활동과 무관한 무형자산
- ④ 감가상각비의 공제가 불가능한 기타 무형자산

4)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연한

- ①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다.
- ②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연한은 10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투자로 하거나 또는 양수 받은 무형자산은 관련 법규정 또는 협의/계약에서 사용연한을 규정하였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상각비용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 ③ 외부에서 영업권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기업을 전부 양도하거나 또는 청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7조)

라. 장기감가상각비용의 세무처리

장기감가상각비용이란 기업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당기 혹은 차기 이유에 각각 나누어 비용처리하는 것으로서 감가상각기간이 1년 이상인 각종 비용을 말한다.

다음 장기감가상각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13조).

- ① 전액 감가상각한 고정자산에 대한 개축지출 : 향후 예상 사용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고정자산의 개축지출이란 기업이 건물, 건축물의 구조변경 사용연한 연장 등에 발생한 지출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8조).
- ② 임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개축지출 : 계약에서 약정한 잔여 임대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8조).
- ③ 고정자산의 대수리지출(大修理支出) : 향후 사용 가능한 연한에 따라 상각한다. 대수리 지출이란 수리지출액이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시점 세무상 가액의 50% 이상에 달하며 수리한 후 사용년수가 2년 이상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9조).
- ④ 기타 장기상각비용 : 지출이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상각하되 최저상각연한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0조).

마. 투자자산의 세무처리

1) 개요

투자자산이란 기업이 대외적으로 권익성 투자 및 채권성 투자를 하여 형성된 자산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1조).

여기서 권익성 투자란 투자대상회사가 접수하였고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필요 없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회사의 순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를 말하며, 채권성 투자란 회사가 그의 관계사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였고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이자지급성격의 방식으로 보상이 필요하는 용자를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9조).

2) 투자자산의 원가

- ① 현금지급방식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은 구매가격을 원가로 한다.
- ② 현금지불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지급된 관련 세금과 비용의 합계금액을 원가로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1조)

3) 투자자산의 세무처리

기업이 투자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시에 투자자산의 원가를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1조).

바.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1) 개요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제품 또는 상품, 생산과정에 있는 재공품, 생산 또는 노무제공 과정에서 소모된 자료와 물자 등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2조).

2) 재고자산의 원가

- ① 현금지급방식으로 취득한 재고는 구매가격과 지급된 관련 세금과 비용의 합계금액을 원가로 한다.
- ② 현금지불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취득한 재고는 해당 재고의 공정가치와 지급된 관련 세금과 비용의 합계금액을 원가로 한다.
- ③ 생산성 생물자산으로 수확한 농산물은 산출(產出) 또는 수확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한 간접비용 등 필요한 지출의 합계금액을 원가로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2조)

3) 재고의 세무처리

기업이 사용 또는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방법은 선입선출법(先進先出法), 가중 평균법(加權平均法), 개별가격계산법(個別計價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방법은 일단 선택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3조).

6. 세수우대

중국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과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의 우대혜택을 부여한다(기업소득세법 제25조).

가. 면세수입

다음 수입은 기업소득세를 면세한다(기업소득세법 제26조).

- ① 국채이자수익
- ② 조건에 부합되는 주민기업간의 주식배당금,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
- ③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이 주민기업으로부터 취득한 해당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식배당금,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
- ④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나. 면제, 감면수입

1) 기업의 다음 수입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6조 제(1)항).

- ① 야채, 곡물, 서류(薯類), 유류 작물, 두류(豆類), 목화, 마류(麻類), 당류 식물, 과일류, 견과류의 재배
- ②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육성
- ③ 약재의 재배

- ④ 임목의 육성과 재배
- ⑤ 목축, 가금의 사육
- ⑥ 임산품의 채집
- ⑦ 관개, 농산품 초기가공, 수의(獸乘), 농업기술 보급, 공기계 작업 및 유지보수 등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서비스 프로젝트
- ⑧ 원양어업

2) 기업의 다음 수입은 기업소득세를 50% 면제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6조 제(2)항).

- ① 화초, 차 및 기타 음료작물과 향료작물의 재배
- ② 해수양식, 내륙양식

3) 국가중점지원 공공기초시설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투자·경영소득
국가중점지원 공공기초시설 프로젝트란 <공공기초시설프로젝트 기업소득세 우대목록>(公共基擘設施項目企業所得稅優惠目錄)에서 규정한 부두, 공항, 철도, 도로, 도시공공교통, 전력 등 프로젝트를 말한다.

기업이 국가중점지원 공공기초시설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투자·경영소득은 최초로 생산경영수입을 취득한 납세년도로부터 기산하여 제1년도부터 제3년도까지의 기업소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제4년도부터 제6년도까지의 기업소득세는 50% 면제한다. 다만 도급경영, 도급건설하는 경우 또는 자가건설하여 자가사용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를 받을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7조).

감면기간 내에 해당 프로젝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받은 날로부터 잔여 감면기간 내에 감면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만료 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감면우대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9조).

4)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절수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에너지절약·절수 프로젝트에는 공공오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의 종합개발 이용, 에너지 절약과 배출감소를 위한 기술개조, 해수담수화 등 프로젝트를 말한다. 기업이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절수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은 최초로 수입을 취득한 납세년도로부터 기산하여 제1년도부터 제3년도까지의 기업소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제4년도부터 제6년도까지의 기업소득세는 50% 면제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8조). 감면기간 내에 해당 프로젝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받은 날로부터 잔여 감면기간 내에 감면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만료 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감면 우대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9조).

5) 주민기업의 기술양도소득

하나의 납세년도 내에 주민기업의 기술양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50% 면제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

6) 비주민기업의 예제소득세에 관한 우대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비록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해당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 ①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출을 제공하여 취득한 이자소득
- ②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정부와 주민기업에 우대대출을 제공하여 취득한 이자소득
- ③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 소득

다. 우대세율

1) 소형영리기업의 우대세율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영세기업에 대하여 20% 우대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기업소득세법 제28조).

소형영세기업이란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산업이 아닌 기타 산업에 종사하고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2조).

- ① 공업기업 : 연도 과세소득이 30만원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총자산이 3000만원안을 초과하지 않음.
- ② 기타 기업 : 연도 과세소득이 30만원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총자산이 1000만원안을 초과하지 않음.

만일 전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결손보전한 후 잔여 과세소득을 적용하여 적용세율을 확정한다.

아울러 소형영세기업의 우대는 장부를 설치하여 자신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기업에 적용되며 <기업소득세 인정징수방법>(企業所得稅核定征收辦法, 국세발[2008]30호)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인 경우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조건이 구비되기 전에는 소형영세기업의 세율을 당분간 적용할 수 없다.

【例 3】 B사는 종업원수가 60명, 총자산이 600만위안, 2006년도 결손금액이 35만위안, 2007년도의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과세소득은 55만위안이다. B사의 적용세율은 얼마인가?
 우선 2007년도의 과세소득으로 2007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 20만위안으로 적용세율을 확정한다. B사는 2007년도의 과세소득은 20만위안, 종업원수는 60명, 총자산은 600만위안은 1,000만위안 미만으로, 소형영세기업의 조건에 부합되므로 적용세율은 20%이다.

2) 하이테크기업의 우대세율

국가가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은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기업소득세법 제28조).

여기서 국가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이란 핵심적이고 자주적인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가리킨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3조).

- ① 상품(서비스)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하이테크기술 영역>¹¹(國家重點支持的高新技術領域)이 규정한 범위에 속할 것
- ② 연구개발비가 매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 ③ 하이테크기술상품(서비스)수입이 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 ④ 과학기술인력이 기업의 직원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규정된 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 ⑤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에 규정한 기타 조건

한편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하이테크기업의 인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중국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등록된 기업으로 최근 3년 내 자주적 연구개발, 양수, 수증, 인수합병을 통하여 또는 5년 이상 독점 허가 방식을 통하여 주요제품(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것
- ② 제품(서비스)이 <국가 중점지하이테크 영역>에서 규정된 범위에 속할 것.
- ③ 전문대 이상 과학기술인원이 기업 당해 연도 직원 총수의 30% 이상, 그 중 연구개발인원 점유비율이 기업 당해 연도 직원 총수의 10% 이상에 달할 것

¹¹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하이테크기술 영역>에는 (1) 전자정보기술, (2) 바이오 및 신의약기술, (3) 우주항공기술, (4) 신소재기술, (5) 기술서비스업, (6)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기술, (7) 자원 및 환경기술, (8) 전통산업 개조 첨단기술

- ④ 기업이 과학기술(인문, 사회과학 제외)신지식을 획득하여 과학기술신지식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거나 제품(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펼치고 3개 회계년도의 연구개발비용이 총 매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의 요구에 부합될 것
 - (i) 최근 1년 매출액이 5,000만위안 미만인 기업 : 6% 이상
 - (ii) 최근 1년 매출액이 5,000만위안~2억위안 기업 : 4% 이상
 - (iii) 최근 1년 매출액이 2억위안 이상 기업 : 3% 이상
 그 중 전체 연구개발 비용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기업은 실제 경영기간으로 계산.
- ⑤ 하이테크제품(서비스)수입이 당해 연도 총 수입의 60% 이상에 달할 것
- ⑥ 기업 연구개발조직의 관리수준, 과학기술성과 전환능력, 지적재산권 보유량, 매출과 총자산 성장성 등이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업무지도> 요구에 부합될 것

라. 민족자치구의 세수우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구는 본 민족자치지방의 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 중 지방에 귀속되는 부분을 감면할 수 있다. 자치주(自治州), 자치현(自治縣)에서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성급 인민정부에 상정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제29조). 다만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산업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4조).

마. 추가공제에 의한 우대

1) 새로운 기술·제품·공예 개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기업이 새로운 기술·제품·공예 개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은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어 당기 손익에 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100% 기초공제와 더불어 연구개발비용의 50%를 추가 공제한다.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5조).

새로운 기술·제품·공예란 중국내에서 아직 연구개발성화로 형성하지 못한 기술·제품·공예로서 새로운 제품의 설계비용, 설비의 조절비용, 원재료와 반제품의 실험비용, 시술서적자료비용 등 비용을 포함한다.

2) 특정인원 임금의 추가공제

기업이 장애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비용으로 100% 기초공제와 더불어 해당 임금의 100%를 추가 공제한다. 장애자의 범위는 <장애자 보장법>(殘疾人保障法)에서 규정한다. 한편 국가에서 장려하는 기타 취업인원의 고용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추가공제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6조).

바.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창업투자에 종사하였을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31조).

창업투자기업이 비상장중소고신기술기업에 2년 이상 지분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였을 경우 해당 투자액의 7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의 공제 잔액은 이후 납세년도로 이월 하여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7조).

【例 4】 창업투자기업 F사는 2007년 초에 비상장중소고신기술기업인 G사에 3,000만위안을 투자하였는바, 2007년 F사의 과세소득은 6,000만위안, 2008년 과세소득은 9,000만 위안, 2009년 과세소득은 10,000만위안이다. F사는 기업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가?

F사는 지분투자 2년 만료되는 해(즉 2009년)에 비상장중소고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액 70%를 2009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연도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납부세액 = 6,000 × 25% = 1,500(만위안)

2008년도 납부세액 = 9,000 × 25% = 2,250(만위안)

2009년도 납부세액 = (10,000 - 10,000 × 70%) × 25% = 750(만위안)

사. 가속감가상각에 의한 우대

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진보 등 원인으로 가속감가상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32조).

가속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는 ① 기술진보로 인해 제품의 세대교체가 비교적 빠른 고정 자산과 ② 장기간 강한 진동이나 높은 부식 상태에 처해 있는 고정자산이 포함되며, 감가상각연한 단축방법을 채택하였을 경우 아래 최저감가상각년수의 60%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8조).

아. 자원종합이용에 대한 우대

기업이 <자원종합이용기업소득세 우대목록>(資源綜合利用企業所得稅優惠目錄)에서 규정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 국가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않되 국가와 산업의 관련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취득한 수입은 90%를 수입총액에 산입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9조).

자.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절수, 안전생산 전문용 설비투자에 대한 우대

기업이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環境保護專用設備企業所得稅優惠目錄), <에너지절약·절수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節能節水專用設備企業所得稅優惠

目錄), <안전생산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安全生產專用設備企業所得稅優惠目錄)에서 규정한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절수, 안전생산 등 전문설비를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전문설비 투자액의 10%를 당해 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의 공제 잔액은 이후 5개 납세년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상기 전용설비를 구입한 후 5년 내에 양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없으며 이미 감면한 기업소득세액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0조).

차. 과도기간의 세수우대

<기업소득세법> 실시 전에 이미 당시의 세수 법률, 행정법규와 기타 행정법규 효력을 가진 문건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도기간을 둔다(국무원의 기업소득세 과도 우대정책의 실시 관련 통지<國務院關於實施企業所得稅過渡優惠政策的通知>, 국세발[2007] 39호).

1) 2008년 1월 1일 부터 기존에 저세율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기업은 <기업소득세법>의 시행 후 5년 내에 점진적으로 <기업소득세법>이 규정한 법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15%의 세율을 적용 받던 기업의 과도기간 : 2008년 18%, 2009년 20%, 2010년 22%, 2011년 24%, 2012년 25%

② 24%의 세율을 적용 받던 기업의 과도기간 : 2008년부터 25% 세율 적용

③ “2면 3감반”¹², “5면 5감반” 등 정기적인 감면세 우대를 적용 받던 기업의 과도기간 : <기업소득세법> 시행 후에도 우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익을 얻지 못하여 우대를 받지 못한 기업의 우대기간은 2008년부터 기산한다.

④ 과도기간 우대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란 2007년 3월 16일 이전에 공상등기 등 설립등기를 완료한 기업을 말하며, 과도기간 우대를 실시하는 프로젝트와 범위는 <기업소득세 과도 우대 정책 실시표>(實施企業所得稅過渡優惠政策表)에서 규정한다.

2) 서부개발 우대정책 유지:

서부지역¹³에서 국가가 규정하는 장려산업을 주영업으로 하고 주영업수입이 기업총수입의

¹² 제조업의 외상투자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실현하는 연도로부터 제1차년도, 제2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제3차년도부터 제5차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감면한다.

¹³ 서부지역에는 중경시(重慶市),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貴州省), 운남성(雲南省),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 섬서성(陝西省), 감숙성(甘肅省), Ning화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청해성(青海省), 신강위글족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신강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와 광서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가 포함되며, 호남성토가족묘 조자치주(湖南省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 호북성은시토가족묘자치주(湖北省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吉林省延邊朝鮮族自治州)는 서부지역 우대정책을 참조 적용할 수 있다.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2001년~2010년까지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에서 규정한 장려산업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에서 규정한 산업을 주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서부지역에서 새로 설립한 교통, 전력, 수리, 우정, 방송TV업기업으로서 상기 항목의 수입이 기업총수입의 70% 이상인 내자기업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제1차년도, 제2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제3차년도부터 제5차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면제한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의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2면 3감반”의 소득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3) 기타

상기 과도기간의 우대정책이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우대정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이 선택한 최우대의 정책을 적용하되 중첩하여 누릴 수 없고 선택한 후 변경할 수도 없다.

7. 특별납세조정

가. 조정 범위

기업과 관계자(關聯方)간의 업무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해당 기업 또는 관계자의 과세수입 또는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 세무기관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41조).

여기서 관계자란 아래 기업, 기타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9조).

- ① 자금·경영·구매·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간접적 소유 또는 통제 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직·간접적으로 동일한 제3자에게 소유 또는 통제되는 경우
- ③ 기타 이익상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

나. 관련기업간 관련업무의 세무처리

1) 원가의 분배

기업이 해당 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 또는 양수 받거나, 노무를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 하여 발생한 원가는 과세소득 계산시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분배한다(기업소득세법 제41조).

여기서 독립거래원칙이란 관련이 없는 거래 상대방간의 공정거래가격 및 영업상규(營業常規)에 따라 거래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0조)

2) 이전가격사전합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예약정가안배(預約定價安排) 즉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를 두고 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란 기업이 미래 납세년도의 관련거래(이하 관련거래 또는 특수거래라 함)에 대한 가격결정 원칙과 계산방법을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세무기관과 독립거래원칙에 준하여 협상, 확인 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2조).

기업은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 제출시에 관계자간 업무거래에 관하여 “기업 연도 관련업무 보고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이 관련업무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기업 및 해당 관계자 및 관련업무의 조사와 유관한 기타 기업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제43조).

기업이 관계자와의 업무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된 자료가 거짓 또는 불완전하거나 또는 관련업무의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인정(이하 인정 또는 추계인정이라 함)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44조). 구체적인 인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5조).

- ① 동일 또는 동류 산업 유사기업의 이윤율 수준을 참고하는 방법
- ② 기업의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
- ③ 관련기업그룹의 전체 이윤의 일정한 비율로 결정하는 방법
- ④ 기타 합리적인 방법

기업이 세무기관에서 인정한 과세소득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에서는 인정한 해당 과세소득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조세회피지역 외국 자회사에 대한 처리

주민기업 또는 주민기업과 중국 주민이 통제하고 있으며 실제 조세부담이 25%보다 현저하게 낮은(일반적으로 법정세율 25%보다 50% 이상 낮을 경우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함) 국가(지역)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할 경우 상기 이윤 중 해당 주민기업에 귀속되는 부분은 해당 주민기업의 당기 수입으로 산입한다(기업소득세법 제45조). 여기서 말하는 통제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7조).

- ① 주민기업 또는 중국 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을 단독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외국회사의 주식을 50% 이상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주민기업 또는 주민기업과 중국 주민의 지분보유비율이 위 규정에 미달하였지만 주식·자금·경영·구매와 판매 등 영역에서 해당 외국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4) 과소자본세제

기업이 관계자로부터 수취한 채권성 투자와 권익성 투자의 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제46조).

① 채권성 투자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관련기업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또는 기타 이자를 지급하는 성격의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 용자를 말한다. 기업이 간접적으로 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성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 (i) 관계자가 관련이 없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 채권성 투자
- (ii)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제공한 것으로서 관계자가 보증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채권성 투자
- (iii) 기타 간접적으로 관계자로부터 취득하였고 실질적인 부채 성격을 가진 채권성 투자

② 권익성 투자란 투자자가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며 원리금 상환이 필요 없는 투자를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119조)

5) 세금 및 이자 추징

기업이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는 기타 방식으로 과세소득 또는 소득금액을 감소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47조). 세무기관이 법규정에 따라 납세조정된 결과 세금을 추징할 경우 상응한 이자도 추징하게 되는데, 해당 추징 이자는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1조).

추징 이자는 세금의 귀속 납세년도의 익년 6월 1일부터 세금 보충납부일까지의 기간 내 중국인 민은행에서 공표한 인민폐대출 기준이율에 5% 가산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1조, 제122조).

다. 조정방법

기업과 관련자와의 업무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해당 기업 또는 관계자의 과세 수입 또는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 다음 방법으로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납세년도로부터 10년간 소급하여 납세조정을 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1조).

-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可比非受控价格法) : 관련관계(이하 관련관계 또는 특수관계라 함)가 없는 거래 당사자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거래 진행시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방법
- ② 재판매가격법(再销售价格法) : 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다시 판매하는 가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매이익을 차감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

③ 원가가산법(成本加成法) :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법

④ 거래순이윤법(交易淨利潤法) :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 각 당사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서 취득한 순이윤 수준에 따라 이윤을 확정하는 방법

⑤ 이익분할법(利潤分割法) : 기업과 관계자의 합산이윤 또는 합산손실을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하여 각 당사자간에서 분배하는 방법

⑥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1조)

8. 납부할 세액의 계산

가. 납부할 세액 계산

기업의 납부할 세액은 과세소득에 적용세율을 곱하고 <기업소득세법>의 세수혜택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공제한 후 잔액이다(기업소득세법 제22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소득액} \times \text{적용세율} - \text{감면세액} - \text{공제세액}$$

위 공식 중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은 <기업소득세법>과 국무원의 조세우대규정에 따라 경감, 면제 및 공제할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6조).

【例 5】 창업투자기업 H사는 2010년 초에 2009년도의 기업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납세신고표상 해당 기업의 2009년도 판매수입은 5000만위안이고, 원가·비용·세금을 공제한 후 이윤총액과 과세소득은 모두 350만위안이다. 세무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아래 사실이 밝혀졌다:

- (1) 기타 기업 차입금 : 200만위안, 당해 연도 이자 : 28만위안, 동일 기한 은행의 대출이자율 : 8%
- (2) 종업원수 : 260명, 임금총액 : 900만위안, 임금지출은 합리적인 것으로 전제.
- (3) 종업원복리비 : 110만위안, 노조경비 : 18만위안, 종업원 교육비 : 27.5만위안
- (4) 접대비용 : 30만위안
- (5) 세금체납으로 인한 체납금과 벌금 : 2만위안
- (6) 농촌 소학교에 직접 기부금 : 25만위안
- (7) 중국적십자협회를 통하여 지진재해지역에 기부금 : 30만위안
- (8) 광고선전비 : 300만위안, 2007년도 미공제 광고선전비 30만위안

적용세율이 25%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차입비용 : 공제한도 초과로 과세소득 인상조정 필요

$$- 28 \times 200 \times 8\% = 16(\text{만원})$$

$$- 28 - 16 = 12(\text{만원})$$

(2) 종업원 임금 : 합리적인 급여는 전액 공제 가능

(3) 3가지 경비

① 종업원복리비 : 공제한도 미만으로 전액 공제 가능

$$- 110 < 900 \times 14\% = 126(\text{만원})$$

② 노조경비 : 공제한도와 동일금액으로 전액 공제 가능

$$- 900 \times 2\% = 18(\text{만원})$$

③ 종업원 교육비 : 공제한도 초과로 과세소득 인상조정 필요하며 초과부분은 이후 납세년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27.5 > 900 \times 2.5\% = 22.5(\text{만원})$$

$$- 27.5 - 22.5 = 5(\text{만원})$$

(4) 접대비용 : 접대비용의 60%가 공제한도 미만으로 접대비용의 60%를 공제 가능, 공제 후 잔액으로 과세소득 인상조정 필요

$$- \text{접대비용의 } 60\% = 30 \times 60\% = 18(\text{만원})$$

$$- \text{공제한도} = 5,000 \times 0.5\% = 25(\text{만원})$$

$$- \text{접대비용의 } 60\% < \text{공제한도}$$

$$- \text{공제가능 금액} = 18(\text{만원})$$

$$- \text{과세소득 인상조정} = 25 - 18 = 7(\text{만원})$$

(5) 체납금과 벌금 : 공제 불가, 과세소득 인상조정 필요

(6) 납세자가 수증자에게 직접 기부하였을 경우 공제 불가, 과세소득 인상조정 필요

(7) 공익성 기부금 : 공제한도 미초과로 전액 공제 가능

$$- 30 < \text{공제한도} = 350 \times 12\% = 42(\text{만원})$$

(8) 광고선전비 : 공제한도 미초과로 전액 공제가능, 2007년도 미공제 광고선전비 30만원 추가 공제 가능.

$$(9) 300 + 30 = 330(\text{만원}) > \text{공제한도} = 5,000 \times 15\% = 750(\text{만원})$$

$$\text{조정 후의 과세소득} = 350 + 12 + 5 + 7 + 2 + 25 - 30 = 371(\text{만원})$$

$$\text{납부할 세액} = 371 \times 25\% = 92.75(\text{만원})$$

나. 경외 원천소득의 공제세액 계산

기업의 취득한 다음 소득에 대해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은 당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는 해당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후 5개년도 내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23조).

① 주민기업의 중국 경외 원천소득

②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였고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해당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과세소득

여기서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이란 기업이 중국 경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중국 경외의 조세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또한 실제로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격의 세액을 가리키고(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7조), “5개년도”란 기업이 취득한 중국 경외 원천소득으로 중국 경외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격의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다음해로부터 연속한 5개 납세년도를 가리키며(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9조), 공제한도란 기업의 중국 경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 및 해당 실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바, 국무원의 재정·세무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지역)별로 구분하되 항목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8조).

$$\begin{aligned} & \text{공제한도} = \text{중국 경내외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법 및 해당 실시조례의} \\ & \text{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 총액} \times \text{기타 국가(지역)에서 원천한 과세소득금액} \\ & \quad \div \text{중국 경내외 과세소득금액 총액} \end{aligned}$$

한편 주민기업이 직접 통제 또는 간접 통제하고 있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 받은 중국 경외 원천의 주식 배당금, 배당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대하여 해당 외국기업이 경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액 중 해당 소득에 대응되는 부분은 해당 주민기업의 경외 원천소득의 공제세액으로 할 수 있으며 상기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24조). 여기서 직접 통제란 주민기업이 외국기업의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 통제란 주민기업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외국기업의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인정방법은 국무원의 재정·세무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80조).

아울러 납부할 세액에서 상기와 같이 경외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격의 세액을 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외 세무기관이 발급한 귀속년도의 납세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실 시조례 제81조).

상기에서알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중국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지만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납부(多不退/ 少要補)하여야 한다.

【例 6】 중국회사 I 사의 2009년도 과세소득은 2700만위안이다. A국과 B국에 각 자회사 J사와 K사를 설립하였다. J사의 2009년도 과세소득은 900만위안으로 그 중 경영소득 700만 위안의 적용세율은 45%이고, 특허권사용료 소득 200만위안의 적용세율은 20%이다. K 사의 2009년도 과세소득은 400만위안으로 그 중 경영소득 200만위안의 적용세율은 30%이고, 임대소득 200만위안의 적용세율은 15%이다. I 사의 기업소득세 통합계산과 정은 다음과 같다.

- (1) I 사의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중국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할세액 = (2,700 + 900 + 400) × 25% = 1,000(만위안)
- (2) J사의 경외 납부세금 = 700 × 45% + 200 × 20% = 355(만위안)
 J사의 공제한도 = 1000 × 900 ÷ 4,000 = 225(만위안)
 J사의 경외 납부세금 > 공제한도
- (3) K사의 경외 납부세금 = 200 × 30% + 200 × 15% = 90(만위안)
 K사의 공제한도 = 1,000 × 400 ÷ 4,000 = 100(만위안)
 K사의 경외 납부세금 < 공제한도
- (4) 경내외 소득 기업소득세 통합계산금액 = 1,000 - 225 - 90 = 510(만위안)

다. 인정과세

1) 주민기업의 인정과세

① 인정과세 범위

주민기업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과세방식으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기업 소득세 인정징수방법(시행)〈企業所得稅核定征收辦法〉(試行), 국세발[2008]30호, 제3조).

- (i)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 (ii)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여야 하나 장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 (iii) 합부로 장부를 소각하거나 또는 납세자료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 (iv) 장부를 설치하였으나 계정이 혼란하거나 또는 원가·수입증빙·비용증빙이 불완전하여 장부를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 (v) 납세의무 발생 후 관련 법규정에서 규정한 신고기간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기관이 시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여전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vi) 신고한 세무상 가액이 현저하게 낮으며 정당한 이유도 없을 경우

② 인정과세 방식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구체상황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인정과세하는 기업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과세소득률(應納所得率)을 추계하여 인정과세한다.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률로 인정과세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 (i) 수입총액은 정확하게 계산(규명)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계산(규명)할 수 없을 경우
- (ii)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계산(규명)할 수 있으나 수입총액을 정확하게 계산(규명)할 수 없을 경우
- (iii)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입총액 또는 원가비용 총액을 계산 또는 추정할 수 있을 경우

한편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으로 기업소득세를 인정과세하며, 한 가지 방식으로 과세소득 또는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인정과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채택하여 인정과세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추산한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중의 높은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을 인정과세한다(동법 제5조).

- (i) 현지의 동류산업 또는 유사산업 중 경영규모와 수입수준이 근접한 납세자의 조세수준을 참조하여 인정
- (ii) 과세수입 또는 원가비용지출 정액률(額定率)에 따라 인정(iii) 소모된 원료·연료·동력 등에 따라 추산하여 인정
- (iv)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

③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

납부할 세액을 인정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구체 상황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성실하게 계산한 기초상 납세자의 연간 납부금액을 직접 인정과세한다. 한편 과세소득률 방식으로 기업소득세를 인정과세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6조).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소득} \times \text{적용세율}$$

$$\text{과세소득} = \text{수입총액} \times \text{과세소득률(또는)}$$

$$\text{과세소득} = \text{원가(비용)지출액} \div (1 - \text{과세소득률}) \times \text{과세소득률}$$

참조로 과세소득률은 다음 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확정한다(동법 제8조).

〈과세소득률표〉

산업	과세소득률(%)	비고
농업·임업·목축업·어업	3~10	여러 가지 업무를 영위할 경우 경영 항목별 단독 계산여부를 불문하고 주업무의 과세소득률을 적용한다 (동법 제8조).
제조업	5~15	
도매와 소매 무역업	4~15	
교통운수업	7~15	
건축업	8~20	
요식업	8~25	
오락업	15~30	
기타 산업	10~30	

【例 7】L사는 인정과세소득률방식으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기업으로 수입총액의 일정비례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세무기관에서 인정한 과세소득률이 15%이고 2009년도 수입총액이 700만위안일 경우 2009년도의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세소득 = 700 × 15% = 105(만위안)
 납부할 세액 = 105 × 25% = 26.25(만위안)

2) 비주민기업의 인정과세

① 인정과세 범위

비주민기업이 회계장부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불완전하여 장부를 검사할 수 없거나 또는 기타 원인으로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수 없을 경우 과세소득을 인정 과세한다(비주민기업소득세 인정징수관리방법〈非居民企業所得稅核定征收管理辦法〉, 국세발[2010]19호, 제3조).

여기서 비주민기업이란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였고 중국 경내 원천소득 및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해당 설립된 기구 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비주민기업을 말하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② 인정과세 방법

세무기관은 아래 방법으로 상기 비주민기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한다(동법 제4조).

(i) 수입총액을 근거로 과세소득 인정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입총액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경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과세소득} = \text{수입총액} \times \text{세무기관에서 인정한 이윤률}$$

(ii) 원가비용을 근거로 과세소득 인정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입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경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과세소득} = \text{원가비용 총액} \div (1 - \text{세무기관에서 인정한 이윤률}) \times \text{세무기관에서 인정한 이윤률}$$

(iii) 경비지출로 환산한 수입을 근거로 과세소득 인정

경비지출 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입총액과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과세소득} = \text{경비지출 총액} \div (1 - \text{세무기관에서 인정한 이윤률} - \text{영업세 세율}) \times \text{세무기관에서 인정한 이윤률}$$

한편 세무기관에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주민기업의 이윤률을 확정한다. 다만 세무기관에서 비주민기업의 실제이윤률이 아래 기준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아래 기준보다 더 높은 이윤률로 인정과세할 수 있다(동법 제5조).

(i) 공사도급, 설계 및 자문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15%~30%

(ii) 관리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 30%~50%

(iii) 타 노무 및 노무 이외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15% 보다 낮지 않음.

또한 비주민기업이 중국의 주민기업과 기계설비 또는 재화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설비의 설치·조립·기술교육·지도·감독서비스 등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지만, 해당 재화판매 계약에 상기 노무서비스의 비용금액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비용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실제상황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업무의 비용기준을 참조하여 노무수입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참조기준이 없을 경우 재화판매계약 총대금의 10% 보

다 낮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비주민기업의 노무수입을 인정과세할 수 있다(동법 제6조).
특기할 사항으로,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서로 다른 인정이윤률의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을 경우 구분 계산하여 상응한 이윤률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하는바, 구분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높은 이윤률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한다(동법 제8조).

9. 징수관리

가. 원천징수

1) 법정원천징수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해당 설립한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하며 지급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지급시 또는 지급일 만료시 지급 또는 만기미지급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기업소득세법 제37조).

여기서 “지급인”이란 관련 법규정 또는 계약에 의거하여 비주민기업에 대하여 관련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하며(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4조), “지급”이란 현금지급·송금지급·이체지급과 권익교환지급 등 화폐지급과 비화폐지급이 포함되며, “만기미지급금”이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원가·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5조).

2) 지정원천징수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공사 및 노무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공사대금 또는 노무비의 지급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38조).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현금 이상 세무기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하고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의 계산근거·계산방법·원천징수방식을 고지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6조).

- (i) 공사작업 또는 용역제공의 기한이 하나의 납세년도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당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경우
- (ii) 세무등기 또는 임시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중국 국경내의 대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 (iii) 규정된 기한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예납하지 않은 경우

3) 특정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소득발생지에서 납부한다. 납세자가 법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납세자의 중국 경내 기타 수입 프로젝트 중 지급인의 미지급금에서 해당 납세자의 납부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39조).

여기서 “소득발생지”란 위에서 언급한 과세소득 원천지 확정원칙에 따라 확정된 소득발생지를 말하는바, 중국 경내의 여러 지역에서 소득발생지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그 중 한 지역을 선택하여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7조), “기타 수입”이란 해당 납세자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기타 각종 원천수입을 가리키는바, 세무기관에서 해당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사유, 추징세액,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등을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8조).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매회 공제한 세금을 공제일로부터 7일 내에 국고로 납입하여야 하고 동시에 소재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기업소득세보고표(扣繳企業所得稅報告表)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제40조).

나. 납세지

1) 주민기업

세수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기업은 기업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등록지가 중국 경외인 경우 실제 관리기구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기업소득세법 제50조). 여기서 기업등록지란 기업이 관련 국가의 규정에 따라登記·등록한 주소지를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4조).

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법인자격이 없는 영업기구를 설립하였을 경우 합산계산(匯總計算)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제50조).

2) 비주민기업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을 경우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과 중국 경외의 원천소득 중 해당 설립한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은 해당 기구·장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2개 또는 2개 이상의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기준을 거쳐 주요 기구·장소를 선정하여 기업소득세를 합산납부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51조).

여기서 말하는 “주요 기구·장소”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6조).

- ① 기타 각 기구·장소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의 책임이 있을 것

② 완전한 장부·증빙을 가지고 있으며, 각 기구·장소의 수입·원가·비용과 손익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

“주관 세무기관”이란 각 기구·장소의 소재지 세무기관의 공동한 상급 세무기관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6조).

한편,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구·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해당 설립한 기구·장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 무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기업소득세법 제51조).

다. 납세년도

1) 납세년도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년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기업이 한 개 납세년도 중간에 개업하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중단하여 해당 납세년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경영기간을 하나의 납세년도로 하고, 기업이 법규정에 따라 청산할 경우 청산기간을 하나의 납세년도로 한다(기업소득세법 제53조).

2) 중간예납

기업소득세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한다. 기업은 당해 월 또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세무주관기관에 기업소득세예납신고표(預提企業所得稅申報表)를 제출하고 세금을 예납한다(기업소득세법 제54조).

기업소득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하는 것은 세무기관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기업이 월별 또는 분기별 기업소득세를 예납할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 실제이윤을 근거로 계산하여 예납하여야 한다. 월별 또는 분기별 실제이윤에 따라 예납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 납세년도 과세소득의 월별 또는 분기별 평균치에 따라 예납하거나 또는 세무기관에서 인정하는 기타 방법에 따라 예납한다. 예납방법은 일단 확정되면 해당 납세년도 내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8조).

3) 연도납세정산

기업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연도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年度企業所得稅申報表)에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제54조).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중지하였을 경우 실제로 경영을 중지한 일자로부터 60일 내에 세무기관에서 당기의 기업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은 말소등기 진행 전에 세무기관에 청산소득을 보고하고 법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제 55조).

라. 외환표시 소득의 환산

기업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한다. 소득을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하였을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제56조).

기업소득을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한 경우로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할 때에는 월 또는 분기의 마지막 날의 인민폐 중간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연도납세정산할 때에는 월 또는 분기에 따라 이미 예납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바, 해당 납세년도 내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만 납세년도의 마지막 날의 인민폐 중간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의 조사결과 기업이 상기 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하기로 확인한 달의 직전 월의 마지막 날의 인민폐 중간환율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계상한 소득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다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30조).

제6장_증치세편

I. 일반 사항

1. 증치세 개요

증치세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의 생산·유통 및 노무서비스 등 각 단계별 신규 증가한 가치 또는 상품의 부가가치에 징수하는 세제이다.

중국은 1979년부터 일부 산업과 제품(기기·농업기구 등 2개 산업과 자전거, 재봉틀, 선풍기 등 3가지 제품)에 대하여 증치세를 시범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시범지역을 1980년의 유주(柳州), 상범(襄樊), 장사(長沙), 상해(上海) 등 4개 도시로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1984년에 이르러 국무원의 <증치세잠행조례(초안)>¹⁴ 및 재정부의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의 공표와 더불어 증치세는 중국 조세제도 중 한 가지 세목으로 되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공상통일세를 부과하였다.

1994년에 들어 중국은 증치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진행하면서 증치세를 공식적으로 도입¹⁵하였고, 공상통일세를 취소하고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하여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증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중국은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제과열 현상을 겪고

¹⁴ <증치세잠행조례(초안)> 1984. 9. 18. 제정, 1984. 10. 1. 시행, 1994. 1. 1. 폐지

¹⁵ <증치세잠행조례>(국무원령 제134호) 1993. 12. 13. 제정, 1994. 1. 1. 시행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재정부 93 재법자 제38호) 1993. 12. 25. 제정, 1994. 1. 1. 시행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억제작용을 할 수 있는 생산형 증치세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생산형 증치세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원재료와 동력자원 등)의 공제는 허용하나 자본재의 구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증치세의 경제적 과세표준이 국민총생산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산형이라고 부른다. 과거 설비 등 자본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증치세는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스란히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기업의 원가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특히 자본 집약형과 기술집약형 산업, 그리고 인프라투자에 대한 적극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생산 원가와 제품 수출가격을 올려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4년부터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증치세 개혁을 시작했으며, 동부지역 노후공업기지의 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등 8대 업종에 대한 소비형 증치세 도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 중부 6개성 26개 노후공업기지 도시의 전력업, 채굴업 등 8대 업종, 2008년에는 내몽고 지역과 사천성 원촨((汶川) 지진피해지역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하였다. 4년여의 시범도입 결과, 소비형 증치세 전환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들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중국경제에도 경향을 미치자 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8년 11월 5일 중국 국무원은 제538호령으로 <증치세잠행조례>를 수정하였고, 재정부는 2008년 12월 15일에 제50호령으로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을 수정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증치세를 시행되었다. 이번 증치세제 개편은 그동안 시행해 온 생산형 증치세를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핵심은 기계설비 등 제품 생산을 위한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증치세액을 징수하던 방식에서, 매입증치세액을 매출증치세액으로부터 차감해 공제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투자의욕을 제고시키는 등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증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는 영업세가 있는데 중국에서 증치세는 유형 동산의 판매, 용역제공 중 가공 및 수선, 정비 용역의 공급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무형자산, 부동산의 판매, 가공, 수선, 정비용역을 제외한 기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부과하였다. 중국은 2012년 1월부터 상하이에서 교통운수업, 일부 현대 서비스업 등 기존 영업세 과세대상을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중국어로 營改增이라 함)하는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지역을 10개 營改增지역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8월 1일에는 전국지역에서 시행하였다. 그 후 2014년에 철도운송업과 우체업, 통신업을 營改增 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중국은 2015년도에 營改增의 범위를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일반 서비스업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써 기존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증치세 과세대상으로 전부 전환시켜 중국의 영업세는 곧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증치세와 관련된 주요 법률,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 <증치세잠행조례(增值稅暫行條例)>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538호령으로 최신 수정
- 2)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增值稅暫行條例實施細則)> 2008년 12월 15일 재정부 제50호령으로 최신 수정
- 3)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지역 실시방안>(營業稅改徵增值稅試點實施方案)

참고로, 중국내에서 증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는 영업세 이외에 소비세가 있는바, 증치세를 부과하는 재화 중 담배, 화장품 등 일부 재화를 선택하여 증치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 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2. 증치세의 부과대상

중국의 증치세의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국 내, 외에서 재화의 판매

1) 일반적 의미에서의 재화의 판매

일반적 의미에서의 '재화의 판매'란 재화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유상'이란 매수인 측으로부터 화폐, 재화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화'란 유형의 동산을 말하며, 전력, 열, 기체(가스) 등을 포함한 것이며, 부동산 및 무형의 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조, 제3조).

2) 재화의 특수 판매 행위

증치세 세액공제제도의 실시를 보장하고, 세액공제단계의 중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상품간 세 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증치세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재화의 판매로 간주되어 증치세를 부과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4조).

- ① 재화를 타인에게 인도하여 대리 판매하게 하는 행위
- ② 위탁에 따른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
- ③ 2개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통합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납세 의무자가 재화를 그중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전하여 판매하는 행위(관련 시설이 동일한 縣(市)에 있는 경우 제외)
- ④ 자체 제조 또는 위탁 가공한 재화를 증치세 비과세항목, 단체 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하는 행위
- ⑤ 자체 제조, 위탁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를 투자할 목적으로 기타 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제

공하거나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배분 혹은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 ⑥ 재화를 대리 구매 시 일정한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지 못할 경우(증치세, 영업세 여러 정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통지<關於增值稅/營業稅若干政策規定的通知>, [1994]재세자 제26호 제5조)

3) 특수한 항목의 재화에 대한 판매

한편, 영업세와 증치세 모두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일부 특수 성격의 재화가 증치세의 부과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중국세법상 아래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두어 증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 ① 재화의 선물(상품선물 및 귀금속선물을 포함함)거래는 증치세를 부과한다. 한편, 비재화 선물의 거래는 영업세를 부과한다(증치세 여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關於增值稅若干具體問題的規定>, (1993)국세발154호 제1조(1)항).
- ② 은행의 금, 은 판매업무(동법 제1조(2)항)
- ③ 건설회사와 건축설비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부설한 공장, 사업에서 제조한 조립식 콘크리트 부품, 기타 부품 또는 건축재료가 그 기업의 건설공사에서 사용된 경우 이송되어 사용될 때 증치세를 부과한다(동법 제1조(4)항).
- ④ 전당업(典當業)의 되찾아갈 수 없는 전당물(死當)판매(동법 제1조(5)항)
- ⑤ 위탁판매(寄售)업에서 위탁물품을 판매(동법 제1조 (5)항)
- ⑥ 저작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화필름 원본, 비디오테이프 원본 및 음향테이프 원본의 판매는 증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동법 제1조 (6)항).
- ⑦ 가공되지 않은 천연수의 판매에 대하여 증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조 (7)항)
- ⑧ 수집용 우표(集郵)의 제조, 우정부문을 제외한 자가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증치세를 부과한다. 한편, 우정부문, 수집용 우표회사가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영업세를 부과한다(증치세, 영업세 여러 정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통지<關於增值稅/營業稅若干政策規定的通知>, [1994]재세자 제26호 제1조).
- ⑨ 우정부문이 아닌 자가 신문/잡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증치세를 부과한다. 한편, 우정부문이 신문/잡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영업세를 부과한다(동법 제2조).

4) 간주판매(視同銷售)

한편, 단위와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개인 불포함)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화에 대한 판매로 간주하고 증치세를 부과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4조).

- ① 재화를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교부하여 판매하는 행위
- ② 위탁판매화물((代銷貨物)을 판매하는 행위

- ③ 2개 이상의 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동일 계산을 하는 납세자가 재화를 하나의 기구에서 다른 기구로 판매하기 위하여 이송하는 행위
- ④ 자가생산 또는 위탁가공한 재화를 증치세 비과세항목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⑤ 자가생산 또는 위탁가공한 재화를 단체 복리 또는 개인 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⑥ 자가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하거나 또는 구입한 재화를 기타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에 투자로서 제공하는 행위
- ⑦ 자가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하거나 또는 구입한 재화를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행위
- ⑧ 자가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하거나 또는 구입한 재화를 타인에게 무상증여하는 행위

5) 혼합판매행위

혼합판매행위란 하나의 판매행위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동시에 증치세 비과세용역도 제공되는 것이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5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증치세 비과세용역은 영업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교통운수¹⁶, 건설, 금융 보험, 우정 통신, 문화 체육, 오락, 서비스업에 속하는 용역을 의미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5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나 개인사업자(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를 주업(50% 초과)으로 하면서 증치세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업체와 개인사업자 포함)의 혼합판매행위는 재화의 판매로 보아 증치세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혼합판매행위는 하나의 세금계산서상에 증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과 증치세 비과세용역의 금액이 동시에 반영되며, 납세자의 판매행위가 혼합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6) 겸영행위(兼營行爲)

겸영행위란 납세자가 증치세 과세 재화의 판매를 제공하는 동시에 증치세 비과세용역(즉 영업세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증치세 과세 재화의 판매액과 증치세 비과세 용역의 영업액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각기 증치세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재화의 판매액을 추계인정(核定)할 수 있으며(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7조), 세무기관은 겸영하는 비과세용역에 대하여 증치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나. 중국 경내에서 가공, 수선 및 정비 용역의 제공

‘가공, 수선 및 정비용역의 제공’이란 유상으로 중국내에서 가공, 수선 및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¹⁶ 중국정부의 營改增 정책에 따라 교통운수, 우정통신, 부분 서비스업은 이미 증치세 과세용역에 포함되었으나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등 내용이 그에 따라 수정되지 않았으나 이 내용은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의 본문의 내용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공’이란 위탁자가 원료 및 주요 재료를 판매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제조하여 가공비를 수취하며, 가공된 재화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속하는 것을 말한다. ‘수선, 정비’란 수탁자가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재화에 대하여 정비를 하여 원래의 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조, 제3조).

다. 재화의 수입

수입하는 재화는 국내 같은 종류 상품의 세 부담과 형평에 동등하게 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치세를 부과한다. 중국 세관에 수입을 신청한 재화가, 그 원산지가 외국인지 중국에서 수출 후 다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지, 수입자가 구매하는지 아니면 해외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그 용도가 자체사용인지 아니면 무역 혹은 기타 용도인지와 상관없이, 모두 수입단계의 증치세를 부과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1조).

라. 용역의 제공

증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되는 용역의 제공이란 육상운송업, 수로운송업, 항공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일반 및 특별 우체용역업, 기타 우체업,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 정보기술용역, 문화창의용역, 물류보조용역, 유형동산 임대업, 비자 및 자문업무, 비디오TV영화용역을 의미한다(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 실시방법 제8조).

3. 증치세의 세율

증치세율은 일반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17%), 경감세율(13%), 교통운송업 및 우체업에 적용되는 세율(11%), 현대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세율(6%), 수출에 적용하는 영세율(0%), 그리고 소규모 납세의무자 등에게 적용되는 간이세율(3%) 등이 있다. 세율이 다른 재화의 공급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을 겸영하는 경우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 매출액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3조).

〈증치세율표〉

구분	세율(%)	대상품목
기본세율	17	- 재화의 판매, 재화의 수입(저세율 품목 제외) - 가공·수리·수선용역 제공 - 유형동산의 임대업

구분	세율(%)	대상품목
경감세율	13	- 양식, 식용식물유 - 수돗물, 난방(暖氣),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석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재화: 농산물,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식용 소금, 디메틸에테르
교통운송업 및 우체업	11	- 육상운송업, 수로운송업, 항공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 일반 및 특별 우체용역업, 기타 우체업
현대서비스업	6	-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 정보기술용역, 문화창의용역, 물류보조용역, 비자 및 자문업무, 비디오TV영화용역
영세율	0	수출 재화

가. 기본세율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중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및 가공, 수선 및 정비용역은 영세율 및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17%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증치세잠행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여기서 ‘중국내에서 재화를 판매’한 것이란 판매된 재화의 발송지 또는 소재지가 중국내라는 것을 의미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8조).

한편, 營改增정책에 따라 유형동산의 임대업에 대해서도 17% 기본세율이 적용된다(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 실시방법 제12조).

나. 경감세율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재화를(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3%의 세율을 적용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 ① 식용곡물, 식용식물유
- ② 수돗물, 냉·난방가스,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 ③ 도서, 신문, 잡지
- ④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한편, 농업용 양수기(水車), 농업용 중유기(柴油機)도 농기계에 속한다(이상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關於增值稅廓憾稅收政策問題的通知(증치세 여러 세수 정책에 대한 통지)〉(1994.10.18, 재세자[1994]60호).
- ⑤ 농업생산품
- ⑥ 음향제품(音像制品)
- ⑦ 전자출판물.

- ⑧ 디메틸에테르(이상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재화에 대해 증치세 저세율과 간이방법으로 증치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적용함에 관한 통지<關於部分貨物适用增值稅低稅率和簡易辦法征收增值稅政策的通知>, 2009.1.19, 재세합[2006]770호).
- ⑨ 식용 소금(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속광, 비 금속광 채취선택제품의 증치세 세율에 관한 통지<關於金屬鑛/非金屬鑛采選產品增值稅稅率的通知>, 재세[2008]171호 제2조).

다. 교통운송업 및 우체업 세율

營改增정책에 신규 추가된 증치세 과세대상인 교통운송업과 우체업에 대해 11% 세율이 적용된다(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 실시방법 제12조).

라. 현대서비스업 세율

營改增정책에 신규 추가된 증치세 과세대상인 현대서비스업에 대해 6% 세율이 적용된다(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 실시방법 제12조).

마. 영세율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원재료의 경우 매입증치세를 전액 공제하나, 중국의 경우 수출을 빙자한 증치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구입 시 납부한 증치세는 수출 후 환급률에 따라 일정액만 환급(退稅)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대하여는 Ⅱ. 증치세 수출 환급에 대한 부분 참조).

아울러 영세율을 모든 수출 재화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에서 수출을 권장하지 않는 고오염, 고에너지 소모, 자원성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 간이세율

중국세법에서도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하게 소규모납세자 등에 대하여 매입증치세를 공제해 주지 않는 대신 다음과 같이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두고 있다(일부 재화에 대해 증치세 저세율과 간이방법으로 증치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적용함에 관한 통지<關於部分貨物适用低稅率和簡易辦法征收增值稅政策的通知>, 재세합 [2006]770호).

- ① 소규모납세자일 경우 : 3%(증치세잠행조례 제11조, 제12조)
- ② 일반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했던 중고품을 판매할 경우 : 고정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방법에 따라 4% 세율을 적용하여 감반(50%)하여 징수하고, 고정자산이 아닌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됨.

- ③ 소규모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했던 중고품을 판매할 경우 : 고정자산의 경우 2% 고정자산이 아닌 경우 3%
- ④ 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중고품을 판매할 경우 : 간이방법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액하여 징수한다. 여기서 중고품이란 일부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2차 유통제품(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요트 포함)을 말하며,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일반납세자가 자가생산(自産)한 아래 재화를 판매할 경우, 간이방법에 따라 6% 세율로 증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것을 선택할 수 있음. 단, 일반납세자가 간이방법으로 증치세를 계산, 납부할 것을 선택한 후, 36개월 내에 변경할 수 없음.
- 현(縣)급 및 현급 이하의 소형 수력발전단위가 생산한 전력. 소형수력발전단위란 각종 투자자가 건설한 적재용량(裝機容量)이 5 만 킬로와트 이하인 소형 수력발전단위를 말함.
 - 건축용과 생산건축재료에 사용하는 모래, 흙, 석재(石料)
 - 자신이 채굴한 모래, 흙, 석재 또는 기타 광물로 연속 생산한 벽돌, 기와, 석회(점토질심 벽돌 및 기와는 포함하지 않음)
 - 미생물, 미생물 대사산물, 동물독소,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이거나 조직으로 만든 생물제품
 - 수돗물
 - 상품콘크리트(시멘트를 원료로 생산한 시멘트 콘크리트에 한함)
- ⑥ 일반납세자가 판매하는 재화가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시로 간이방법에 따라 4% 세율로 증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 위탁판매상점에서 위탁판매물품을 대리 판매(주민 개인이 위탁판매하는 물품 포함.)
 - 전당업이 되찾아갈 수 없는 전당물(死芎物品) 판매
 -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기관이 비준한 면세상점에서 소매하는 면세품

4. 증치세의 납세의무자

증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한 단위와 개인이다. 여기서 ‘단위’는 기업(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등 포함),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를 말하며,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중국인 및 외국인 포함)이 포함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9조).

기업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경영하도록 임대 또는 도급을 줄 경우 임대인 또는 도급인은 증치세 납세의무자이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10조).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 경내에서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 경내의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대리인이 없을 경우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증치세를 납부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18

조).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된다.

가. 일반납세자(一般納稅人)

일반납세자는 연간 과세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과 기업성 단위이다. 일반 납세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에 인정 수속을 밟아 법정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일반납세자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재화의 생산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을 주로 경영하는 납세자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만위안 이상
- ② 재화의 도매 또는 소매를 주로 경영하는 납세자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80만위안 이상

다만 다음의 납세자는 일반납세자로 될 수 없다(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 제5조).

- ① 개인사업자 이외의 기타 개인
- ② 소규모납세자에 따라 납세하기로 선택한 비기업성단위
- ③ 소규모납세자에 따라 납세하기로 선택한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업

납세자는 반드시 기업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서 일반납세자 인정수속을 밟아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일반납세자는 다음 요구에 따라 인정수속을 밟아야 한다.

- ① 신규 설립되었고 일반납세자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세무등기 진행과 동시에 일반납세자 인정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연간 판매액이 기준에 미달한 상업기업과 기타 소규모 기업은 회계 계산이 건전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경우 일반납세자 인정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개업중인 소규모납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 인정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익년 1월말 전에 일반납세자 인정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면세 재화의 판매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전부 면세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납세자로 인정될 수 없다.
- ⑤ 일반납세자의 본점과 지점이 동일지역(현, 시)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인정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납세자(小規模納稅人)

소규모납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규정기준 이하이고 또한 회계 계산이 건전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할 수 없는 증치세 납세자이다. 회계 계산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

은 증치세의 매출증치세, 매입증치세, 산출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규모납세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8조, 제29조).

- ①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기업, 기업성 단위와 개인사업자)와 재화의 생산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을 주로 경영하되 도매 또는 소매를 겸영하는 납세자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만위안 이하(50만위안 포함). 여기서 재화의 생산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을 주로 경영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연간 재화 생산 또는 과세용역의 매출액이 과세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상기(1)항 이외의 납세자 즉 재화의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80만위안 이하(80만위안 포함)
- ③ 연간 매출액이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 개인
- ④ 비기업성단위,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소규모납세자로 납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소규모납세자인 경우라도 회계 계산이 건전하고 회계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주 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인정수속을 신청하여 소규모납세자로 납세하지 않을 수 있다(증치세 잠행조례 제13조). 다만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납세자로 인정된 후 다시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할 수는 없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33조). 소규모 납세자는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사용하거나 매입증치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회계 계산이 건전하지 못하지만 납세의무를 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소규모납세자는 현(시)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소재지 세무기관이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판매액을 기준으로 3%의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납세의무 발생시기

증치세 납세의무는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경우 대금회수일 또는 매출대가 회수권리를 입증하는 증빙상의 일자에 발생하며 영수증을 먼저 발급할 경우 영수증 발급당일에 발생한다. 또한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신고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19조).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대금회수일 또는 매출대가 회수권리를 입증하는 증빙상의 일자'란 구체적으로 결제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38조).

- ① 매출단가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의 경우 : 재화의 발송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수령일 또는 매출대가 회수권리를 입증하는 증빙을 취득하는 날

- ② 신용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계약에 정한 대금수령일(없을 경우 재화를 발송하는 날)
- ③ 선수금방식에 의한 매출의 경우 : 재화를 발송한 날(단, 제조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대형 기계설비, 선박, 비행기 등 재화의 경우 : 선수금을 받거나 계약에 정한 대금회수일)
- ④ 추심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 재화를 발송하여 추심절차를 완료하는 날
- ⑤ 위탁판매의 경우 : 위탁판매계산서 또는 일부나 전부 대금을 수령하는 날(위탁판매계산서 또는 일부나 전부 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 재화 발송일 만 180일이 되는 날)
- ⑥ 과세 용역을 제공할 경우 : 용역을 제공하며 동시에 대금수령 하는 날 또는 매출대가 회수권리를 입증하는 증빙을 취득하는 날, 선수금방식에 의한 유형동산의 임대일 경우 선수금을 받는 날
- ⑦ 재화의 판매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재화가 이전된 날.
- ⑧ 재화를 수입한 경우 : 수입신고일

6. 납부할 세액의 계산

가. 개요

증치세의 납부할 세액은 매출증치세에서 매입증치세를 차감하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법(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동일함)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일반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당기 매출증치세에서 당기 매입증치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증치세잠행조례 제4조, 제5조).

나. 매출증치세의 계산

1) 개요

매출증치세(銷項稅)란 증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판매가액과 규정된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증치세액을 말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5조).

2) 매출액의 계산

매출증치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 때 매출액은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모든대가 및 부대비용(價外費用)을 의미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6조). 부대비용은 가격 외에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속비, 보조금, 기금, 자금모집비, 반환이윤, 장려비, 위약금, 체납금, 배상금, 대리수납액, 대리지급액, 포장비, 포장물임대료, 보관비, 품질보증비, 운수하역비 및 기타 각종 부대비용이다. 다만 다음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12조).

- ① 소비세가 징수되는 소비품을 수탁가공하고 대리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소비세
- ②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대납한 운송비용
 - (i) 구매자에게 운송업자의 운송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
 - (ii) 납세자가 당해 항목의 세금계산서를 구매자에게 교부
- ③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리 수취한 정부성격의 기금이나 행정사업성요금
 - (i) 국무원 또는 재정부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정부성격의 기금,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 가격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행정사업성 요금
 - (ii) 요금 수취시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인쇄 제작한 재정어음(財政票據) 발행
 - (iii) 수취한 금액을 전액 재정에 상납
- ④ 재화를 판매하는 동시에 보험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및 대납한 후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차량취득세, 차량번호사용비

한편 납세자가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시 적용하는 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와 판매로 간주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아래 방법으로 매출액을 결정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16조).

- ① 납세자의 최근 동류 재화의 가중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결정
- ② 기타 납세자의 최근 동류 재화의 가중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결정
- ③ 조성평가가격에 따라 결정.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조성평가가격} = \text{원가} \times (1 + \text{원가이윤율}^{17})$$

특기할 사항으로 증치세는 가외세(价外稅)의 한 가지로서 매출액에는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매출증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포함 매출액”은 우선 다음 공식에 따라 세금불포함 매출액(이하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text{매출액} = \frac{\text{세금포함 매출액}}{1 + \text{적용세율}}$$

¹⁷ 소비세 과세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재화와 용역의 원가이윤율은 모두 10%이다.

【例 8】증치세 일반납세자인 A사는 2010년 6월 냉장고를 판매하고 발행한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상 기재한 가격은 200만원인, 세액은 34만원이고, 기타 재화를 판매하고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상의 판매액은 114만원이며, 또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수비용 3만원만을 수취하였다. A사의 2010년 6월 증치세 판매액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 \frac{\text{세금포함 매출액}}{1 + \text{적용세율}} = 200 + \frac{114+3}{1+17\%} = 300(\text{만원인})$$

아울러 기업은 여러가지 거래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바, 특수한 거래유형별 매출액 확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증치세 여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關於增值稅若干具郎問題的規定>, (1993)국세발154호 제2조).

① 매출에누리(折扣銷售)

매출에누리의 경우 매출액과 에누리액을 동일한 계산서에 각각 기재해야만 에누리한 후의 잔액이 증치세를 계산하는 매출액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例 9】B사는 C사에 컴퓨터를 판매하였는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은 100만원인, 세액은 17만원이다. 다만 C사가 즉시에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5% 에누리하였으며 실제로 95만원만을 수취하였다. 해당 경우 동일한 계산서에 에누리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동건 거래의 매출액은 여전히 100만원이다.

② 보상판매(以舊換新方式銷售)

오래된 재화를 새로운 재화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새로운 재화의 동기 판매가격으로 매출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새로운 재화의 매출액에서 오래된 재화의 회수가격을 차감해서는 아니된다.

【例 10】D사는 2010년 8월 보상판매의 방식으로 텔레비전 200대를 판매하였는바, 새로운 텔레비전의 판매가격은 3,510위안, 오래된 텔레비전의 회수가격을 200위안으로 하여 대당 3,310위안의 차액을 취득하였다. 동건 거래의 매출액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text{매출액} = \frac{3,510}{1+17\%} \times 200 = 600,000(\text{위안})$$

③ 원금상환방식판매(還本銷售方式銷售)

원금상환방식의 매출은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한 후 일정한 기일까지 1회 또는 수차례에 걸쳐 구매자에게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상환하는 매출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일종의 자금융통 방법에 해당되므로 해당경우 매출액은 재화의 판매가격이며 매출액에서 원금상환액을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물물교환방식판매(以物易物方式銷售)

물물교환방식으로 매출을 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모두 매입·매출 처리해야 하여 각자 내놓은 재화의 가액으로 매출액 및 매출증치세를 계산하며, 각자 받은 재화의 가액으로 매입액 및 매입 증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3) 매출증치세의 계산

매출증치세는 매출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증치세액이며,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매출증치세} = \text{매출액} \times \text{적용세율}$$

상기 매출액은 매출증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액이고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국통화로 계산한 매출액은 국가에서 공표한(원칙상 중간률) 그 일자나 거래가 발생된 달의 초일에 통용되는 환율(이때, 납세자는 사전에 어느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증치세법조례 제6조, 증치세법조례 실시세칙 제15조).

다. 매입증치세의 계산

1) 개요

매입증치세(進項稅)란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급 또는 부담하는 증치세액을 말한다(증치세법조례 제8조 제1항). 매입증치세와 매출증치세간의 대응관계를 보건대, 판매자가 수취한 매출증치세는 바로 구매자가 지급한 매입증치세이다.

2) 공제할 수 있는 매입증치세

매출증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증치세는 면세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증치세 공제서류상에 표시된 증치세액에 한한다(증치세법조례 실시세칙 제8조 제2항).

①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구입한 경우는 판매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상에 기

재된 증치세액

② 재화를 수입한 경우는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세액납부 영수증에 표시된 증치세액.

또한 중국세법에서는 면세 농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농산품 구매 또는 판매 영수증에 표시된 농산품의 구매가에 13%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증치세로 공제하며(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8조 제3항), 재화를 구매 또는 판매 및 생산경영과정중 운수비용을 지급시, 운수비용 결산서에 표시된 운수비용금액에 7%의 공제율로 매입증치세를 계산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8조 제4항). 여기서 운수비용금액이란 운수비용결산서상 기재된 운수비용, 건설기금을 말하며, 하역비, 보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하지 않는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18조).

【例 11】E사는 농산품 생산자로부터 면세 농산품을 일부 구입하였다. 수매증빙상 기재금액은 20,000위안이고, 운송료계산서상 기재금액은 1000위안이다. 동건 거래의 매출 증치세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text{매입세액} = 20,000 \times 13\% + 1,000 \times 7\% = 2,670(\text{위안})$$

3) 공제할 수 없는 매입증치세

반면, 아래와 같은 매입증치세는 매출증치세에서 공제될 수 없다.

- ① 증치세 비과세항목, 증치세 면세항목에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증치세(증치세 임시조례 제10조(1)항)
- ② 단체의 복지 혹은 개인적 소비(초대비 포함)에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증치세(증치세잠행조례 제10조(1)항,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2조)
- ③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화의 매입 및 관련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증치세 임시조례 제10조(2)항).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손실'이란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초래된 도난, 분실, 부패 또는 변질 등 손실을 말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 24조).
- ④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생산과정에 있는 재공품이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증치세(증치세잠행조례 제10조(3)항)
- ⑤ 납세자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비세 과세대상인 오토바이, 자동차, 보트(증치세잠행조례 제10조(4)항)
- ⑥ 위 ①~⑤항 규정한 재화의 운송비 및 면세재화를 판매로 인한 운송비의 매입증치세(증치세잠행조례 제10조(5)항)

이미 매출증치세에서 공제한 재화 또는 과세용역에 위②~⑥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증치세를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증치세에서 차감해야 한다. 만일 당해 매입증치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당기의 실제원가에 따라 차감할 매입증치세를 계산해야 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7조).

또한 재화나 과세용역을 구입하는 납세자가 취득한 부가가치세 공제서류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세무부문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매출증치세에서 매입증치세를 공제할 수 없으며(증치세잠행조례 제9조), 소규모납세자의 경우에도 그 매입증치세를 매출증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증치세잠행조례 제11조).

이와 관련하여 일반 납세자가 면세품목이나 증치세 비과세품목을 경영하나 공제할 수 없는 매입증치세를 정확히 구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없는 매입증치세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6조).

$$\text{공제할 수 없는 매입증치세} = \text{당월 총 매입증치세} \times \frac{\text{당월 면세품목 + 비과세 용역의 영업액}}{\text{당월의 총 매출액 + 영업액}}$$

【例 12】증치세 일반납세자인 F사의 2010년 5월 증치세 과세재화의 판매액(세금 불포함)은 1,200,000위안, 면세품목의 매출액은 0이며, 비과세 용역을 경영하여 취득한 영업액(세금 포함)은 800,000위안이며, 당월 총 매입증치세는 250,000위안이나 비과세 용역의 매입증치세는 정확히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F사의 당월 공제 가능한 매입증치세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text{공제할 수 없는 매입증치세} = 250,000 \times \frac{0 + 800,000}{1,200,000 + 800,000} = 100,000(\text{위안})$$

라.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일반납세자

일반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은 당기 매출증치세에서 당기 매입증치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당기 납부할 세액} &= \text{당기 매출증치세} - \text{당기 매입증치세} \\ &= \text{당기 매출액}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당기 매입액} \times \text{적용세율} \end{aligned}$$

이 경우 매출증치세를 초과하는 매입증치세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

에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 매입증치세를 환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증치세 초과분이 일부 환급될 수 있다.

【例 13】 증치세 일반납세자인 G사의 적용세율은 17%이며, 2010년 8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 ① 백화점에 갑상품을 판매하고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불포함 판매액 800,000위안을 수령하였고, 운송료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송료 58,500위안을 수령
- ② 을상품을 판매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포함 판매액 292,500위안을 수령
- ③ 과세재화를 생산하여 공장동 건설에 사용하였는바 원가는 20,000위안, 원가이윤률은 10%이며 동류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음.
- ④ 병제품을 구입하고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상 대금 은 600,000위안, 매입증치세는 102,000위안이며, 운송료 6000위안을 지급하고 운송료 계산서를 수령
- ⑤ 농업생산자로부터 면세농산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 300,000위안, 운송료 50000위안을 지급하고 상응한 세금계산서를 수령

G사의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증치세:

$$\text{매입증치세①} = 800,000 \times 17\% + \frac{58,500}{1 + 17\%} \times 17\% = 144,500(\text{위안})$$

$$\text{매입증치세②} = \frac{292,500}{1 + 17\%} \times 17\% = 42,500(\text{위안})$$

(2) 매입증치세:

$$\text{매입증치세①} = 102,000 + 60,000 \times 7\% = 106,200(\text{위안})$$

$$\text{매입증치세②} = 300,000 \times 13\% - 50,000 \times 7\% = 42,500(\text{위안})$$

$$\text{매입증치세(합계)} = 148,700(\text{위안})$$

(3) 납부할 세액:

$$\text{납부할 세액} = 224,400 - 148,700 \times 7\% = 75,700(\text{위안})$$

2) 소규모납세자

소규모납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규정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입증치세는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당기 납부할 세액} = \text{당기 매출액} \times \text{간이세율}$$

【例 14】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인 H사의 2010년 5월 매출액은 20,600위안(세금포함)이며, 당월 원자재 구입가격은 10,000위안이며, 취득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상 매입 증치세는 850위안이다. H사의 2010년 4월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매출액} = \frac{20,600}{1 + 3\%} \times 3\% = 600(\text{위안})$$

3) 수입재화

$$\text{당기 납부할 세액} = \text{조성평가가격} \times \text{적용세율}$$

이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납부할 증치세액은 관세감정가액(關稅完稅價格)에 관세 및 소비세를 합한 금액(이를 조성평가가격(組成計稅價格)이라 한다)에 증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14조). 따라서 조성평가가격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조성평가가격} &= \text{관세감정가액} + \text{관세} + \text{소비세} \\ &= (\text{간세감정가액} + \text{관세}) \div (1 - \text{소비세세율}) \end{aligned}$$

【例 15】 사는 미국에서 오토바이를 150대 수입하였다. 세관의 관세감정가액은 대당 15,000위안, 대당 관세는 8,000위안, 오토바이의 소비세 세율이 10%, 증치세율이 17%일 경우 사의 납부할 증치세액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할 세액} = (1500 + 800) \div (1 - 10\%) \times 17\% \times 100 = 6516,666.67(\text{위안})$$

7. 세수우대

가. 법정면세항목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15조).

- ①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 ② 피임약 및 피임용구
- ③ 고서적
- ④ 과학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측정기와 설비
- ⑤ 외국정부, 국제조직의 무상원조로 수입된 물자와 설비
- ⑥ 장애인조직이 직접 수입한 장애인 전용용품
- ⑦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을 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증치세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에 대하여 정할 수 없다. 아울러 증치세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증치세잠행조례 제16조).

나. 개인의 증치세 과세기산점(起征点)

개인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과세기산점에 도달한 경우에만 증치세가 부과된다.

- 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월 판매액이 2,000~5,000원
- ②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 판매액이 1,500~3,000원
- ③ 매회별(按次)납세할 경우 매회(일) 판매액이 150~200원.
- ④ 營改增에 따른 과세대상인 교통운송업과 현대서비스업일 경우 월 판매액이 5,000 - 20,000원, 매회별 판매액이 300 - 500원

상기 과세기산점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과세기산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증치세를 면제고, 도달 또는 초과할 경우 전액 과세한다. 각 성급 재정부서와 국가세무국은 상기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과세기산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37조).

다. 감면세항목 겸영 관련

납세자가 감면세항목을 겸영(兼營)할 경우 감면세항목의 판매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감면세항목과 非비면세항목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면제 받을 수 없다(증치세잠행조례 제16조).

8. 신고납부

가. 납세기간

증치세의 납세기간은 각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소규모납세자의 경우) 3개월이다.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하며, 고정납세기한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건 별로 납부한다. 1개월 또는 1분기를 과세기간으로 선택한 납세의무자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세 신고하여야 하며 전월 미납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을 1일, 3일, 5일, 10일 혹은 15일로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에서 15일 이내에 확정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23조).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이 증치세전용납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세무기관에 증치세를 신고한다.

- ① 증치세신고표
- ② 신고서에 대한 보충자료
- ③ 세금계산서사용에 대한 월보
- ④ 지사, 지점의 매출명세표
- ⑤ 기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나. 납세지

증치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고정사업장이 없이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지 또는 과세용역 발생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한 세관에 신고, 납부한다(증치세잠행조례 제22조).

다. 징수기관

증치세는 원칙적으로 세무기관이 징수하며, 수입재화에 대한 증치세는 세관에서 대리징수한다.

Ⅱ. 증치세 수출환급

1. 개요

증치세 수출환급이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한 증치세와 소비세를 영세율제도에 의하여 환급하거나 또는 납부할 증치세와 소비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증치세 수출환급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제도와 유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되는 재화와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데 반하여 중국의 증치세 수출환급의 경우 매입증치세 전액이 환급되거나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환급률에 따른 매입증치세만이 환급되므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한 이러한 매입증치세가 원가에 가산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증치세 수출환급과 관련하여 2005년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잠정조례 및 소비세잠정조례에 규정에 의거하여 <出口貨物退(免)稅管理辦法(試行)>(수출재화 환급(면세)관리방법(시행)) 등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적용요건

가. 환급요건 및 환급대상 수출기업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가 직접 수출(自營) 또는 타인에게 수출을 위탁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신고하여 수출하고 재무상 판매핵산(銷售核算)을 진행한 후, 관련 증빙을 소재지 국가세무국에 신고하여(報送)환급 또는 그의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하는 비준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출자는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수출재화 환급(면세)관리방법<出口貨物退(免)稅管理辦法(試行)>(2005. 3.16, 국세발[2005]51호, 제2조).

- 대외무역기업, 즉 합법적으로 공상등기 또는 기타 영업수속을 밟고 상무부 및 그가 수권한 기구가 수출경영자격을 수여한 대외무역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
-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출하는 제조기업
- 특정환급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재화 환급(면세)신청이 가능한 기업 및 개인을 말하며, 환급(면세)대상은 주로 아래와 같다(재정부, 국가 세무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관련 통지문 제1조).
 - ① 해외지원, 해외도급, 해외투자에 사용되는 재화
 - ② 정부가 승인한 수출가공지역, 보세물류지역 등 특수지역에 운송하거나 특수지역내 업체 또는 해외업체에 판매하는 재화

- ③ 면세품운영기업이 판매한 재화
 - ④ 생산기업이 해상석유천연가스 개발기업에 판매하는 자사 해양공정구조물
 - ⑤ 국제금융조직 또는 외국정부의 대출을 이용한 국제입찰방식에서 국내기업이 낙찰하여 판매하는 기전제품
 - ⑥ Ocean Shipping Supply Company(外輪供應公司), 원양운송공급회사(遠洋運輸供應公司)가 FOREIGN(外輪), CHINESE OCEANGOING VESSELS(遠洋國輪)에게 판매하는 재화, 국내항공공급회사가 생산하여 국내 및 외국항공회사에 판매하는 항공식품
 - ⑦ 특수지역내 생산기업에 판매하여 동 생산기업의 소모용 제품으로서 세관신고없이 특수지역에 들어가는 물, 전력, 가스
 - ⑧ 수출기업이 해외에 제공하는 수리·정비(修理修配)업무
-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 또는 위탁수출하는 아래 제품은 자가생산 제품으로 간주하여 환급(면세) 해줄수 있다(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관련 통지문 별첨 4 제2조).

- ① 아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의 구입
 - 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명칭, 성능이 같고, 본 기업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제품
 - 본 기업의 상표 또는 해외업체 또는 개인이 본 기업에 제공한 상표를 사용
 - 본 기업의 제품을 수입한 기업에 수출하는 해외업체 또는 개인에 수출
- ② 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세트로 수출하며 본 기업의 제품을 수입한 해외업체 또는 개인에 판매하는 목적으로 아래 각호의 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의 구입
 - 본 기업이 수출한 자사제품의 수리를 위한 도구, 부품
 - 본 기업의 가공 또는 조립이 필요 없이 수출 후 본 기업의 자사제품과 조합 또는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재화
- ③ 수출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이 인가한 집단회사(또는 모공장)의 계열회사(成員企業)(또는 분공장)의 제품을 구입(收購)
- ④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위탁가공 제품
- ⑤ 본 기업의 낙찰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기전제품
- ⑥ 해외 도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화
- ⑦ 해외투자에 사용되는 재화
- ⑧ 해외 지원에 사용되는 재화
- ⑨ 자사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원자재 구입

3. 수출재화의 환급 방법

현재 중국세법상 수출기업의 형식 또는 수출재화의 종류에 따라 수출재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 수출면세 및 환급하는 방법

수출면세 및 환급하는 방법은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출단계에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수출재화가 수출 전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규정된 환급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면세 후 환급하는 방법이 가능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상세한 환급방법은 뒤의 ‘증치세 환급방법’부분을 참조한다.

-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자체 생산제품
- 대외무역기업이 구매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재화(수출재화 환급(면세)관리방법(시행)<出口貨物退(免)稅管理辦法(試行)>, 국세발[2005]51호, 제2조)
- 특정환급기업이 취급하는 환급 대상(세부적인 재화품목은 위 2.. 적용대상의 내용을 참조)
- 생산기업이 수출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자가 생산제품으로 간주하는 재화(세부적인 재화품목은 위 2. 적용대상의 내용을 참조)

나. 수출면세를 하되 환급하지 않는 방법

수출면세를 하되 환급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출단계에서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나, 수출재화를 위해 수출 전에 부담한 증치세를 수출할 때 환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는 수출재화는 이전의 생산, 판매단계 또는 수입단계에서 이미 증치세가 면제되어 수출할 때, 그 재화의 가격 자체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할 필요가 없다.

수출면세가 가능하나 매입증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수출한 아래 재화
 - ① 임가공 수출재화(위탁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재화)
 - ② 고서적
 -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직접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자체 생산재화
 - ④ 피임약품 및 피임도구
 - ⑤ 담배수출 면허를 가진기업이 수출하는 정부의 수출할당 범위 내의 담배
 - ⑥ 군용품 및 군수기업이 수출하는 군수조달물품
 - ⑦ 기타 국가가 규정한 면세화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관련 통지문 별첨 4 제6조)
-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의 수출로 간주되는 아래 재화
 - ①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 ② 특수지역에 소재한 회사가 해외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가공, 수선 및 정비 용역
- ③ 동일 특수지역 및 다른 특수지역내 기업간의 특수지역내의 재화 판매

다. 수출면세, 수출환급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방법

수출면세, 수출환급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단계를 판매단계로 보아 증치세를 징수하는 반면,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출 전에 부담한 세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방법은 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된다.

수출면세가 불가하나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일부 철강재
- 일부 유색금속가공 자재
- 은가루(銀粉)
- 옥수수 전분
- 일부 농약, 의약, 화공제품
- 일부 플라스틱, 고무, 유리 및 그들의 제품
(일부 상품의 수출환급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통지<關於取消部分商品出口退稅的通知>, 제세 [2010]57호).

4. 증치세 환급세율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국의 수출환급제도는 우리나라의 영세율제도와는 다르게 매입증치세를 전액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율의 환급세율에 따라 환급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재정 수입조절을 목적으로 이러한 환급세율을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있는 바, 환급시에는 최신의 환급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01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급세율 기준은 2011.2. 경 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상품 환급세율(商品退稅文庫)이다. (국가세무총국의 20110201A버전 수출상품환급세율문고를 하달함에 관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下發20100201A版出口商品退稅率文庫的通知>, 國稅函 [2011]117號). 이러한 상품환급세율은 중국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http://202.108.90.146/guoshui/action/InitChuko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증치세 환급방법

현재 중국의 증치세 수출환급제도는 선징수후환급(先征后退)방법과 면세/공제/환급(免/抵

/ 退, 이하 “면제/공제/환급”) 방법의 두 가지가 공존한다. 원칙적으로는 1997년 1월 1일부터 면제/공제/환급 방법으로 단일화되었으나, 과거에 적용되던 선징수후환급방법도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 부터 수출입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혹은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직접 생산한 재화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면제/공제/환급 방법을 적용하며, 수출입경영권이 없는 제조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직접생산재화와 1993년말 이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새로운 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은 일률적으로 “선징수후환급”의 적용을 받는다.

가. 선징수후환급(先征後退)

선징수후환급방법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원부재료를 구입할 때 국가세무총국에서 증치세를 선징수하고 제품의 수출이 완료된 경우 기납부한 매입증치세를 환급하는 방법이다.

1)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기업(대외무역기업)이 수출재화에 대해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매입증치세 금액 또는 세관의 수입증치세전용지급증빙서류상에 기재된 완세가격을 환급세액의 기준으로 하여 이에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

수출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수리비용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환급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한다(재정부, 국가 세무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관련 통지문 제5조).

2) 제조기업의 경우

선징수후환급방법을 적용하는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재화는 먼저 세액을 납부한 후 수출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이 환급률에 의거해서 심의하여 환급한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제조법인 화물 수출에 대하여 면, 저, 퇴세관리 운영 규정<生産企業出口貨物“免 / 抵 / 退”稅管理操作規程(試行)>, 國稅發 [2002]11號, 제2조 제2항).

$$\text{당기 납부세액} = \text{당기 국내판매재화의 매출증치세} + (\text{당기 수출재화의 FOB 가격} \times \text{환율} \times \text{징수세율}) - \text{당기 매입증치세}$$

$$\text{당기 환급세액} = \text{당기 수출재화의 FOB 가격} \times \text{환율} \times \text{환급률}$$

만일 제조기업이 원재료 수입 후 가공무역방식(진료가공방식)으로 원재료나 부재료를 수입하

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 한다.

$$\text{당기 납부세액} = \text{당기 국내판매재화의 매출증치세} + \text{당기 수출재화의 FOB 가격} \times \text{환율} \times \text{징수 세율} - (\text{당기 매입증치세} + \text{당기 면세수입원재료의 과세가격} \times \text{징수세율})$$

$$\text{당기 환급세액} = (\text{당기 수출재화의 FOB 가격} \times \text{환율} \times \text{환급률}) - (\text{당기 면세수입원재료의 과세 가격} \times \text{환급률})$$

나. 면제/공제/환급(免抵退) 방법

1) 현행 시행 방법

재화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조세정책은 면세/공제/환급이라는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사제품(自產貨物) 또는 자사제품으로 간주되는 재화 및 대외에 제공하는 가공, 수선 및 정비 용역, 중국정부에 의해 생산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이 수출하는 비 자사제품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하며, 상응한 매입증치세를 공제하며 미 공제분에 대해 환급한다.

- 생산능력이 없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하며, 상응한 매입증치세를 환급한다(재정부, 국가 세무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관련 통지문 제2조).

2) 당기 납부세액의 계산

당기 납부세액

$$= \text{당기 매출증치세} - (\text{당기 매입증치세} - \text{당기 수출재화 중 면제/공제 불가세액})$$

$$\begin{aligned} \text{당기 수출재화 중 면제/공제 불가세액} &= \text{당기 수출재화의 FOB 가격} \times \text{환율} \\ &\times (\text{징수세율} - \text{수출재화의 환급률}) - \text{당기 면제/공제 불가 세액 차감액} \\ &(\text{재정부, 국가 세무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관련 통지문 제5조}) \end{aligned}$$

수출재화의 FOB가격은 수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세금계산서가 실제의 본선인도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기관이 심사확정할 권한이 있다(재정부, 국가 세무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관련 통지문 제4조).

3) 당기 환급할 세액과 면제/공제/환급 세액의 계산

당기 납부세액이 정수(+)이면 환급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납부하면 되고, 납부 세액이 부수(-)이면, 면제/공제/환급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된다. 이 때,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기로 이월해서 공제하며 미달하는 부분은 소멸하게 된다. 즉, 수출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세(면세로 수입된 원자재금액 제외)에 대해 환급률만큼만 증치세를 환급하겠다는 취지이다.

환급할 세액의 구체적인 산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당기말 미공제세액 ≤ 당기 면제/공제/환급 세액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 = 당기말 미공제 세액

당기 면제/공제 세액 = 당기 면제/공제/환급세액 - 당기 환급할 세액

이 때,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은 당기 증치세납세신고표상의 기말 미공제세액으로 하며, 이는 납부할 세액의 절대값과 같게 된다

(ii) 당기말 미공제세액 > 당기 면제/공제/환급 세액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 = 당기 면제/공제/ 환급 세액

(재정부, 국가 세무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관련 통지문 제5조)

6. 면제/공제/환급 방법의 등록신청

수출기업은 대외 무역 경영자 신고등기절차 완료 후 또는 처음으로 위탁수출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타 업체는 첫 재화 또는 용역 수출업무가 발생하기 전에 소재지 세무기관에 가서 수출환급/면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재화 및 용역 수출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 2012년 24호 공고).

Ⅲ. 가공무역의 증치세 부과

중국내에서 가공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내용에 임가공을 포함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국세관에서 임가공수출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보세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 내에 설립될 것으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공무역 외의 일반사업도 같이 영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공무역을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는 수입한 날로부터 가공된 완제품이 수출이 되는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당해 가

공무역과 관련된 수입, 보관, 양도, 이전, 판매, 사용, 수출 등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므로, 일반 사업과는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가공무역은 크게 진료가공(進料加工)방식과 내료가공(來料加工)방식의 두 가지로 나뉜다.

1. 진료가공

가. 진료가공의 정의

진료가공은 중국가공기업이 외화로 수입한 원재료, 부자재, 부품, 장비, 포장원료 등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이 완제품을 다시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가공무역방식이다(세관의 가공 무역 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 방법<海關對加工貿易貨物監管辦法>, 세관총서 제219호령 제42조). 진료가공의 특징은 중국내 가공기업이 외화로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원재료 수입을 한다는 점이다. 가공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한 후 제품생산수량, 규격, 모델을 자체 내에서 결정하며,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제품의 판매대상 및 가격을 자체적으로 선택결정하며, 수입원재료와 가공된 완제품, 반제품의 모든 권리는 가공기업에 있다. 진료가공의 원재료는 수입한 날로부터 가공된 완제품이 수출이 되는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입원료와 가공된 완제품은 국내에서 허가없이 판매될 수 없다.

나. 진료가공의 증치세 문제

진료가공은 중국가공기업이 해당 원자재를 수입하는 형태이므로, 수입통관시 해당 원자재에 대해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진료가공방식을 선택한 경우 면제/공제/환급 방식으로 증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내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한 경우 납부한 매입 증치세를 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다.

가공기업이 진료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한 원재료, 부품 등을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원재료 등에 대해 세관에서 등록비준한 진료가공등기수책에 근거하여 진료가공무역신청표를 작성한 후 수출환급 주관 세무서에 제출하여 동의 및 날인을 받아야 하며, 가공된 제품의 증치세 액계산시 재수출한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등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치세액을 공제한다. 화물의 수출 후 수출환급주관 세무관서에서 환급 또는 공제 및 면세증치세액의 계산시 이 부분에 대한 증치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국가세무총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제4조, 국가세무총국 2012년 24호 공고).

다. 진료가공의 경우 증치세액의 계산방식

진료가공수출물품에 대한 증치세액의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기 납부세액 = 당기 수출재화의 FOB 가격 × 환율 × 예정분배율

예정분배율 = 예정수입총액 ÷ 예정수출총액 × 100%

당기 수출재화 중 면제/공제/환급 불가세액

= 당기 수출재화의 FOB 가격 × 환율 × (증치세율 - 환급세율)

((재정부, 국가 세무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 관련 통지문 제5조)

2. 내료가공

가. 내료가공의 정의

내료가공은 넓은 의미에서 해외에서 제공하는 원재료,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업체가 대금을 받지 않고, 원재료 부품 등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설비도 제공한다. 중국내 가공기업은 외국업체의 요구에 따라 가공하여 완제품을 외국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국내 가공기업은 가공비를 받게 된다(세관의 가공무역 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 방법<海關對加工貿易貨物監管辦法>, 세관총서 제219호령 제42조).

나. 내료가공의 증치세 문제

내료가공에서는 중국 가공기업이 원자재를 해외 구매자로부터 무상으로 중국으로 들여오고 (해외 구매자의 수출실적이 아님) 추후 완성품을 당초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가공비만 수취하게 된다. 이 경우 중국 가공기업이 수취한 가공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자재의 수입과 완성품의 해외반출시에는 증치세 및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료가공은 동 원자재 수입신고시 중국세관에서 동 원자재에 대해 등기수책을 만들어 관리하게 되며, 추후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되면 당초 수입원자재 등기수책에서 차감한다. 이를 등록 말소(핵소, 核銷)라고 하며,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수입시 면세된 원자재의 내수전용 및 수입관세 포탈을 감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공기업은 내료가공원자재를 면세로 수입 통관한 후 세관의 내료가공수입화물수입신고서 및 내료가공등기수책을 수출환급주관세무관서에 제출하여 내료가공면세증명을 받으며, 이를 증치세 징수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위탁가공 화물 및 가공비에 대한 증치세 및 소비세 면세신고를 한다. 내료가공생산물품을 수출한 후 가공기업은 내료 공화물수출신고서, 세관에서 등록말소 수속을 마친 내료가공등기수책 및 외환 수취증빙서류를 수출환급주관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등록말소 수속을 한다((국가세무총국의 수출재화 및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제9조, 국가세무총국 2012년 24호 공고).

내료가공에 대한 증치세 과세원칙은 수출면세 후 환급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는 수출에 대해서는 면세하나 매입증치세는 환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즉, 외국위탁기업에 가공기업에 지불하는 가공임에 대해서만 면세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내료가공과 관련해서는 증치세 과세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내료가공은 제품의 소유권이 모기업에 있기 때문에 중국가공기업의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중국내 원부자재 구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관계당국(세관 등)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국내조달이 가능하나, 국내조달시 원부자재 공급처에 지불한 매입증치세의 공제,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심가공결전 (深加工結轉)

특기할 사항으로, 심가공결전이란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한 원료로 가공한 반제품을 기타 가공업체에게 이전하여 진일보 가공한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방식을 말한다(세관의 가공무역 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 방법<海關對加工貿易貨物監管辦法>, 세관총서 제219호령 제42조). 이와 관련하여 심가공결전이 중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1992년 외상투자기업의 수출 및 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내료 또는 진료가공방식으로 가공한 제품을 재가공, 조립 후 수출할 경우 동 제품이 1차가공업체에서 2차가공업체로 반출시 이에 대해 보세처리한다는 공문(국세발 1992-146 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심가공결전 거래에 대하여 증치세 등을 과세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중국 국세청은 위 문건을 2006년 4월 30일 “기실효 또는 폐지된 세수규범문건목록(국세발 2006-62호)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면세규정도 폐지되었고 이후로는 심가공결전 거래에 대해 일반적인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준하여 증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제7장 _ 영업세편

1. 영업세 개요

영업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목으로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용역 제공(증치세 비과세 대상인 용역), 무형자산 양도 및 부동산 매각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제이다.

중국은 1950년 <공상업세 잠행조례>를 발표하여 영업세와 소득세를 통합한 공상업세(工商業稅)를 부과하면서 영업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1958년에 세계개혁을 실시하면서 화물세(貨物稅), 상품유통세(商品流通稅), 인지세(印花稅) 및 영업세를 통합한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에 공상통일세 및 기타 세목을 공상세로 통합하면서 영업세의 부과를 중지하였다. 그후 1984년 제2차 利改稅¹⁸ 개혁시 중국은 영업세를 공상세로부터 분리해서 상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에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세는 독립적인 세목으로 되었다. 1994년에 세계개혁시 영업세의 부과대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는바, 재화의 생산·

¹⁸ 이윤상납제도를 납세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의 제반 과정 및 가공·수선·정비용역(加工/修理修配勞務) 등 과거 영업세의 부과 대상이었던 상당수의 항목들을 증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 교통운수업, 일부 현대 서비스업 등 기존 영업세 과세대상을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중국어로 營改增이라 함)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5년도에 營改增의 범위를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일반 서비스업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서 기존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증치세 과세대상으로 전부 전환하게 되므로 중국의 영업세는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영업세와 관련된 주요 법률,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 <영업세잠행조례(營業稅暫行條例)>(2008년 11월 10일 국무원 제540호령으로 최신 수정)
- 2) <영업세잠행조례실시세칙(增值稅暫行條例實施細則)>(2008년 12월 15일 재정부 제52호령으로 최신 수정)

참고로, 중국내에서 영업세와 유사한 세금으로는 증치세가 있는바, 하나의 거래에 대해 영업세 혹은 증치세를 징수하며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2. 영업세의 부과대상

중국 경내에서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혹은 부동산의 매각은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영업세잠행조례 제1조, 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1조). 2011년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시행하므로써 현재 영업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는 주로 건축업, 금융보험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생활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영업세의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국 “경내”

다음 각호의 활동은 중국 “경내”에서의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로 간주할 수 있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4조).

- ① 과세용역을 제공 또는 접수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 있을 경우
- ② 양도하는 무형자산(토지사용권 불포함)을 양수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 있을 경우
- ③ 토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토지가 중국 경내에 위치한 경우
- ④ 판매 또는 임대하는 부동산이 중국 경내에 위치한 경우

나. 과세행위

과세행위란 과세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소유권을 유상 양도하는 행위(이하 “과세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유상이란 화폐, 재화 또는 기타 경제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3조).

다만 위 과세용역에는 단위나 개인사업자(慳郎工商戶)가 고용한 직원이 그 단위나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과세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특수행위의 세무처리

1) 과세행위의 발생으로 간주

납세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과세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5조).

- ① 단위나 개인이 부동산 또는 토지사용권을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
- ② 단위나 개인이 자체로 건물을 건축(이하 “자체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자체건축 행위
- ③ 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2) 혼합판매행위

혼합판매행위란 하나의 판매행위에서 영업세 과세용역의 제공과 영업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유형의 동산을 몰하며 전기, 열, 가스를 포함한다)의 판매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혼합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별하여 영업세 또는 증치세를 부과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6조)

- ①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나 개인사업자 또는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를 주업(50% 초과)으로 하고 영업세 과세용역을 겸영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재화의 판매로 보아 증치세를 부과한다.
- ② 기타 업체와 개인의 혼합판매행위는 영업세 과세행위의 제공으로 보아 영업세를 부과한다.
- ③ 다만 다음의 혼합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세용역의 영업액과 재화의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여 과세용역의 영업액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부과하고 재화의 판매액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부과하며, 구분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용역의 영업액을 추계인정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7조).
 - (i) 건설업용역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생산화물을 판매하는 행위
 - (ii) 재정부·규정하는 기타 상황

3) 겸영행위(兼營行爲)

겸영행위란 납세자가 영업세 과세행위 외에 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것을 말한다. 겸영행위인 경우 과세용역의 영업액과 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의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여 과세행위의 영업액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부과하고, 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의 판매액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부과하며, 구분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용역의 영업액을 추계인정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8조).

3. 영업세의 세율

영업세율은 서로 다른 산업별 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로 3%와 5%의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업세율을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영업세잠행조례 제2조). 세율이 다른 과세행위를 겸영하는 경우 다른 과세행위의 영업액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영업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영업세잠행조례 제3조).

〈영업세 세율표〉

과세항목	세율(%)	비고
건축업	3	
금융보험업	5	
문화체육업	3	
오락업	5~20	성급 인민정부가 해당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적용 세율을 추계인정함.
생활서비스업	5	
무형자산의 양도	5	
부동산의 양도	5	

4. 영업세의 납세의무자

가. 납세의무자

영업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경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단위와 개인이다(영업세잠행조례 제1조).

여기서 “단위”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事業單位), 군사단위와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며, 과세행위가 발생되어 화폐, 재화 또는 기타 경제이익을 취득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위 내부의

법에 따라 세무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내부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9조, 제10조). 개인이란 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포함하며, 단위나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그 단위나 고용주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3조, 제9조).

위 일반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 관련 법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업세 납세의무자의 특수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 ① 도급, 임차, 부속(挂靠 : 명의 제공) 방식으로 운영하는 도급인, 임차인, 명의제공자(이하 “도급인”)이 과세행위를 행하였지만 도급인이 발주자·임대자·명의수령자(이하 “발주자”)의 명의로 대외경영업무를 영위하고 또한 발주자가 관련 법률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11조).
- ② 건축설치업무의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 ①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의 원천징수의무자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과세행위를 행하였지만 중국 경내에서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 경내의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대리인이 없을 경우 양수인 또는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영업세잠행조례 제11조).
- ② 재정부, 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원천징수의무자

5. 납세의무 발생시기

영업세 납세의무는 과세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고 영업수입대금 또는 영업수입대금을 수취할 증빙을 수취한 취득한 당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영업세잠행조례 제12조).

가. 납세의무 발생시기의 확정

- ① 영업수입대금을 수취한 당일이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행위 발생과정 또는 완성 후에 대금을 수취한 당일을 말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4조)
- ② 영업수입대금을 수취할 증빙을 수취한 당일이란 서면계약에서 정한 지급일 당일을 말하며,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서면계약에 지급일자를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행위를 완성한 당일을 말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4조).
- ③ 영업세의 원천공제의무의 발생시기는 영업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이다(영업세잠행조례

제12조).

- ④ 국무원의 재정·세무 주관부서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나. 구체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

- 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의무자가 선수금방식을 취하는 경우 당해 선수금을 받은 당일
- ② 건설업 또는 임대업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의무자가 선수금방식을 취하는 경우 선수금을 받은 당일
- ③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또는 토지사용권을 기타의 단위나 개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당일
- ④ 납세의무자가 자체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자체건축 행위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자체 건축 건물을 판매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5조)

6. 납부세액의 계산

가. 개요

영업세의 납부세액은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의 영업액에 적용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나. 영업액의 계산

영업액이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모든 대가 및 부대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로 한다(영업세잠행조례 제5조).

- ① 납세의무자가 관광업에 종사할 경우 취득한 모든 대가 및 부대비용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지급한 주숙비, 식비, 교통비, 유원지 입장권 및 기타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관광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영업액으로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기타 단위에게 하도급한 경우 취득한 모든 대가 및 부대비용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하도급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영업액으로 한다.
- ③ 외환, 유가증권, 선물 등 금융상품의 매매업무인 경우 매출가에서 매입가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판매액으로 한다.

【例 17】A사는 모 아파트프로젝트의 시행사로서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공사업무를 B사에게 20,000만위안으로 원도급하였고, B사는 인테리어공사를 10,000만위안으로 C사에게 하도급하였다. 공사완료 후 A사는 자금부족으로 5,000만위안에 달하는 건물 두동을 B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하였고, B사는 그중의한개 동은 자신이 사용하고 가치가 3,000만위안에 달하는 건물한개 동을 C사에 하도급 공사비로 대물 변제하였다. 각 당사자의 영업액은 다음과 같다.

A사 : 부동산판매 영업액 = 5,000(만위안)
 B사 : 건축업 영업액 = 20,000 - 10,000 = 10,000(만위안)
 부동산판매 영업액 = 3,000(만위안)
 C사 : 건축업 영업액 = 10,000(만위안)

여기서 부대비용은 가격 외에 수취하는 수속비, 보조금, 기금, 자금모집비, 반환이윤, 장려비, 위약금, 체납금, 연기지급이자, 배상금, 대리수납액, 대리지급액, 벌금이자 및 기타 각종 부대비용이다. 다만 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비준 설립한 정부성격의 기금,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산하의 재정, 가격 주관부서가 비준 설립한 행정사업비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영업세잠행조례 실행세칙 제13조)¹⁹

한편 납세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하는 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아래 방법으로 영업액을 결정한다(영업세세잠행조례 제7조, 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0조).

- ① 납세자의 최근 발생한 동유형 과세행위의 평균가격에 따라 결정
- ② 기타 납세자의 최근 발생한 동유형 과세행위의 평균가격에 따라 결정
- ③ 아래 공식에 따라 결정:

$$\text{영업액} = \text{영업원가 또는 공사원가} \times \frac{1 + \text{원가이윤율}^{20}}{1 - \text{영업세세율}}$$

¹⁹ 이러한 행정사업비는 수취 시에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인쇄 제작한 재정수령증을 작성발행하며, 수취하여 전액 재정에 납입한다.

²⁰ 원가이윤율은 성급 세무기관에서 결정한다.

【例 18】D사의 2010년 5월 광고업무수입은 90만원, 영업원가는 100만원인바, 주관 세무기관에서는 D사의 광고수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백히 낮다고 인정하고 원가이윤율을 15%로 추계인정하였다. D사의 영업액은 다음과 같다.

$$\text{영업액} = 100 \times \frac{1 + 15\%}{1 - 5\%} = 121.05(\text{만원})$$

또한 납세자가 과세행위 발생시 대금과 할인금액을 동일 세금계산서 상에 명기한 경우 할인 후의 대금금액을 영업액으로 한다. 다만 할인금액을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상의 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영업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15조). 아울러 영업액은 인민폐로 계산하는바, 외국통화로 계산한 영업액은 국가에서 공표한(원칙상 중간율) 그 일자나 거래가 발생한 달의 초일에 통용되는 환율(이때, 납세자는 사전에 어느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영업세잠행조례 제4조, 영업세잠행조례 실행세칙 제21조).

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

영업세의 납부할 세액은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의 영업액에 적용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영업세잠행조례 제4조).

$$\text{납부할 세액} = \text{영업액} \times \text{적용세율}$$

한편 납세자가 영업액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한 후 대금의 환불로 영업액이 차감되는 경우 기 납부한 영업세 세액을 환급해 주거나 납세자가 이후 납부하게 될 영업세 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14조).

7. 세수우대

가. 법정면세항목

다음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한다(영업세잠행조례 제8조).

- ①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부양·결혼소개·장례서비스
- ② 장애자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 ③ 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 ④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학생이 아르바이트(勤工儉學)하면서 제공하는 용역
- ⑤ 농업기계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제, 식물보호, 농목업보험 및 관련 기술훈련용역, 가금·축산·수생동물의 교배 및 질병방제 용역
- ⑥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문물보호단위관리기구,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에서 진행한 문화활동의 입장권수입, 종교장소에서 진행한 문화·종교활동의 입장권수입
- ⑦ 경내 보험기구가 수출화물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험제품.

위 규정 이외의 영업세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에 대하여 정할 수 없다. 아울러 영업세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영업세잠행조례 제9조).

나. 영업세 과세기산점(起征点)

개인 납세의무자는 다음 과세기산점에 도달한 경우에만 영업세가 부과된다.

- ① 기간별로 납세하는 경우는 월별 영업액 1,000~5,000위안
- ② 매회별 납세하는 경우는 매회(일)별 영업액 100위안

위 과세기산점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과세기산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영업세를 면제하고, 도달 또는 초과할 경우 전액 과세한다. 각 성급 재정부서와 국가세무국은 위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과세기산점을 구체적으로 추계인정할 수 있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3조).

다. 감면세항목 겸영 관련

납세자가 감면세항목을 겸영(兼營)할 경우 감면세항목의 판매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감면세항목과 非비면세항목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면제받을 수 없다(영업세잠행조례 제9조).

8. 신고납부

가. 납세기간

영업세의 납세기간은 각각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이다.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하며, 고정 납세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건별로 납부한다.

1개월 또는 1분기를 과세기간으로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세신고하여야 하며 전월 미납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을 5일, 10일, 15일, 1개월로 선

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에서 15일 이내에 전월 미납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원천공제 의무자의 납세기간은 위 두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영업세잠행조례 제15조). 다만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신용사(信用社),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납세기간은 1개 분기이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7조).

납세의무자는 신고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세무기관에 영업세를 신고한다.

- ① <영업세납세신고표> 및 관련 별첨
- ②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③ 기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나. 납세지

영업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과세용역발생지, 토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해야 하는 달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이 세금을 보완 징수한다(영업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6조) 영업세의 납세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영업세잠행조례 제14조).

-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할 경우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건축업 용역 및 국무원의 재정·세무 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과세용역을 제공할 경우 과세용역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무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토지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판매 또는 임대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_ 이진가격세제편

1. 이진가격세제 개요

중국에서는 이진가격을 轉移定价(전이정가), 轉讓定价(전양정가) 등으로 부른다. 이진가격세제(轉移定价稅制)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 사

이의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특수관계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중국에서는 이진가격(Transfer Pricing), 이진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원가분담협약(Cost Apportionment Agreements 또는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피 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Enterprises),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및 기타 일반 조세회피방지(General Anti-tax Avoidance) 등 제도를 포함한 특별납세조정제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진가격세제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납세조정(Special Tax Adjustments)이란 세무당국에서 일정한 기준의 지배관계로 형성된 회사집단이 회사 전체로서의 세후 순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위반한 관계사간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핵심내용은 세무주관부서가 조세회피방지의 목적으로 특수거래에 대하여 평가, 조사 및 조정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특별납세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이진가격세제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가. 입법연혁

1) 초보단계('90년대 초~'98년 4월)

1991년 7월에 시행된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이하 “외자기업소득세법”) 제13조에서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기구와 그의 관계사간의 업무거래가 독립거래원칙을 위반하여 과세소득이 감소될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외국법인 및 기구와 그의 관계사 간 거래의 이진가격에 대한 기본제도가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 그후 국무원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을 통하여 외국법인 및 기구의 관계사 범위, 특수거래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국가세무총국은 <관계사간 업무거래 세무관리 실시방법> 및 동 규정에 관한 추가해석을 통하여 조사대상기업의 선정, 세무기관의 감사, 가격정보수집,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한편 1993년 1월에 시행된 <세수징수관리법> 제24조는 <외자기업소득세법>상 규정한 동일한 원칙을 내자기업에까지 확대시켰으며,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을 통하여 관계사 범위, 특수거래 조정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1994년 1월에 시행된 <기업소득세잠행조례> 제10조에서는 내자기업과 그의 관계사 간의 업무거래가 독립거래원칙을 위반하여 과세소득이 감소될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립하여 내자기업과 그의 관계사 간 거래의 이진가격에 대한 기본제도도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기간 동안 이진가격의 기본제도와 원칙은 확립되었지만 실무지침의 부족, 중국 세무기관의 실천경험 부족 등 문제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초보단계로 볼 수 있다.

2) 본격적 시행단계('98년 4월~'08년 1월)

1998년 4월 국가세무총국은 내·외자기업에 통행되는 <관계사 간 업무거래 세무관리 규정>을 공표 및 시행하여 관계사 기준, 특수거래신고, 특수거래금액 확정, 세무기관조사, 회사의 입증, 조정방법, 조정방안 실시, 이전가격 사전승인방법 등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는바, 기존 법규정에 비해 더 정비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 해당 기간에 <세수징수관리법> 및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진행하였지만, 이전가격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는바, 해당 기간은 실무지침 등의 제정 및 실시와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실천을 통한 본격적 실행단계로볼수 있다.

3) 성숙단계('08년 1월 ~ 현재)

2008년 1월 <기업소득세법>의 실시로 내·외자의 구분이 없이 기업소득세가 통일되었으며, “특별납세조정”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원가분담협의, 피지배의 국기업, 과소자본 및 기타 일반 조세회피방지 등 개념이 도입되었다. 다만 규정이 보다 원칙적이고 실무지침이 없어 유명무실하였던 것이 2009년 1월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됨)의 등장으로 비로소 실무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비교적 성숙된 입법체계가 구축되었다.

나. 입법체계

중국 이전가격과세제도는 20여년간에 걸쳐 비교적 성숙된 법률체계를 구축하였는바, 주로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원회의 법률, 국무원의 행정법규, 국무원 산하 각 부서의 부문규장, 성급 및 비교적 큰 도시의 지방정부의 지방성법규 및 국가간 조세협정 등을 포함한다. 이들을 모두 망라할 수는 없으나 주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법령 명칭, 제정기관 및 문호	규정내용 및 효력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협정 제2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협정> 양해각서	기업소득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조세회피방지 관련 협정 이미 80여개 국가와 조세 협약 체결
법률	<기업소득세법>(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령 제63호) <세수징수관리법>(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령 제23호)	세수 기본제도 관련 법률임
행정 법규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 국무원령 제512호)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국무원, 국무원령 제628호)	위 법률의 집행을 위한 사항 규정

구분	법령 명칭, 제정기관 및 문호	규정내용 및 효력
부문 규정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국가세무총국, 國稅發[2009]3호	집행을 위한 사항 규정
	<이전가격 추적 관리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국가세무총국, 國稅函[2009]188호	
	<세수협정 상호협상 절차 실시방법> (국가세무총국 2013년 제56호 공고)	
	기타 국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해석 및 집행 관련 규정	
지방성 법규 및 지방 규정	천진, 광둥, 강서, 감숙 등 성, 시의 세무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규정	관할구역내 위 법률, 행정 법규, 부문규장 등의 집행을 위한 사항 규정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세목과 거래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목을 중심으로 보면, 적용세목의 범위는 기업소득세가 중심이 되며, 증치세·영업세·소비세 및 기타 세목도 대상이 된다. 거래를 중심으로 보면, 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 및 국내거래가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특수 관계기업에는 내자기업과 외국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3. 특수관계신고

특수관계신고는 회사의 연도기업소득세납부신고에 있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세무기관이 어떤 회사와 그의 관계사 간의 거래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조정 등 세수관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신고의 의무가 있는 회사는 관련 규정 및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신고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만 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가. 특수관계의 확정

특수관계란 기업이 기타 기업, 조직 또는 개인과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실시방법 제9조)

- ① 지분 보유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일방이 직/간접적으로 기타 일방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쌍방이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② 자금 또는 담보 제공에 따라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일방과 기타 일방(독립금융기구는 제외) 사이의 대차금액이 일방의 실제납부자본의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일방의 총 차입금 중 10% 이상에 대하여 기타 일방(독립금융기구는 제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③ 고급관리인원의 파견 또는 겸임에 따라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일방의 과반수 고급관리인원(이사회 구성원과 경리 포함) 또는 최소 1명 이상의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을 기타 일방에서 파견하는 경우
 - 양방의 과반수 고급관리인원 또는 최소 1명 이상의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제3자가 파견하는 경우
 - 일방의 과반수 고급관리인원이 동시에 기타 일방의 고급관리인원을 겸임하는 경우
 - 일방의 1명 이상의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이 기타 일방의 이사회 구성원을 겸임하는 경우
- ④ 생산, 경영에 대한 통제로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일방이 공업소유권, 노하우 등 특허권을 제공해야만 기타 일방의 생산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 경우
 - 일방의 구매 또는 판매 활동이 주로 기타 일방의 통제를 받는 경우
 - 일방의 용역의 접수/제공이 주로 기타 일방의 통제를 받는 경우
- ⑤ 기타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일방이 기타 일방의 생산경영, 거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또는 쌍방이 이익상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여기에는 위에 규정한 지분비율에 미달하였지만 일방과 기타 일방의 주요 주주가 거의 동일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거나 또는 가족, 친족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나. 특수관계거래의 유형

특수관계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된다(실시방법 제10조).

- ① 유형자산의 구매와 판매, 양도 및 사용 : 건축물, 교통도구, 기계설비, 공구, 상품, 제품 등 유형자산의 구매와 판매, 양도 및 임대 등 업무 포함.
- ② 무형자산의 양도 및 사용 : 토지사용권, 저작권, 특허, 상표, 거래처 명단, 마케팅 채널, 상호, 영업비밀, 노하우 등 특허권 및 의장 또는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의 양도와 사용허가 등 포함.
- ③ 자금융자 : 장기, 단기 자금차입 및 담보의 제공 및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선급금 또는 이연 지급금 등 업무 포함.
- ④ 용역제공 : 시장조사, 마케팅, 관리, 행정사무, 기술서비스, 유지보수, 설계, 자문, 대리, 연

구개발, 법률, 회계 등 서비스의 제공 등 포함.

다. 특수관계신고의 내용

장부검사징수(查四征收)를 실시하는 주민기업과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고 기업소세를 사실신고(据實申報)하는 비주민기업은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이듬해 5월 31일 전입)를 제출하는 시점에 <기업 연도 특수관계거래 보고표>(企業年度關聯業務往來報告表)를 제출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11조).

4. 관련자료 관리

<기업소득세법> 제43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그의 관계사와 특수거래시 연도별로 특수거래 관련 이전가격관리의 기초적인 자료와 증빙(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이하 “관련자료”)을 준비, 보관, 제공하고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하 “관련자료 일상관리”)하여야 한다.

가. 관련자료의 준비

특수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특수거래가 발행한 이듬해 5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자료를 준비해야 한다(실시방법 제16조).

여기서 말하는 관련자료에는 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실시방법 제14조).

- ① 회사의 조직구조
- ② 회사의 생산경영상황
- ③ 특수거래 상황
- ④ 비교가능성 분석
- ⑤ 이전가격 방법의 선택 및 사용

나. 관련자료 준비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자료의 준비의무가 면제된다(실시방법 제15조).

- ① 연도 발생 관계사 구매·가공무역인 경우 회사의 연도 수출입 통관금액에 따라 계산)이 2억 위안 이하이고 동시에 기타 특수거래 금액(관계사간 자금거래는 이자수불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4,000만위안 이하인 경우. 상기 금액에는 회사가 해당 연도 내에 원가분담협의 또는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를 집행하는 과정에 언급되는 특수거래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특수거래가 시행중인 사전승인 이전가격을 집행하기 위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

③ 외자지분이 50% 이하이고 동시에 중국내 관계사와만 특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다만 원가분담협의 집행기간 내에 있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이전가격조정을 받은 회사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실시방법 제45조, 제74조).

다. 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관

회사는 세무기관에서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내(불가항력으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불가항력 사항이 해소된 날로부터 20일 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16조).

다만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납세조정을 실시한 회사에 대하여 조정을 한 마지막 연도의 이듬해로부터 5년간 추적관리를 실시하는바, 추적관리 기간 내에 회사는 추적연도의 이듬해 6월 20일 전에 추적연도의 관련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실시방법 제45조).

한편, 관련자료는 특수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이듬해 6월 1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실시방법 제20조), 회사의 합병, 분리 등 원인으로 세무등기를 변경 또는 말소하였을 경우 합병 또는 분리 후 존속하는 회사가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실시방법 제18조).

라. 관련자료 의무 불이행 관련 법률책임

회사가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000~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이 관련자료 등 관련기업간 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여 특수거래의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지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000~5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실시방법 제105조).

5. 이전가격 관리

이전가격이란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경제연합체가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수거래에 있어 독립거래원칙을 위반하여 가격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요소에 따른 시장가격이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은 이를 제재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거래원칙이란 특수관계자간 업무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간에 공정한 거래가격과 영업관행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52조).

가. 비교가능성 분석

기업간 특수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및 세무기관에서 특수거래를 심사 및 평가할 경우 모두 독

립거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21조)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가능성 분석을 진행하여야 하는바, 비교가능성 분석의 고려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다(실시방법 제22조).

- ① 거래 자산 및 노무의 특성
- ② 거래 각 당사자의 수행 기능 및 위험 부담
- ③ 계약조건
- ④ 경제환경
- ⑤ 경영전략

나. 이전가격의 조정방법

이전가격의 조정방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M :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법(RPM : 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법(CPM : Cost-plus Method), 거래순이윤법(TNMM :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이익분할법(PSM : Profit Split Method),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Other method in compliance with the arm's-length principle) 등이 포함된다(실시방법 제21조).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M)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자 간의 동일 또는 유사 업무거래에서 수취한 가격을 근거로 특수거래의 공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거래와 비특수거래의 거래자산 또는 노무의 특성, 계약조항, 경제환경의 차이를 중점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비교가능성분석을 진행한 결과 특수거래와 비특수거래간 상기 방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차이로 가격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바,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23조).

2) 재판매가격법(RPM)

재판매가격법이란 관계사가 구입한 재화를 비관계사에 재판매한 가격에서 비교가능 비관계거래의 매출 총이익(毛利)을 공제한 잔액을 특수거래의 관계사가 재화를 구입하는 공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바,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공정한 거래가격} &= \text{비관계사에 대한 재판매가격} \times \\ & (1 - \text{비교가능 비관계거래의 매출 총이익률}) \div \text{비교가능 비관계거래의 매출 총이익률} \\ & = \text{비교가능 비관계거래의 매출 총이익} \div \text{비교가능 비관계거래의 NET 수입} \times 100\% \end{aligned}$$

재판매가격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거래와 비특수거래의 기능과 위험 및 계약조항의 차이 및 매출 총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를 중점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비교가능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특수거래와 비특수거래간 상기 방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차이로 매출 총이익률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바,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24조).

3) 원가가산법(CPM)

원가가산법이란 특수거래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원가에 비교가능한 비관계거래의 매출 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특수거래의 공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바,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실시방법 제25조).

$$\begin{aligned} \text{공정한 거래가격} &= \text{특수거래의 합리적인 원가} \times (1 + \text{비교가능 비관계거래의 원가가산률}) \\ \text{비교가능 비관계거래의 원가가산률} &= \text{비교가능 비관계거래의 매출 총이익} \\ &\quad \div \text{비교가능 비관계 거래의 원가} \times 100\% \end{aligned}$$

원가가산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거래와 비특수거래의 기능과 위험 및 계약조항의 차이 및 원가가산률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를 중점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비교가능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특수거래와 비특수거래간 상기 방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차이로 원가가산률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바,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25조).

4) 거래순이익법(TNMM)

거래순이익법이란 비교가능 비특수거래의 이익률지표로 특수거래의 순이익률을 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바, 이익률지표에는 자산수익률, 판매이익률, 총원가가산률, Berry Ratio 등이 포함된다. 거래순이익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거래와 비특수거래의 기능과 위험 및 경제환경의 차이 및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를 중점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비교가능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특수거래와 비특수거래간 상기 방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차이로 영업이익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26조).

5) 이익분할법(PSM)

이익분할법이란 특수거래에서 실현한 결합이익에 대한 회사와 그의 관계사의 공헌도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는 이익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이익분할법은 특수거래 각 참여자의 수행기능, 위험부담 및 사용한 자산에 근거하여 각자

가 실현하여야 하는 이익을 확정한다. 이익분할법은 특수거래 각 참여자의 결합이익에서 각자에게 분배한 일상이익을 차감한 잔액을 잉여이익으로 하고 다시 잉여이익에 대한 각자의 공헌도에 따라 재분배한다.

이익분할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거래의 각 참여자의 수행기능, 위험부담, 사용한 자산, 원가/비용/소득/자산의 각 거래자간의 배분, 회계처리, 잉여이익에 대한 특수거래 각 참여자의 공헌도를 확정하는 데 사용된 정보와 가정조건의 믿음성 등 요소를 중점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익분할법은 통상 각 참여자의 특수거래가 고도로 통합되고 또한 각 참여자의 거래결과를 단독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한다(실시방법 제27조).

6)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

위의 방법을 통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기관이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말한다.

다. 이전가격의 조사 및 조정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체칙>의 세무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을 확정하고 이전가격의 조사와 조정을 진행한다. 조사대상기업은 반드시 특수거래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숨겨서는 아니된다(실시방법 제28조).

1) 조사대상기업의 선정

이전가격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회사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실시방법 제29조).

- ① 특수거래의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또는 유형이 비교적 많은 회사
- ② 장기적(2년 이상)으로 결손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작거나 이익변동이 심한 회사
- ③ 동일 산업의 이익수준보다 이익수준이 낮은 회사
- ④ 이익수준과 부담하는 기능과 위험이 서로 대응되지 않는 회사
- ⑤ 조세피난처의 관계사와 업무거래가 발생한 회사
- ⑥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회사
- ⑦ 기타 독립거래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회사

다만 실제조세부담이 동일한 중국 경내의 관계사 간의 거래인 경우 해당 거래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전체적인 세금수입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전가격 조사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실시방법 제30조).

한편 세무기관은 일상 징수관리 업무과정에서 회사의 기제출한 납세자료(역년 연도소득세신고 등)를 근거로 회사의 생산경영상황, 특수거래 등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기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세무기관의 이러한 평가와 분석과정에 자발적으로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실시방법 제31조).

2) 이전가격의 조사

- ① 현장조사 : 세무기관은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2명 이상의 조사인원에 의해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면담, 장부자료 조사 및 현장실사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실시방법 제32조).
- ② 자료요청 : 세무기관은 회사, 관계사 및 특수거래 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이하 “비교가능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세무사항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 회사는 <세무사항통지서>가 지정한 시일 내(30일 연장 가능)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사 및 비교가능기업은 세무기관과 약정한 기간(통상 60일을 초과하지 않음) 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33조).
- ③ 증거수집 : 세무기관은 회사의 관련신고자료 및 관련자료 외에 관계사와 비교가능기업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실시방법 제35조).

3) 이전가격의 조정 방법

- ① 세무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이전가격의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특수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분석 및 평가함에 있어 공개정보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공개정보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실시방법 제37조).
- ② 세무기관의 회사의 특수거래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있어 회사와 비교가능기업 간 운영자본 점용차이로 인하여 영업이익에 주는 차이는 원칙상 조정하지 않으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세무총국의 기준을 취득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38조).
- ③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가공제조하되 경영상의 판단, 제품개발, 판매 등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회사는 경영판단상의 실수, 가동률 부족, 제품의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정한 이윤률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적당한 비교가능가격 또는 비교가능기업을 선정하여 회사의 이윤률을 확정한다(실시방법 제39조).
- ④ 회사와 관계사 간에 대금을 수취 또는 지불하는 거래가 상계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비교가능 성분석 또는 납세조정 시에 상계거래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40조).
- ⑤ 세무기관이 사분위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이윤수준을 분석 및 평가할 경우 회사의 이윤수준이 비교가능기업의 이윤률 구간의 중위값보다 낮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중위값보다 낮은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40조).

- ⑥ 회사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 등 특수거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완전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정할 수 있다(실시방법 제106조).

4) 이전가격의 조정 절차

조사결과 기업의 특수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될 경우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조사결론을 내리고 회사에 <특별납세조사결론통지서>를 발송한다(실시방법 제42조). 조사결과 기업의 특수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과세소득을 감소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전가격 납세조정을 진행한다(실시방법 제43조).

- ① 추산, 논증 및 비교가능성 분석을 진행상 기초상 초보조정방안을 작성한다.
- ② 초보조정방안에 따라 회사와 협상, 답판한다.
- ③ 회사는 초보조정방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은 자료 수취 후 성실하게 심사하고 즉시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 ④ 심사결정에 따라 회사에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를 발송한다. 회사는 초보조정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은 회사의 의견을 수취한 후 재차 심사한다. 회사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초보조정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최종조정방안을 확정하고 회사에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발송한다. 회사는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이전가격 조정 후 추후관리

세무기관은 회사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을 실행한 후 조정연도의 이듬해로부터 5년간 추적종관리를 실시한다. 추적관리 기간 내에 회사는 추적연도의 이듬해 6월 20일 전에 세무기관에 추적연도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추적관리 기간 내에 회사의 이전가격에 이상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와 상담하여 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를 개시한다(실시방법 제45조).

6.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란 회사가 향후 연도내 특수거래의 가격결정 원칙과 산정방법을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세무기관과 독립거래원칙에 준하여 협상, 확인 후 체결한 합의를 말한다.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는 편무합의(UAPA : Unilater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쌍무합의(BAPA : Bilater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다자간합의(MAPA : Multination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로 구분된다(실시방법 제46조).

가. 사전승인합의 적용기업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에 적용된다(실시방법 제48조).

- ① 연간 발생한 특수거래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것
- ② 법규정에 따라 관련신고의무를 이행할 것
- ③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준비, 보관 및 제공할 것

나. 사전승인합의의 적용연도 및 소급력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는 회사가 정식 서면신청을 제출한 이듬해부터 3~5년간의 특수거래에 적용된다.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는 세무기관에서 회사가 정식 서면신청을 제출한 연도 및 이전 연도의 특수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및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사의 당해 및 이전 연도의 특수거래가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적용연도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회사의 신청 및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에 따른 가격결정 원칙과 산출방법을 당해 또는 이전 연도의 특수거래에 대한 평가 및 조정에 적용할 수 있다(실시방법 제49조).

다. 사전승인합의 및 집행 절차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및 집행은 일반적으로 예비회담, 정식신청, 심사평가, 협상, 합의, 집행 및 감독 등 6개 단계가 포함되며(실시방법 제46조),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신청은 匾를 설립한 시, 자치주 이상 세무기관에서 접수한다(실시방법 제47조).

1) 합의 의향서 제출 및 예비회담

회사는 정식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우선 세무기관에 서면의 합의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회사의 서면요구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관련 내용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가능성에 관하여 회사와 회담을 전개한다(실시방법 제50조). 회사가 편무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합의 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회담을 진행하며, 회사가 쌍무합의 또는 다자간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 및 주관 세무기관에 체결의향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에서 회사와 예비회담을 진행한다.

예비회담에서 합의를 달성한 경우 세무기관은 합의를 달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식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정식회담통지서>(預約定價安排正式會談通知書)를 송달한다. 예비회

담에서 합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세무기관은 마지막 예비회담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신청을 거절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설명한다(실시방법 제50조 제(3)항).

2) 정식신청

회사는 세무기관의 정식회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서면신청보고를 제출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정식신청서>(預約定價安排正式申請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쌍무합의 또는 다자간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정식신청서>와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啓動相互協商程序申請書)를 국가세무총국과 주관 세무기관에 동시에 송부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51조).

다만 회사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면신청보고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세무기관에 서면연기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바, 세무기관은 회사의 서면연기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내에 연기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연기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실시방법 제51조 제(2)항).

3) 심사평가

세무기관은 회사가 제출한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정식서면신청 및 필요한 서류,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개월 내에 심사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심사평가의 구체상황에 따라 회사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근거자료에 따라 최종 심사평가결론을 내린다. 특수한 사정으로 심사평가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회사에 서면통지하고 심사평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바 연장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세무기관은 주로 과거 경영상황, 기능 및 위험 상황, 비교가능정보, 가설조건, 이전가격 원칙과 계산방법, 예상 공정거래가격 또는 이익 구간 등 내용에 대하여 심사평가한다(실시방법 제52조).

4) 협상

세무기관은 편무합의에 대한 심사평가결론이 형성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와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고, 협상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초안과 심사평가보고서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최종 심사를 받는다. 국가세무총국은 조세협정의 상대방 계약국 주관 세무당국과 쌍무합의 또는 다자간합의의 관련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협상내용에 근거하여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초안을 작성한다.

5) 합의

편무합의인 경우 쌍방의 법정대표자 또는 법정대표자의 수권대표가, 쌍무합의 또는 다자간합

의인 경우 국가세무총국과 조세협정의 상대방 계약국 주관 세무당국의 수권대표가, 각 합의의 당사자가 되는데, 주관 세무기관은 쌍무합의 또는 다자간합의에 근거하여 회사와 〈양자(다자) 이 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집행협약서〉(杜邊(多邊)預約定价安排執行協議書)를 체결한다(실시방법 제54조).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정식협상이 개시된 후부터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 세무기관과 회사는 모두 협상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협상을 종료하는 경우 협상과정에서 서로 제공한 모든 자료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55조).

6) 집행 및 감독

세무기관은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① 회사의 서류보관 및 보고의무(실시방법 제56조 제(1)항)

-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집행기간 내에 회사는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관련 서류와 자료(장부와 관련 기록 포함)를 완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납세년도 종료 후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집행상황에 대한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내의 경영상황과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준수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기관의 정기검사(실시방법 제56조 제(2)항)

-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이행기간 내에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통상 반년에 한번) 회사의 이행상황을 검사한다.
- 세무기관에서 회사가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일반적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구체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바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를 종료할 수도 있다. 만약 회사가 사실을 은닉하거나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실제 경영결과가 규정된 가격 또는 이윤 구간을 벗어난 경우(실시방법 제56조 제(3)항)

-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이행기간 내에 회사의 실제 경영결과가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에서 예측한 가격 또는 이윤 구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상급 세무기관의 기준을 거쳐 실제 경영결과를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에서 규정한 가격 또는 이윤 구간내로 조정한다.
- 쌍무합의 또는 다자간합의인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기준을 받아야 한다.

④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실질적 변화(실시방법 제56조 제(4)항)

-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이행 기간 내에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비주관적인 원인으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 30일 연장 가능)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변화가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무기관은 회사의 서면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체상황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를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⑤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회사와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를 체결한 경우(실시방법 제56조 제(5)항)

-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회사와 공동으로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를 체결한 경우 집행 기간 내에 회사는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연도보고서와 실질적변화보고서를 각기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회사의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연합 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7)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재체결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는 유효기간 만기 후 자동으로 실효되는바,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집행기간 종료 전 90일 내에 세무기관에 연장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청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회사가 제출한 연장신청자료에 근거하여 회사와 이전가격 사전승인합 의초안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결과에 따라 재체결한다(실시방법 제57조).

라. 사전승인합의 관련 기타 제도

1) 여러 개 세무기관이 언급될 경우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체결 또는 집행이 2개 이상의 성, 직할시,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²¹의 세무기관이 언급되거나 또는 동시에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언급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조율한다(실시방법 제58조).

2) 비밀유지

세무기관과 회사는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를 위한 예비회담, 정식교섭, 심사, 분석 등 제반 과정에서 취득 또는 수집한 모든 정보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실시방법 제60조).

²¹ 계획단열시란 중국의 국가계획 중에서 단독으로 열거되고 성(省)급 경제관리권한을 가지는 일부 대도시를 말한다. 계획단열시의 재정수입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성급 재정부서에 상납할 필요가 없다. 현단계 대련(大連), 청도(靑島), 녕파(瀋波), 하문(廈門), 심천(深欄) 등 5개 도시가 있다.

3) 비사실성정보의 추후사용 금지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를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회답, 협상 과정에 취득한 회사의 제안, 추리, 관점과 판단 등 비사실성 정보를 향후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실시방법 제61조).

4) 분쟁의 해결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 이행기간 내에 세무기관과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은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조율을 구할 수 있는바 쌍무합의 또는 다자간합의인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조율을 구하여야 한다. 상급 세무기관 또는 국가세무총국의 조율결과 또는 결정에 대하여 하급 세무기관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지만 회사가 수용하지 못하면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이행을 종료하여야 한다(실시 방법 제62조).

7. 원가분담협의 관리

원가분담협의란 회사와 그의 관계사간 체결한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양도하거나 용역을 공동으로 제공 또는 접수함에 있어서의 국가세무총국과 회사가 원가분담에 관하여 협의함을 말한다(실시방법 제64조).

가. 원가분담협의의 적용범위

원가분담협의는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구매와 마케팅기획(營銷策劃) 활동에 적용된다(실시방법 제67조).

나. 원가분담협의의 체결 요건 및 원칙

원가분담협의의 체결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65조).

- ① 원가분담협의의 각 참여자가 개발, 양도한 무형자산 또는 참여한 용역활동에 대하여 수익권이 있으며 상응한 원가를 분담할 것
- ② 관계사가 분담하는 원가는 비관계사가 비교가능조건 하에서 상기 수익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원가와 일치할 것
- ③ 참여자가 원가분담협이에 따라 개발 또는 양도한 무형자산을 사용함에 있어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한편, 각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2조).

- ① 독립거래원칙 : 관계사가 분담하는 원가는 비관계사가 비교가능조건하에 상기 수익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원가와 일치할 것
- ② 원가와 기대수익 대응원칙(成本和收益配比原則) : 회사와 관계사가 분담하는 원가는 수익의 분담과 대응할 것. 여기서 수익은 합리적이고 계량 가능한 것이고 합리적인 상업가정 및 일상적인 영업에 기초하여 예측한 수익이어야 함(실시방법 제66조).

다. 원가분담협의 주요내용

원가분담협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실시방법 제68조).

- ① 참여자의 명칭, 소재국가(지역), 특수관계, 협의중의 권리와 의무
- ② 원가분담협의와 관련된 무형자산 또는 용역의 내용, 범위 협의와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용역활동의 담당자 및 그 직책과 임무
- ③ 협의기간
- ④ 참여자의 기대수익의 계산방법과 가설
- ⑤ 참여자의 초기투입금액과 후속원가 지급의 금액, 형식, 가격결정 방법 및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된다는 설명
- ⑥ 참여자의 회계처리방법의 운용 및 변경에 대한 설명
- ⑦ 참여자가 협의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절차 및 처리규정
- ⑧ 참여자간 보상지급의 조건 및 처리규정
- ⑨ 협의 변경 또는 종료의 조건 및 처리규정
- ⑩ 비참여자가 협의 성과를 사용할 경우에 관한 규정

라. 원가분담협의 안전 작성 및 심사

회사는 원가분담협의를 체결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을 통하여 국가세무총국에 신고하여 안전 작성(비안 : 備案)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원가분담협이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실시방법 제69 조).

마. 원가분담협의 집행

원가분담협의의 집행기간 내에 참여자의 실제 수익과 분담하는 원가가 서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보상조정(補償調整)을 한다(실시방법 제71조). 다만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는 원가분담협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한다(실시방법 제72조).

- ① 회사가 원가분담협이에 따라 분담한 원가는 협의에서 규정한 각 연도의 납세소득 계산시 세

전 공제하여야 함

- ② 보상조정이 언급될 경우 보상조정을 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여야 함.
- ③ 무형자산의 원가분담협약인 경우 가입지불, 탈퇴보상 또는 협의종료시 원가분담협약의 성과에 대한 분배는 자산의 구입 또는 처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바. 원가분담협약의 참여자 변경 및 협의종료

이미 집행하고 일정한 자산을 형성한 원가분담협약에 대하여 참여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협의가 종료되는 경우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실시방법 제70조).

- ① 가입 지불 : 새로운 참여자는 기존 원가분담협약의 성과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② 탈퇴보상 : 기존 참여자가 원가분담협약에서 탈퇴하면서 기존 원가분담협약의 성과에 대한 수익권을 기타 참여자에 양도할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 ③ 참여자가 변경된 후, 각 참여자의 수익과 원가분담상황에 대하여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 ④ 원가분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각 참여자는 기존 원가분담협약의 성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독립거래원칙에 따르지 않고 상기 상황에 대하여 자체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감소한 경우 세무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사. 원가분담협약의 관련 사전승인합의

회사는 이전가격 사전승인합의의 방법으로 원가분담협약을 달성할 수 있다(실시방법 제73조)²²

아. 관련자료 관리

회사는 원가분담협약의 집행기간 내에 일상 관련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원가분담협약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준비 및 보관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74조).

- ① 원가분담협약의 부분(副本)
- ② 원가분담협약의 각 참여자간 해당 원가분담협약의 실시를 위하여 달성한 기타 협의
- ③ 비참여자의 협의성과 사용에 관한 상황, 지불금액 및 형식
- ④ 당해년도 원가분담협약의 참여자의 가입 또는 탈퇴 상황
- ⑤ 원가분담협약의 변경 또는 종료 상황
- ⑥ 당해년도 원가분담협약에 따라 발생한 원가총액 및 구성상황

²² 원가분담협약의 사전승인 합의의 방법은 상기 "이전가격 사전승인 합의"관리 부분 참조.

⑦ 당해년도 각 참여자의 원가분담 상황

⑧ 당해년도 원가분담협약의 기대수익과 실제결과의 비교 및 이에 대한 조정

회사는 원가분담협약의 집행기간 내에 원가분담협약에 대하여 사전승인합의 방식을 채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듬해 6월 20일까지 세무기관에 원가분담협약의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원가분담협약의 세전공제 불가 원가

회사와 그의 관계사가 원가분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체적으로 분담한 원가는 세전공제할 수 없다(실시방법 제75조).

- ① 합리적인 상업목적과 경제적 실질이 없을 경우
- ②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③ 원가와 기대수익 대응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④ 세무기관에서 원가분담협약의 관련 안전을 작성하지 않거나 원가분담협약의 관련자료를 준비, 보관 및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⑤ 원가분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경영기한이 20년 미만인 경우

8. 피지배외국기업 관리

가. 개요

피지배외국기업이란 <기업소득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주민기업 또는 주민기업과 주민개인(이하 "중국주민주주"라 통칭하며, '중국주민기업주주'와 '중국주민개인주주'가 포함됨)이 통제하고 있으며 실제 조세부담이 주민기업 소득세율(25%) 수준의 50%보다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되었으며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하는 외국기업을 말한다(실시방법 제76조).

여기서 주민기업이란 중국법에 따라 중국경내에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는 기구를 말하며(기업소득세법 제2조), 중국주민이란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 하는 개인을 말한다(개인소득세법 제116조).

한편, 통제란 지분, 자금, 경영, 구매와 판매 등 방면에서 실질적인 통제를 형성한 경우를 말하는바, 그중 지분통제는 중국주민주주가 납세년도의 임의의 날에 직접 또는 간접 다단계로 외국기업의 10%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동으로 해당 외국기업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중국주민주주가 간접 다단계로 보유한 지분인 경우 각 단계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중간층이 보유한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100%

로 간주한다(실시방법 제77조).

아울러 “합리적인 경영수요”의 판단은 피지배외국기업의 중국주민주주가 당해 피지배외국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및 중국내 조세를 감소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신고의무

중국주민기업주주는 연도기업소득세 납세신고시 대외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외투자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78조).

세무기관은 중국주민기업주주가 신고한 대외투자정보를 통합 및 심사하여 피지배외국기업에 <피지배외국기업 중국주민주주 확인통지서>를 송달한다. 중국주민주주가 기업소득세법 제45조²³의 과세조건에 부합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실시방법 제79조).

다. 피지배외국기업 배당액의 계산

1) 계산공식

피지배외국기업이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분배한 부분은 중국주민기업주주에 대한 피지배외국기업의 주식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begin{aligned} & \text{중국주민기업주주의 당기 과세소득} = \text{주식배당 간주금액(視同股息分配額)} \\ & \times \text{실제 주식 보유 일수} \div \text{피지배외국기업의 납세년도 일수} \times \text{주주 지분율} \end{aligned}$$

중국주민주주가 간접 다단계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주주 지분율은 각 단계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실시방법 제80조).

2) 납세년도의 차이

피지배외국기업과 중국주민기업주주의 납세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주식배당 간주소득을 피지배외국기업의 납세년도 종료일이 귀속되는 중국주민기업주주의 납세년도에 산입한다(실시방법 제81조).

3) 경외 납부세액의 공제

중국주민기업주주의 당기 소득에 산입되고 이미 중국 경외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기업소득세법> 및 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실시방법 제82조).

²³ 계획단열시란 중국의 국가계획 중에서 단독으로 열거되고 성(省)급 경제관리관할을 가지는 일부 대도시를 말한다. 계획단열시의 재정수입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성급 재정부서에 상납할 필요가 없다. 현단계 대련(大連), 청도(靑島), 녕파(查波), 하문(廈門), 심천(深欄)등 5개 도시가 있다.

4) 예외사항

중국주민기업주주가 증명자료를 제공하여 피지배외국기업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고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해당 피지배외국기업이 분배하지 않았거나 적게 분배한 이윤을 주식배당금으로 간주하여 중국주민기업주주의 당기 소득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실시방법 제84조).

- ① 국가 세무총국에서 지정한 비저세율국가(지역)에 설립되었을 경우
- ② 수익의 대부분이 적극적인 경영활동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 ③ 연도 이윤총액이 500만위안 미만일 경우

여기서 국가 세무총국에서 지정한 비저세율국가(지역)이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및 노르웨이를 말한다(중국주민주주 피지배외국기업의 소재국 실제 조세부담의 관정을 간화함에 관한 통지<關於簡化判定中國居民股東控制外國企業所在國實際稅負的通知>, 國稅函[2009]37호).

9. 과소자본세제

가. 개요

과소자본이란 회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관계사로부터의 차입을 늘이고 출자를 적게 받는 용자방식을 말한다.

과소자본은 통상 다국적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기본적인 형식으로는 이윤과 이자에 대한 과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모회사에서 기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비용을 수취함으로써 자회사의 조세부담을 늘이는 것이다.

나. 공제불가 지급이자 및 계산방법

회사가 관계사로부터 취득한 채권성투자(이하 “관련채권투자”)와 권익성투자(이하 “권익투자”)의 비율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이하 “공제불가 지급이자”)는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제46조).

1) 공제불가 지급이자의 계산방법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불가 지급이자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실시방법 제85조).

$$\begin{aligned} & \text{공제불가 지급이자} = \text{관계사에 실제로 지불한 연도 총이자비용} \\ & \times (1 - \text{표준비율} \div \text{관련부채자본비율}) \end{aligned}$$

여기서 지급이자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채권투자에서 실제로 지불한 이자, 담보비, 저당비와 기타 이자 성격의 비용을 포함하며(실시방법 제87조), “실제로 지불한 이자”란 기업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원가와 비용으로 산입한 이자를 말한다(실시방법 제91조).

한편, 표준비율이란 금융기업은 5:1, 기타 기업은 2:1이며, 금융업무와 비금융업무를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 기타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비율인 2:1을 적용한다(기업 관계자 이자지출 세전공제 기준에 대한 세수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關於企業關聯方利息支出稅前高除標準有關稅收政策問題的通知>, 財稅[2008]121號).

아울러 관련부채자본비율이란 회사가 모든 관계사로부터 취득한 관련채권투자(관계사가 각종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채권성투자도 포함됨)와 권익투자의 비율을 말한다(실시방법 제85조).

2) 관련부채자본비율의 계산방법

관련부채자본비율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실시방법 제86조).

$$\begin{aligned} & \text{관련부채자본비율} = \text{연간 관련채권투자의 월평균 금액의합} \\ & \div \text{연간 권익투자의 월평균 금액의 합 관련채권투자의 월평균 금액} \\ & = (\text{관련채권투자의 월초 장부잔액} + \text{월말 장부잔액}) \div 2 \text{ 권익투자의 월평균 금액} \\ & = (\text{권익투자의 월초 장부잔액} + \text{월말 장부잔액}) \div 2 \end{aligned}$$

상기 권익투자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소유자권익의 금액을 말하는바, 소유자권익이 납입자본과 자본잉여금의 합계보다 작을 경우 권익투자는 납입자본과 자본잉여금의 합이 되고, 납입자본과 자본잉여금의 합이 납입자본의 금액보다 작을 경우 권익투자는 납입자본의 금액이 된다(실시방법 제86조).

다. 공제불가 지급이자의 처리

1) 일반적인 처리방식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불가 지급이자는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각 관계사에게 비급한 이자가 관계사 이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관계사간에 분배하여야 한다. 그 중 실제 조세부담이 높은 중국 경내 관계사에게 분배된 이자는 공제가 가능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외 관계사에게 실제로 지불된 이자는 주식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식배당과 이자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간의 차이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추징하되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주식배당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실시방법 제88조).

2) 관련부채자본비율이 표준비율 초과시의 처리방식

관련채권자본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이자를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상 관련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원가분담협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준비, 보관하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관련채권투자의 금액, 이자율, 기한, 용자조건 및 채권자본비율 등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됨을 증명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89조).

- ① 회사의 재무상환능력과 차입능력에 대한 분석
- ② 기업그룹의 차입능력과 용자구조현황에 대한 분석
- ③ 회사의 등록자본금 등 권익투자의 변동상황에 대한 설명
- ④ 관련채권투자의 성격, 목적 및 취득시의 시장상황
- ⑤ 관련채권투자의 화폐 종류, 금액, 이자율, 기한 및 용자조건
- ⑥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 상황 및 조건
- ⑦ 담보제공자의 상황 및 담보조건
- ⑧ 동일종류, 동일기간의 대출의 이자율 상황 및 용자조건
- ⑨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 ⑩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회사가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준비, 보관 및 제공하여 관련채권투자의 금액, 이자율, 기한, 용자조건 및 부채자본비율 등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표준비율을 초과한 관계사에 대한 지급이자는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실시방법 제90조).

10. 일반조세회피시도

회사가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는 기타 시도(이하 “조세회피시도”, 세금이 감소, 면제 또는 지연 등 조세회피이익을 얻기 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함)의 실시를 통한 과세소득 또는 소득금액을 감소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일반조세회피방지조사를 개시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제47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0조).

가. 일반조세회피의 규제대상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시도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일반조세회피 조사를 개시한다(실시방법 제92조).

- ① 조세혜택을 남용

- ② 조세협정을 남용
- ③ 회사의 조직형태를 남용
- ④ 조사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 ⑤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는 기타 시도

한편, 세무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조세회피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실시방법 제93조).

- ① 시도의 형식과 실질
- ② 시도가 체결된 시간과 집행기간
- ③ 시도 실현의 방식
- ④ 시도의 각 단계 또는 구성부분간의 관계
- ⑤ 시도와 관련된 각자의 재무상황의 변화
- ⑥ 시도에 따른 조세결과

세무기관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사의 조세회피시도에 대하여 새로이 평가하고 조세회피시도에 따른 조세이익을 취소하여야 한다. 경제적 실질이 없는 회사 특히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고 그의 관계사 및 비관계사의 조세회피의 결과를 인기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조세차원에서 해당 기업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있다(실시방법 제94조).

나. 일반조세회피의 조사절차

일반조세회피의 조사 및 조정은 국가세무총국에 상정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실시방법 제97조). 세무기관은 일반조세회피조사를 개시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해당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회사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이러한 시도가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회사가 규정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또는 제출한 자료가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미 파악한 정보에 따라 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실시방법 제 95조). 세무기관은 일반조세회피조사를 개시할 경우 조세회피를 시도한 회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와 증명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실시방법 제96조).

11. 대응조정 및 국제협상

가. 대응조정의 실질

특수거래의 일방이 이전가격 조사 및 조정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이 대응조정하도록 허용함으

로써 이중과세를 피면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98조).

상기에서 알 수 있는바, 대응조정의 실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중국과 이중과세 관련 조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지역) 소재 회사와의 특수거래인 경우 대응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나. 대응조정의 국제협상

대응조정이 조세협정 국가(지역)의 관계사가 언급될 경우 회사의 신청을 거쳐 국가세무총국이 조세협정의 상대방 체약국 주관 세무당국과 조세협약중 상호협상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실시방법 제98조).

조세협정 국가(지역)의 관계사가 언급되는 대정조정은 회사가 동시에 국가세무총국과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상호협상절차 개시 신청서>(啓動相互協商程序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그 관계사의 이전가격조정통지서의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실시방법 제99조).

회사는 회사 또는 그 관계사가 이전가격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대응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실시방법 제100조). 대응조정 또는 상호협상의 결과는 국가세무총국이 서면형식으로 주관 세무기관을 거쳐 회사에 송달한다(실시방법 제103조).

다. 대응조정의 방법

회사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이 경외 관계사에 지불한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등의 원천징수된 세액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다(실시방법 제101조).

상기 “과소자본 관리” 부분에서 언급한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불가능한 지급이자 및 주식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이자에 대응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실시방법 제104조).

제9장_중국과 한국의 세무조사 관련 비교

중국과 한국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비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중국		한국	
	내용	관련규정	내용	관련규정
세무조사 주기	- 조사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법인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받으나,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을 고려할 때 5년마다 정기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도 상당수 있음 - 다만,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4년주기 순환 조사를 원칙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됨 -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법인의 성격, 사업규모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함	법인세 사무 처리 규정 제163조 내지 제164조
통합 조사의 원칙	- 세무조사는 국가세무국과 지방 세무국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무기관에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함	〈회사에 대한 경제(經濟) 조사를 통제함에 관한 규정〉 제7조	-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부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1. 이전가격조사 2. 세무정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특정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한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기획분석 등의 결과 특정 항목에 대한 공통적 문제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부분조사만으로도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구분	중국		한국	
	내용	관련규정	내용	관련규정
중복조사 허용여부	- 동일한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2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일상적인 징수과정에서 납세신고 및 납세사실에 대한 점검 조사 및 신고, 협조조사 및 상급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한 검사는 검사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여러 검사팀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는 아니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번 세무조사를 해서도 아니 됨	〈국가세무총국 세무조사 계획 제도를 실시함에 관한 통지〉 제 2조 내지 제3조, 〈기업에 대한 경제조사를 통제함에 관한 규정〉 제6 조	-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불가함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할 수 있음 1. 조세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심사청구 등 이의신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 통지	- 세무조사시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함 - 세무기관이 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피 조사자는 세무조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음	〈세수징수 관리법〉 제59조	-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구분	중국		한국	
	내용	관련규정	내용	관련규정
세무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 세무검사(稅務稽查 : 세무검사 기관의 전문적인 조사를 말하는 바, 세무검사부문이 실시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의무와 원천징수의무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진행하는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에 해당됨)는 조사 개실일로부터 60일 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사국(稽查局) 국장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p>〈국가세무총국 세무조사 계획 제도를 실시함에 관한 통지〉 제 4조, 〈세무 검사업무규정〉(稅務稽查工作規程)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며, 조사대상 과세 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 기간에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함 그러나, 실무상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는 적음 - 세무조사기간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관할 과세관서장 등의 승인을 얻어 연장시 마다 20일 이내에서 한정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 1.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할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에 관한 법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소정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무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p>국세기본법 제81조의 8</p>

구분	중국		한국	
	내용	관련규정	내용	관련규정
세무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기관은 납세성실도수준, 사업 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 내용, 탈루혐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면조사법, 추출조사법 : 전면 조사법은 납세자의 일정한 기간 내의 모든 회계증빙, 장부, 재무 제표, 납세상황 및 각종 채고에 대하여 전면적,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고, 추출조사법은 납세자의 일정 기간내의 회계 증빙, 장부, 재무제표 및 채고 등에 대하여 일부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임 2. 순위조사법, 역조사법 : 순위 조사법은 회계계산의 순서에 따라 회계증빙, 장부, 재무 제표를 순서대로 조사하고 서로 대조 확인하는 방법이고, 역조사 법은 회계재무제표, 장부, 증빙을 순서대로 조사하며 서로 대조 확인하는 방법임 3. 현장조사법, 장부조달조사법 : 현장 조사법은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사무장소에 인원을 파견하여 장부자료 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이고, 장부조달 조사법은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장부자료를 가져가서 조사하는 방법임 4. 비교분석법 : 납세자의 관련 재무지표의 실제 완성수에 대하여 증행 또는 횡행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중에 납세 문제의 단서를 발견하는 방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 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 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1. 전부조사 :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 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 확인 실시함 2. 부분조사 :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항 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상기 전부조사의 조사방법을 준용함 3. 간편조사 : 서면심리 및 준비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함 	<p>조사사무 처리규정 제17조</p>

구분	중국		한국	
	내용	관련규정	내용	관련규정
세무조사 방법	5. 통계계산법 : 납세자의 관련 재무수치 간의 상호계약 관계에 의하여 믿을 수 있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측정된 수치로 조사 기간의 장부기록 또는 신고한 수치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 하는 방법임. 6. 기타 조사방법 : 대조확인법, 재고조사법 등			
세무조사 범위확대	-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어려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조사 진행 중 세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조사기간 중 장부 서류 보관	- 세무기관은 필요에 따라 현금 이상 세무 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 또는 원천 징수의무자의 이전 년도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기관에 가져가서 검사할 수 있으나 세무 기관은 반드시 3개월 내에 반환하여야 함 - 세무기관은 區를 설립한 시, 자치주(自治州)이상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기관에 가져가서 검사할 수 있으나 3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함	<세수징수 관리법 실시 세칙> 제86조	- 납세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음.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세무조사 결과통지	-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세무 기관의 집행기구가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집행함		-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함 - 2009. 10. 21.자 국세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세무조사 중 94.9%가 세액이 추징됨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구분	중국		한국	
	내용	관련규정	내용	관련규정
조세범칙 조사	-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세무조사 또는 세무검사의 결과 형법에 저촉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함 -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세, 납세 거부(抗稅), 세금편취(騙稅) 등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 세무 검사부문에 전달하여 세무 검사 부분의 사건원천의 하나로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검사의 사건으로 선정될 경우 세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 조세범칙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 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 수법, 범칙혐의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한 후에 소정의 사유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음 - 조세범칙조사는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임의제출받아 일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수행함 - 조세범칙조사시에는 범칙자별로 통고, 고발 및 무혐의로 구분하여 처분함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0조 내지 제101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납세분쟁 : 세무조사기관과 납세상 분쟁(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세율, 면제 및 환급, 적용세율, 계산근거, 납세기간, 납세지점, 세금징수방법 등에 기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세무기관의 납세결정에 따라 관련 세금 및 체납금을 납부한 후 또는 상응한 담보를 제공한 후 행정재심(行政審議, 이하 행정재심 또는 행정복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세무기관의 처벌결정, 강제집행, 세무보전(保全)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세수징수 관리법> 제88조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하여 국세부와 전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세무조사에 따라 국세부과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0장_세무관련 집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및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중국의 세무관련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망라할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자주 발생되고 또한 공통성이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한편, 비록 문제점에 따라 해결방안도 상이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법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가능한 조세상의 문제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1. 조세규정체계 특성상

중국은 현재까지 조세 관련 기본법률은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세수징수관리법> 등 3개만 발표한 상태로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법규와 부문규장(部門規章)이다. 또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세관총서, 국무원관세세직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공고”, “보충설명”, “해석”, “통지”, “정책” 등 방식으로 수많은 조세규정을 발표하고 있는바, 중국의 조세규정체계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조세규정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미흡하고, 조세규정이 지나치게 많음으로 하여 심지어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문구를 많이 사용하여 세무기관의 자유재량권이 비교적 크다. 따라서 극단의 경우 주관 세무기관마저 일부 조세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동일한 조세규정에 대해 각 지방의 세무기관마다 판이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한편, 매년 수많은 조세규정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세무기관의 홈페이지상 공표할 뿐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조세정책의 변화를 즉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관련 조세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조세정책의 변화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사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 및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의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세무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 회계 등 세무관련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조세혜택정책 적용상

조세혜택정책은 특정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또는 지역에 대하여 조세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구비한 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비준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누릴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조세감면 신청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취득한 후 주관 세무기관에서 조세감면 수속을 진행하여야 하는바,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급 인민정부의 주관부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함부로 조세감면을 결정을 하였을 경우 무효이며, 세무기관에서는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세수징수관리법 제33조). 따라서 실무적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임의로 “조세혜택정책”을 부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세혜택정책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관련 법규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 정부당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조세혜택정책”에 대해서는 적법성, 실효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체납금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특수한 원인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고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외에, 세금을 체납한 날로부터 매일 체납세금의 0.0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세수징수관리법 제32조). 따라서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수한 원인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성급 세무기관의 사전비준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세무기관의 인정과세

납세의무자가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무기관은 인정과세할 수 있다(세수징수관리법 제35조).

- 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②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③ 함부로 장부를 훼손하거나 또는 납세관련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④ 장부를 작성하였지만 계정이 혼란스럽거나 또는 원가자료, 수입증빙, 비용증빙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장부검사가 어려울 경우

- ⑤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지만 규정된 기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기관이 기한을 주어 신고를 명했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⑥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근거가 확실히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⑦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 및 임시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

세무기관에서 인정과세하는 경우 실제기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 및 납부하는 것보다 기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불리하므로 세무등기, 장부의 기재, 재무결산, 세무신고 및 납부, 세무조사에 대한 협조 등 방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전가격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설립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와 그의 관계사 간의 거래를 진행할 경우 독립기업간의 거래에 따라 대금, 비용 등을 수취하고 지불하여야 하는바, 그렇지 아니하고 과세소득 수입 또는 소득액을 감소시킬 경우, 세무기관은 세액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

따라서 관계사 간의 거래는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가격 세제 부분을 참조.

6. 세수보전조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 및 임시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는 세무기관에서 인정과세를 명령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상품, 화물을 압류(高押)할 수 있다. 압류한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압류를 해지하고 압류한 상품, 화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압류한 후 여전히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관련 법규정에 따라 압류한 상품, 화물을 경매 또는 매각하여 경매 또는 매각소득으로 납부할 세액을 충당한다(세수 징수관리법 제37조).

한편,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한 행위가 있다고 세무기관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규정한 납세기한 전에 기한을 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인 상품, 화물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소득을 이전, 은닉하는 흔적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현금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아래와 같은 세수보전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 ① 납세의무자의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세액에 상당한 저금을 동결(凍結)
- ②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세액의 가치와 상당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압수, 압류 납세의무자가 위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지하여야 하며, 규정한 기한 내에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수강제집행조치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개인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가옥과 용품은 세수보전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수보전조치로 인한 생산, 경영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 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세의무를 적시,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세수강제집행조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납세담보제공자가 규정한 기한에 따라 담보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고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아래와 같은 강제집행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세수징수관리법 제40조).

- ①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납세의무자의 저금에서 세금을 공제
- ②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세액의 가치와 상당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의 재산을 압수, 압류, 관련 법규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하고, 경매 또는 매각소득으로 납부할 세액을 충당

세무기관이 강제집행조치를 채택할 경우 위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제공자에게 미납한 체납금이 있을 경우 동시에 강제집행한다.

다만 개인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가옥과 용품은 강제집행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제공자는 관련 규정 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금의 납부 및 원천징수, 납세담보 제공 등 관련 의무를 즉시,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출경제한

세금을 체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법정대표자가 출경²⁴을 하려는 경우, 세무기관은 출경관리기관에 위촉하여 그의 출경을 저지할 수 있다(세수징수관리법 제44조) 이러한 경우 출경하기 전에 납부할 세금, 체납금을 정산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법정대표자는 세금, 체납금의 미납부로 인하여 출경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 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세금, 체납금을 즉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세금의 우선권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세금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무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세금이 납세의무자가 그 재산으로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유치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세금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세수징수관리법 제45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황이 있으면서 그 재산으로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자, 질권자에게 그 세금체납상황을 설명하여야 하고, 저당권자, 질권자는 세무기관에 관련 세금연체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세수징수관리법 제46조).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체납세금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보다 우선하여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당권, 질권, 유치권의 취득 전에 상대방의 세금납부 상황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합병, 분할시의 세금정산

납세의무자가 합병, 분할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합병 시 세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 후의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분할 시 세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 후의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세수징수관리법 제48조).

따라서 회사의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세금체납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11. 세무기관의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세금을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만기채권의 행사에 게을리 하거나 또는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선명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되 양수인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로서 국가의 세수에 대하여 손해를 조성한 경우 세무기관은 계약법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책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세수징수관리법 제50조).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세금납부능력을 상실한다거나 등 국가의 세수에 손해를 조성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재산의 무상양도 또는 불합리한 저가양도일 경우에는 관련 양수도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세금납부상황, 재산양도로 인한 세금납부능력 상실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12. 과다 납부한 세금의 반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발견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정산 및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발견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에 과다 납부한 세금의 반환 및 은행의 해당 기간 예금이자를 가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조사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국고로부터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중 국고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세수징수관리법 제51조).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계산착오 등 원인으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위 반환청구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3. 세금 추징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 내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을 보완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체납금은 추징할 수 없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등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 내에 세금, 체납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추징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탈세, 납세거부(抗稅), 세금편취(騙稅)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은 적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금 또는 편취한 세금을 추징함에 있어서 위에서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

²⁴ “출경”이란 중국 대륙지역을 떠나 외국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조). 위에서알수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의 원인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의 계산 및 납부 등 방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법률구제 조치 관련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제공자가 세무기관과 납세상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먼저 세무기관의 납세결정에 따라 세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연후에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行政審議)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 강제집행조치 또는 세수보전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에 대하여 기한이 초과하여도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며 또 이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은 이 법 제40조가 규정하는 강제집행조치를 실시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세수징수관리법 제88조).

한편, 위에서 말하는 “납세상의 분쟁”이란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제공자가 세무기관과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세, 면제 및 환급, 적용세율, 계산근거, 납세절차, 납세 기한, 납세지점 및 징수방식 등 구체행정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중국의 행정재심은 자유재량주의와 재심전치주의등 두 가지 방식이 있는바, “납세상의 분쟁”은 재심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즉 행정재심을 진행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벌결정, 강제집행조치 또는 세수보전조치는 자유재량주의 즉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 중에서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기관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재심전치주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구제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조세 관련 행정재심, 행정소송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재심

- ① “납세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 및 연체금을 납부 또는 상응한 담보를 제공한 후 세무기관에서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 ② 세무기관의 처벌결정, 세수강제집행조치 또는 세수보전조치에 불복할 경우 처벌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세수강제집행조치 또는 세수보전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 ③ 출경제한 조치, 납세보증금 납부명령 등 세무기관의 기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 ① 신청자가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 ② 신청자가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세무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 ③ 행정재심기관에서 행정재심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재심기간을 초과하여서도 답변하지 않을 경우 신고접수반려통지서(不予受理決定書)를 수령한 날로부터 또는 재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기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발적으로 납세의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순히 이익의 최대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세정책을 전면적으로 파악한 후 적법하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절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세무기관의 세무조사는 일정한 정도에서 기업의 업무상 존재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가능한 조세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엄격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주관 세무기관과 조화로운 의사소통체계와 원활한 인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의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등 전문기관 또는 세무기관에서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기할 바는, 위와 같은 내용은 세무관련 집행 과정에서의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문제점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분석하고 상응한 해결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가능한 조세상의 문제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시 리 즈 목 록

국가	제목	법무법인	저자	사무소
중국 I	중국 투자·기업	광장	이상기 오승룡 최광호 함대영	광장-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부통동대로 6호 방흥국제센터 B동 307호 Tel. +86-10-8478-5377 E-mail.mail-bj@leeko.com
중국 II	중국 세법	세종	최병선 최용원 장대훈 정천주 최옥희	세종-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운로 36호 국항빌딩 10층 1008호 Tel. +86-10-8447-5343 E-mail.china@shinkim.com
중국 III	중국 공정거래	세종	최병선 최용원 장대훈 정천주 김도현 최옥희	세종-상하이 중국 상해시 장녕구 고배로 666 가기빌딩 4층 401동 22호 Tel. +86-21-2216-6588 E-mail.china@shinkim.com
베트남 I	베트남 투자·조세·노무	울촌 (초판)	양은용 배용근 강수구 한윤준 안우진 Tran Anh Dung	울촌-하노이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E-mail.eyang@yulchon.com 울촌-호치민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1-0225 E-mail.eyang@yulchon.com
		태평양 (개정)	양은용 안철호 배용근 김병필 전아임 중 사무엘 손통 부 채승완 이은홍	태평양-하노이 West Tower 2601,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232-1233 E-mail.vietnam@bkl.co.kr 태평양-호치민 Unit 3, 37F,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8.212.303 E-mail.vietnam@bkl.co.kr
베트남 II	베트남 부동산·건설	지평	김상준 변희경 한승혁 김주현	지평 - 하노이 Suite 3505, 35F,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lot E6, Cau Giay New Urban Area, Me Tri Ward, Nam Tu Liem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E-mail.hanoi@jipyong.com 지평 - 호치민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E-mail.hcmc@jipyong.com
캄보디아	캄보디아 회사·세무·투자	지평	이행규 유정훈 김형근 반기일	지평 - 캄보디아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Tel. +855-23-964-022 E-mail.hglee@jipyong.com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투자법제	울촌	이화준 문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528-5200 E-mail.mail@yulchon.com
미얀마	미얀마 투자법제	울촌	양은용 배용근 강수구 안우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528-5200 E-mail.mail@yulchon.com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법제	에이펙스	차지훈 이해왕	Wisma 23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Tel. +62-21-5790-4171 인터넷전화 070-8230-6033 E-mail.jhcha@apexlaw.co.kr, hwlee@apexlaw.co.kr

저자약력

초판

최병선(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경력요약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수많은 주요 국제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파생금융업무,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업무, 기업구조조정 업무 및 M&A 업무, 부실자산 매각 업무 그리고 관련 소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 198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정치학사)
-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1992. 미국 Washington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LL.M.)

경력

- 1984.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4~1985. 특수전문위원 육군소위 전역
- 1987. 사법연수원 제 16기 수료
- 1992~1993. 영국 런던 소재 Field Fisher Waterhouse 법률사무소 근무
- 2005~2008.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03~현재. 은행연합회 은행신상품심의위원회 위원
- 2006~현재. 한국공항공사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위원
- 2006~현재.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 1987~현재. 법무법인 세종 (SHIN&KIM)

주요저서 및 논문

- 한국의 금융서비스 규제기관 (Richmond Law & Tax; 2004)
- 해외사채발행 실무해설 (BFL, 제8호 2004. 11.)
- An era of global financial services: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in Korea (Global Banking & Financial Policy Review (2002/2003))
- 우리기업의 해외증권발행-교환사채를 중심으로 (증권법 연구 제3권 제2호 (2002))
- 우리기업의 미국예탁증권 발행 (1992)
- 비교정부론 (공역 법문사, 1985) 불법행위법상의 가정적 적법행위 (1984)

저자약력

장대훈 (법무법인 세종 소속 중국변호사)

경력요약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외국변호사로서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주된 업무분야는 중국 회사법, 외국인투자법, 노동법, 세법, 중국 현지회사 설립 자문 등 입니다.

주요 업무 분야

중국 회사법, 외국인투자법, 노동법, 세법

학력

2004~2005. 중국 농업부 공무원

2005~2007. 중국 북경시 金誠同達변호사 사무소 실습

2007. 중국 북경시 中倫金通변호사 사무소 실습(한국업무팀 합병으로 이동)

2008~2010. 포스코건설(중국)유한공사 영업관리(법무)팀 팀장

2010~현재. 법무법인 세종 상해사무소 중국변호사

2002. 삼성SDI주식회사 법무실 Legal Counsel (중국 법무총괄)

2003~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주요저서 및 논문

중국변호사제도 연구 (중국법률출판사, 1998) 依法治國 기본 방략 輔導讀本 (중국법률출판사, 1998) 律師법 해석 (중국호남인민출판사, 1998)

律師 신입무 소책 (중국 민주법제출판사, 1998) 律師법 개론 (중국호남인민출판사, 1998) 依法治國론 (중국법률출판사, 1997) 법률구조제도 비교 연구 (중국법률출판사, 1997)

“一國兩制”법률문제 (중국법률출판사, 1997) 중국 律師법 講話 (중국藍天출판사, 1996) 법률구조에 관한 조사 (사법연구 잡지, 1996) 변호사의 執業조건 (중국律師報, 1996)

무형자산 평가 이론 探討 (과학기술 및 법률 잡지, 1994) 기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 (과학기술 및 법률 잡지, 1994) 경제연합국 재 입성 (중국사천인민출판사, 1993)

중국 과기자문산업 현황 연구 (과학기술 및 법률 잡지, 1993)

과학 기술 세수 우대정책의 법률화 및 규범화 (과학기술 및 법률 잡지, 1992)

정천주(법무법인 세종 소속 중국변호사)

학력

1992.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95.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경력

1991. 중국 북경시 海澱區 지방법원 실습

1995~1999. 중국 사법부 사법연구소 연구원

1996~1999. 중국 북경시 惠誠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겸직)

최용원(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학력

198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문학사)
200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법학석사 - LL.M.)

경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2004~2005. Clifford Chance(영국 Law Firm) 홍콩사무소 변호사
2006~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북경사무소 수석대표
2007~현재. 주중한국대사관 법률고문
2011~현재.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IETAC) / 중국심천국제중재원(SCIA) 중재위원
2011~현재. 주중 한국상회(商會) 법률고문
2013~현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 조정위원

정천주(법무법인 세종 소속 중국변호사)

학력

1992.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95.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경력

1991. 중국 북경시 海澱區 지방법원 실습
1995~1999. 중국 사법부 사법연구소 연구원
1996~1999. 중국 북경시 惠誠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겸직)

2002. 삼성SDI주식회사 법무실 Legal Counsel (중국 법무총괄)
2003~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주요저서 및 논문

중국변호사제도 연구 (중국법률출판사, 1998) 依法治國 기본 방략 輔導讀本 (중국법률출판사, 1998) 律師법 해석 (중국호남인민출판사, 1998)
律師 신입무 全書 (중국 민주법제출판사, 1998) 律師법 개론 (중국호남인민출판사, 1998) 依法治國론 (중국법률출판사, 1997) 법률구조제도 비교 연구 (중국법률출판사, 1997)
“一國兩制”법률문제 (중국법률출판사, 1997) 중국 律師법 講話 (중국藍天출판사, 1996) 법률구조에 관한 조사 (사법연구 잡지, 1996) 변호사의 執業조건 (중국律師報, 1996)
무형자산 평가 이론 探討 (과학기술 및 법률 잡지, 1994) 기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 (과학기술 및 법률 잡지, 1994) 경제연합국 재 입성 (중국사천인민출판사, 1993)
중국 과기자문산업 현황 연구 (과학기술 및 법률 잡지, 1993)
과학 기술 세수 우대정책의 법률화 및 규범화 (과학기술 및 법률 잡지, 1992)

최옥희(법무법인 세종 소속 중국 변호사)

학력

중국 길림대학 법과대학 졸업

경력

1999. 길림성 통화법률원조중심 변호사
2001. 북경시 대성변호사사무소 변호사
2003북경시변호사협회 북경올림픽 법률전문위원회 위원
2002~현재북경시 嘉潤변호사사무소 변호사
2005~현재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Investment &

Business Guide

인 쇄	초 판	1쇄 발행	2010년 10월
	개정판	1쇄 발행	2015년 10월
발 행	2015년 10월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 화	02) 2110-3661		
팩 스	02) 2110-0327		
전자우편	ildhd@moj.go.kr		
인 쇄	에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주)		
	02) 756-5171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10-01